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200-01

2015. 12.

농식품 규제비용 분석지원을 위한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식품 규제비용 분석지원을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황 의 식 (선임연구원)

연구참여자: 김 용 렬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허 주 녕 (전문연구원)

연구참여자: 오 정 태 (위촉연구원)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농식품분야 규제 현황과 시범사업 시사점 3

제2장 주요국 규제개혁 사례

1. 호주 9
2. 독일 13

제3장 2015년 농식품 규제개혁 사례

1. 규제개혁 현장포럼 19
2. 2015년 규제영향분석 개요 25

제4장 2015년 농식품 핵심과제 규제영향 분석

1. 핵심과제 등 규제영향분석 27
2. 세부 핵심과제 규제영향 분석 28
3. 시사점 154

제5장 규제완화와 규제비용 분석의 효율화 방안

1. 기본 방향 155
2. 효율화 방안 156
3. 규제비용분석방법 168
4. 규제비용 분석 업무의 효율적 활용방안 174

부록1 농업부문 국가전략 특구

1. 추진 배경	184
2. 일본의 아베노믹스(성장전략) 주요 내용	185
3. 농업부문 국가전략특구	192
4. 요약 및 시사점	193

부록2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1. 적용대상 및 운용방법	195
----------------------	-----

참고 문헌	199
-------------	-----

표 차 례

제1장

표 1- 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령 현황	3
표 1- 2. 농림축산식품부 과별 규제 현황	4
표 1- 3. 규제 성격별 현황	5
표 1- 4. 규제의 강도별 현황	6
표 1- 5. 규제의 목적별 현황	6

제3장

표 3- 1.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안건	20
표 3- 2. 지방자치단체 농식품분야 건의규제(2014)	21
표 3- 3. 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안건 후속 조치	22
표 3- 4. 농식품분야 특별공모 건의규제(2015)	23
표 3- 5.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 건의규제 안건현황	23
표 3- 6. 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안건 후속 조치	24
표 3- 7. 규제비용 및 영향 분석(2015)	25

제4장

표 4- 1. 도시민의 농촌관광 이동총량과 경험횟수	34
표 4- 2. 농업관광목적으로의 일시사용에 대한 절차간소화의 편익추정	38
표 4- 3.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현황(2014년)	41
표 4- 4.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년도별 지정추이	42
표 4- 5. 농촌관광목적 시설의 연간 증가량 추정	43
표 4- 6. 농업관광목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의 비용/편익 추정	45
표 4- 7. 비용편익 결과	54

표 4- 8.	비용편익 결과	60
표 4- 9.	정부인증제도의 문제점	65
표 4-10.	가공식품KS인증과 전통식품인증 공장심사항목	67
표 4-11.	비용편익 결과	71
표 4-12.	국내 전체 술 시장 규모('12년 기준)	74
표 4-13.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12년 기준)	74
표 4-14.	막걸리·전통주 업체 규모별 판매처	76
표 4-15.	비용편익 결과	82
표 4-16.	막걸리·전통주 업체 규모별 판매처	85
표 4-17.	주종별 판매 방법별 판매 비중	86
표 4-18.	비용편익 결과	95
표 4-19.	농업인의 GAP에 대한 개선사항 인식	99
표 4-20.	비용편익 결과	107
표 4-21.	농식품 연도별 수출 실적	108
표 4-22.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110
표 4-2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의 변경 사항	113
표 4-24.	비용편익 결과	118
표 4-25.	우리나라 쌀의 수출 실적	119
표 4-26.	쌀의 연도별 국내 가격	120
표 4-27.	우리나라 쌀의 수출 추천대상 품목	121
표 4-28.	쌀의 수출 이행실적 보고 절차	122
표 4-29.	우리나라 쌀의 세계경쟁력 분석 결과	127
표 4-30.	비용편익 결과	127
표 4-31.	향후 10년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참여업체 진입 완화에 따른 비용	140
표 4-32.	향후 10년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참여업체 진입 완화에 따른 편익	143
표 4-33.	비용편익 비교결과	144

제5장

표 5- 1.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절차 요약 164

부록1

부표 1- 1.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 186

부표 1- 2. 일본의 특구제도 비교 193

그림 차례

제4장

- 그림 4-1. 막걸리 내수 및 수출 현황 84
- 그림 4-2.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111
- 그림 4-3. 농촌지역개발사업 민간건설업체 등록 추이 132

제5장

- 그림 5-1. 효율적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구조 157

부록1

- 부도 1-1. 국가전략특구 지정 절차 188
- 부도 1-2. 일본 국가전략특구 지정 현황 189
- 부도 1-3.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개요 191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방식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
 - 2014~2015년 상반기까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를 포함한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영향평가 적용
- 국내의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2004년 규제총량제가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미비하여, 규제개혁 기본틀에 대한 전면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8개 중앙행정기관(농식품부 포함)에서 시범 추진
- 6차산업화 등 최근 농식품분야의 주요 정책이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 및 복합화로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농식품분야 규제의 종합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요구가 확산
 -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영향분석

보완사항과 농식품분야 규제의 특성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사업에서 특정 사업(마을종합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위탁운영 등이 많아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부적합한 부분이 있음. 특히, 규제의 성격과 강도, 목적 등을 분류함에 있어 기존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경제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는 2015년 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의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는 경제혁신에 필요한 걸림돌 제거, 지방자치단체 규제 혁신 추진, 융복합·신산업 규제 혁신 추진, 규제시스템의 과학과 및 실질적 체감하는 규제개혁 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농식품분야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부처의 업무효율화와 규제의 품질 제고 및 합리적 규제 관리를 위한 업무 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안 등을 제시
 - 2015년 농식품 규제개혁 사례와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규제영향분석 업무의 운영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및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완화와 규제비용 분석의 효율화 방안 제시
 - 규제비용 분석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효율화 방안
 - 규제비용분석방법 및 효율적 활용방안 등

2. 농식품분야 규제 현황과 시범사업 시사점

2.1 규제 현황

- 농식품분야 규제 관련 법령(법률 등)은 83개 분야이고, 2014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체 규제는 931건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법령 83개에서 농업농촌 부문이 전체 83건에서 21건 (2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림 20.5%(17건), 유통소비 19.3%(16건), 축산 19.3%(16건), 식량식품농자재 15.6%(13건) 등

표 1-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령 현황

단위: 개수, %

농식품 분야 과별 관련 법령	개수	비율
농업농촌	21	25.3
식량식품농자재	13	15.6
유통소비	16	19.3
축산	16	19.3
산림 등	17	20.5
합계	83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법령관련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2014.

- 담당과 또는 팀별 규제 현황에서 농업금융정책과가 전체 931건에서 163건, 1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방역총괄과 14.3%(133건), 축산정책과 9.3%(87건), 식량산업과 6.7%(62건), 유통정책과 6.2%(58건) 등의 순임.

표 1-2. 농림축산식품부 과별 규제 현황

단위: 개수, %

구분	규제현황	비율	구분	규제현황	비율
간척지농업과	14	1.5	수출진흥팀	1	0.1
검역정책과	26	2.8	식량산업과	62	6.7
경영인력과	1	0.1	식량정책과	6	0.6
과학기술정책과	1	0.1	식품산업정책과	37	4.0
국제개발협력과	3	0.3	식품산업진흥과	11	1.2
농업금융정책과	163	17.5	외식산업진흥과	8	0.9
농업기반과	4	0.4	원예산업과	28	3.0
농업정책과	4	0.4	유통정책과	58	6.2
농지과	27	2.9	재해보험팀	15	1.6
농촌산업과	6	0.6	종자생명산업과	42	4.5
농촌정책과	54	5.8	지역개발과	20	2.1
농협경제지원팀	7	0.8	축산경영과	39	4.2
방역관리과	13	1.4	축산정책과	87	9.3
방역총괄과	133	14.3	친환경농업과	28	3.0
소비정책과	33	3.5			
합계	931				

- 해당 과별 규제 건수의 차이는 담당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음. 특히, 농업금융정책과는 농협중앙회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규제의 성격은 행정규제가 대부분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사업에서 특정 사업(마을종합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위탁운영 등이 많아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음. 특히, 규제의 성격과 강도, 목적 등을 분류함에 있어 기존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약요건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체 규제를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에 제시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규제의 성격별 현황에서 행정규제가 331건으로 전체에서 3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품질규제 25.8%(240건), 진

입규제가 25.3%(236건), 가격규제 2.0%(19건) 등의 순임.

- 농업분야 규제의 성격별 분류에서 행정규제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은 국가 사업의 위탁대행과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임.

표 1-3. 규제 성격별 현황

단위: 개수, %

구분	빈도	비율
진입규제	236	25.3
가격규제	19	2.0
거래규제	105	11.3
품질규제	240	25.8
행정규제	331	35.6
합계	931	100.0

- 규제의 강도별 현황에서 신고 및 가이드라인이 772건으로 전체에서 8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허가·인가는 5.8%(54건), 등록은 5.8%(54건) 그리고 승인이 5.5%(51건)임.
- 규제의 강도별 현황에서 시범사업 매뉴얼에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가이드라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서는 기존 분류 이외에도 면허, 지정, 기준, 준용, 동의, 검사, 제출, 보고, 명령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음.

표 1-4. 규제의 강도별 현황

단위: 개수, %

구 분	빈도	비율
허가, 인가	54	5.8
승인	51	5.5
등록	54	5.8
신고, 가이드라인 등	772	82.9
합계	931	100.0

표 1-5. 규제의 목적별 현황

단위: 개수, %

구 분	빈도	비율
활성화 및 촉진	393	42.2
공공사업 및 단체 관리	199	21.4
소유, 행위 제한	38	4.1
지도, 감독 및 처분 등	301	32.3
합계	931	100.0

- 농업분야 규제의 다양한 성격의 분류에서 기존 시범사업과 차별되는 부분은 규제의 목적과 규제의 대상에 대한 분류가 필요함.
- 규제의 목적별 현황에서 지역 및 사업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한 규제는 393건으로 전체에서 4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도, 감독 및 처분 등 행정처리가 32.3%(301건), 공공사업 및 단체 관리가 21.4%(199건), 소유와 행위 제한이 4.1%(38건) 등임.
- 농업분야 규제의 다양한 분류에서 규제의 강도, 규제의 목적, 규제의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특히, 규제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분류에 필요한 사전적인 관련 과와의 업무협의 등이 선결과제임.

- 농업분야 규제만의 특성을 파악하여 규제영향분석에 대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품질 제고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고 할 수 있음.

2.2. 시범사업 시사점

- 통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자료의 DB화와 함께 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계량적 분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 규제영향 분석에 앞서 사전적으로 대상 규제의 진입 등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 모수¹의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및 관련부처 등의 사전 협의를 통한 모수의 산정으로 비용 과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규제비용 분석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비용분석과 함께 규제와 관련한 간접 효과에 대한 자료의 구축을 위해 해당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¹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함.

제 2 장

주요국 규제개혁 사례²

1. 호주

1.1. 규제개혁 배경

- 호주는 OECD 국가들 중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Statement, RIS)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제도화 한 국가임. 또한 다수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고, 연방제 국가임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균형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2000년대 국제금융 위기 속에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둠.
- 2013년 Tony Abbott 호주 총리는 정부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규제담당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총규제비용 절감 제도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규제개혁 성과관리체제의 도입을 검토중.

²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는 국무조정실(2014)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규제개혁의 실무집행은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내에 규제완화그룹(Degreulation Group)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제개혁 그룹은 신규 규제 제정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 등을 담당하는 Office of Best-Practice Regulation(OBPR)과 기존의 규제완화와 합리화를 담당하는 Deregulation Policy Division(DPD)으로 구성됨.
- 2013년 개편을 통해 현재의 총리 직속의 DPMC(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소속으로 OBPR과 DPD를 개편한 Office of Deregulation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총리의 강력한 지원하에 행정비용절감(Redtape reduction)을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음.

1.2. 규제영향분석 개요

- 1985년 규제영향분석을 연방 내각제출 법률안의 필수조항으로 제도화한 호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매우 일찍 도입한 국가로 평가받음.
- 호주연방정부에서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Analysis)은 제안된 규제와 정부의 정책목적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대안들이 야기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임.
- 가장 최근의 변화로는 규제당국이 표준화된 비용과 효과 추정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규제제안서에 대한 사정평가를 의무화하였고,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고는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연방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안된 규제가 초래하는 편익 뿐 아니라 규제의 잠재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 담당자와 각료가 인식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책 개발과 집행을 고무시키는 강력한 규제감독 시스템을 구축
 - 둘째,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도록 하며 필요한 요소에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
 - 셋째, 개별각료, 부처, 위원회, 법정기구와 규제자가 규제품질 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규제영향분석의 단계는 사전평가단계(preliminary assessment), 대안단계(options stages), 세부평가 및 확인단계(details stage), 공개 및 투명화 단계(transparency and publication)로 구분됨.
 - 우선 제시된 규제가 있음을 OBPR에게 통보(notifying the OBPR) → 정확한 분석을 위한 RIS 준비(preparing the RIS) → 의사결정단계에 정보제공(decision making stage) → 투명성을 위한 공개(publication) 단계임.
 - RIS가 작성되면 작성부처는 이를 OBPR에 보내 RIS의 적절성 대한 평가사정을 받게 됨. 모든 정부부처는 예외 없이 개별부처에 의해 신규 규제도입을 위해 작성되는 RIS가 정부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OBPR의 인정 없이 의사결정 단계로 나가지 않기로 결의함.
 - 따라서 의사결정 단계에서 OBPR은 의사결정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OBPR이 수행하는 규제자의 RIS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RIS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 되면 적절하게 작성되었든 그렇지 않든 모든 RIS는 OBPR이 운영하는 중앙 온라인시스템에 RIS를 등록해야 함.
 - RIS에 대한 OBPR의 평가는 평가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출판됨.

1.3. 규제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 호주정부의 규제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다음과 같음. 첫째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체제를 형성하였음. 2007년 내각의 각료수준으로 규제개혁의 아젠다가 부상한 이후 2013년 새로 취임한 Tony Abbott 총리는 규제 개혁 담당 조직을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내각총리실로 규제관리 기구를 이관하여 강력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과 행정기반을 조성하였음.
- 둘째, 호주정부는 위험관리와 규제개혁을 동일한 틀에서 모색하였음. 호주정부는 과거 OBPR이 주관하는 규제영향평가작성지침을 통해 위험평가를 제도화·정형화하였음.
 - 특히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이 규제합리화의 기본적인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규제의 목표달성이 저해되지 않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기본 토대를 제공함.
- 셋째, 호주정부는 규제개혁의 목표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고자 함. 호주정부는 규제개혁의 효과로 규제비용(red tape)절감제도를 채택하였음.
 - 2013년 이후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총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0억 달러의 총규제비용 절감이라는 구체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제시하였음.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하는 두차례의 규제철폐일(Repeal day)을 운영하였음. 구체적인 규제개혁의 목표 제시는 규제를 관리하는 각 기관의 강력한 규제개혁의 유인 역할
- 넷째, 규제개혁은 연방의 규제개혁 전담부서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관리하는 개별의 각 부처와 기관에 의해 추진됨. 이를 위해서는

각 규제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규제자의 규제개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 호주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기관은 각 규제기관의 규제개혁의 문화조성과 규제관리 기관의 규제개혁 이니셔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해 2015년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 성과관리체계(Regulatory Performance Framework)를 수립하여 추진계획에 포함
- 이를 위해 규제개혁의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를 제시하였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척도와 투입산출 지수의 예를 제시하였음.

2. 독일

2.1. 규제개혁 동향

- 독일의 규제개혁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됨. 독일행정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지만 1970년대부터 경제적 효율성의 실천필요성 등장, 관료제의 경직화,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행정의 효율화작업을 위한 행정개혁이 단행되면서, 그 일부로서 규제개혁 시작
- 연방과 주의 행정 간소화 및 법령 간소화(1970-1980년대)
 - 독일은 법률의 홍수, 규범의 홍수라고 표현할 만큼 규범이 너무 증가하여 실질적인 집행불능 상태가 됨. 집행불능 상태 외에도 규범의 품질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규범의 수를 감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이해향상 및 입법의 정당성 향상 등이 요구됨.
 - 1978년 각 주정부를 중심으로 법령 및 행정 간소화 작업 시작, 1983년

연방차원에서 법령과 행정 간소화를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류 명령·행정규칙 간소화 작업 추진

- 효율적인 국가를 위한 행정개혁 추진(1990년대)
 -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시행되면서, 그 일환으로 법령 간소화작업, 규제품질 제고 등 규제 개혁이 실시됨.
- 행정현대화를 위한 행정개혁프로그램(1990년대말)
 - 1999년 12월 ‘현대국가-현대행정(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의결, 행정의 현대화, 행정부담완화, 전자정부 추진, 2003년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추진, 중소기업 진흥, 고용창출, 시민사회 강화를 목적으로 함.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13개 프로그램 추진
- 2005년 표준비용모델 도입
 - 기존의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을 진행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였음. 이러한 배경에는 단순한 법령개정만으로는 행정부담완화에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부담을 측정할 필요성 등장
 - 독일의 행정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부담에 대한 예측 필요
 - 2005년 ‘연정합의(Koalitionsvertrag von CDU, CSU und SPD)’에서 표준비용모델 도입결정
 - 행정비용 측정결과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r Normenkontrollrat) 설치
- 2006년 ‘행정부담완화 및 좋은 입법’ 프로그램 결정

- 2006년 연방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행정부담완화 및 좋은 입법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프로그램하에서 행정부담 완화와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법률영향분석 도입, 행정부담지수, 이행비용 완화 등으로 구성된 ‘행정부담 완화 및 좋은 입법’ 프로그램은 2006년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2.2. 규제개혁 주요 내용

- 독일의 규제개혁은 개인, 기업, 행정측면에서 유발되는 행정 부담의 감소가 주 목적임.
-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권은 연방정부외에 각 주정부에게도 부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과 각 주는 관할 입법권에 따른 규제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함.
-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은 ‘행정부담 감축과 좋은 입법(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을 핵심내용으로 함.
- 연방정부의 규제개혁프로그램과 별도로 16개 각 주정부도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일반적으로 연방의 결정에 근거하여 추진
 - 각 주정부차원에서 연방의 규제개혁과는 완전히 다른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보다는 연방의 규제개혁 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함.
 - 예컨대 좋은 입법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정부는 신규 정부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을 수행하여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라인란트팔츠(Rheinland Pfalz)주의 경우 주 법률안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동일한 법률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3. 규제개혁 관련 제도

- 독일 규제개혁은 행정부담 완화와 규제품질의 개선이 주요한 목적임. 행정부담의 감축(Bürokratieabbau)을 위한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법령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Bürokratiekosten)의 감축과 규제순응을 위해 발생하는 이행비용(Erfüllungsaufwand)의 감축이 포함됨.
-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로써 규제도입 시 의무적으로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을 이용하여 행정비용의 규모를 제시하도록 함. 2011년부터는 규제순응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행비용의 규모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 좋은 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규제의 품질 개선이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에서 법률영향분석을 규정하고 법령안을 제출할 때 법률영향분석의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규정

2.3.1. 법률영향분석

-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과 비교가능한 제도로써 독일은 법률영향분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법률영향분석은 독일의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입법과정속에서 예견되는 법률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
- 법률영향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에 수반되는 영향
 -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행정비용의 조사 및 설명
- 법률의 영향은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향을 고려함
 - 경제분야, 생태분야, 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집행가능성, 효율성, 효과성/목표달성
-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 품질제고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방지
 - 규제담당자의 행정책임성 제고

2.3.2. 표준비용모델

-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서 고안됨.
- 표준비용모델은 탈정치화하여 내용적으로 정치적 목표, 법규정의 효과성 등은 배제한 채 절차형성의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고안됨.
-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행정비용 산정방식
 - 정보제공의무 측정을 위한 변수로서 시간단위당 비용, 시간적 경비, 제출 빈도, 대상그룹의 규모 등이 포함됨.

2.3.3. 이행비용측정 및 제시

- 독일의 연방정부는 2010년 1월 27일 이행비용의 측정 의무 도입을 결정, 각 연방부처는 신규법령안을 제출할 때 행정비용 외에 이행비용을 조사하여 제시함.

- 이행비용은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행정비용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행정비용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만을 포함하며, 규제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이행비용은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 외에 규제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함.

제 3 장

2015년 농식품 규제개혁 사례

1. 규제개혁 현장포럼

-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제시, 전문가 간 네트워킹 및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규제개혁 현장포럼 운영

◇ 농식품 규제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으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포럼 운영

- 단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에서 벗어나,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이 나아가야 할 장기 모형 설정 방안 논의
 - 분야별(농지, 식품, 유통, 축산)로 구분하여, 규제의 개선모형 논의
- 특히, 현장에서 피규제자(농업인, 업계 등), 규제집행관리자(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토의
- 포럼에서 나온 규제개혁 방안 중 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방안은 ‘농식품 규제개혁 종합정비방안’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1.1.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 현장포럼 개최 결과 건의된 규제 안건은 총 11건임.
 - 전부수용(3건), 일부수용(2건), 중장기검토(4건), 불수용(1건), 기시행(1건)
 - 관계부처 협의과제 8건 : 식약처 5건, 기재부 2건, 국토부 1건

표 3-1.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안건

연번	과제명	검토결과	담당과
1	임산물채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제도 개정	전부수용	산림청 산지관리과
2	기타주류도 전통주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전부수용	식품산업진흥과
3	오크칩, 오크바 등을 식품첨가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전부수용 *식약처협의필요	식품산업진흥과
4	준보전산지내 야영장 설치 허용	일부수용 *국토부협의필요	산림청 산지관리과
5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 완화	일부수용 *식약처협의필요	방역관리과
6	주세법 개정을 통한 브랜드 제조 시설기준 완화 요청	중장기검토 *기재부협의필요	식품산업진흥과
7	농산물 수확체험 부가가치세 면제	중장기검토 *기재부협의필요	농촌산업과
8	유통 매장내 축산물 판매장소 위치 변경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중장기검토 *식약처협의필요	축산정책과
9	식육 즉석가공품을 제조장뿐 아니라 동일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타 위치의 판매장에서 판매 허용	중장기검토 *식약처협의필요	축산정책과
10	식품가공품에 대한 허가·제품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노력 절감	불수용 *식약처협의필요	축산정책과
11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주종에 브랜드 추가	기시행	식품산업진흥과

1.2.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1.2.1. 2014 지방자치단체 농식품분야 건의규제 실태

-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대상 규제를 발굴(행정자치부와 농식품부 공동조사),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전국 17개 지자체 대상), 474개 분야별 건의 규제 조사
- 향후 합리적 규제개혁을 위한 기초자료 및 현장포럼 주제로 활용 예정
- 부문별 규제분류에서 농지 관련 규제 198건, 41.8% 최다, 축산(62건), 직불제(48건), 6차산업화(38건),보조사업(32건), 농업인 자격(14건), 귀농(12건)

표 3-2. 지방자치단체 농식품분야 건의규제(2014)

부문별 구분	빈도	비율
농지(농지관련 인허가, 기준 완화 등)	198	41.8
축산(AL, 분뇨, 동물등록 등)	65	13.1
보조사업(시설, 소득기반사업 등)	32	6.8
직불제(쌀 등 전체 직불제 관련 사업)	48	10.1
귀농(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등)	12	2.5
6차산업화(체험 가공공장 등)	38	8.0
재해보험 및 건강보험	5	1.1
농업인 자격	14	3.0
기타	65	13.7
합계	474	100.0

1.2.2.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후속 조치

- 제2차 규제개혁현장포럼에서 건의된 1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규제정비
 - 농업생산분야(5건), 주류산업활성화(3건), 가축사육 및 동물장묘업(3건),

- 전문인력양성(1건), 유통규제(1건), 6차산업(1건) 등
- 규제개선과제 부내 검토(12건) 및 관계부처 협의(2건)

○ 총 14건 중 일부수용(3건), 관계부처협의(2건), 중장기검토(5건), 불수용(4건)

표 3-3. 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안건 후속 조치

분야	농업생산분야	주류산업 활성화	가축사육 및 동물장묘업	전문인력 양성	유통규제 개선	6차산업
	5건	3건	3건	1건	1건	1건
건의 과제 (1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 기반시설 2건 • 농지 2건 • 직불금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유통 1건 • 지역특산주 1건 • 주류 품목제조 보고 청구 일원화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재해 보험 1건 • 동물장묘업 1건 • 가축사육 거리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인 선정 기준 완화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가수의 매매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 사업자 One-Stop 서비스센터 운영 1건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수용 1건 • 중장기검토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수용 1건 • 관계부처 협의 1건 • 불수용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수용 1건 • 관계부처 협의 1건 • 불수용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수용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검토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수용 1건

1.3.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1.3.1. 2015 농식품분야 특별공모 건의규제 실태

- 농식품 관련 지자체 규제개혁 건의 후속 조치로 특별공모 실시, 청와대 신문고,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산 관련 협회 등 대상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대상 과제 발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지자체, 협회, 개인 등 대상), 148개 분야별 건의 규제 조사
-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에서 농지 관련 건의가 최다, 지자체 건의 규제와 달리

개인, 협회 등이 주축이 된 특별공모에서는 보조사업, 6차산업화 관련 규제 건의 비중 높음.

표 3-4. 농식품분야 특별공모 건의규제(2015)

부문별 구분	지자체		특별공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지(농지관련 인허가, 기준 완화 등)	198	41.8	42	28.4
축산(AL, 분뇨, 동물등록 등)	62	13.1	8	5.4
보조사업(시설, 소득기반사업 등)	32	6.8	23	15.5
직불제(쌀 등 전체 직불제 관련 사업)	48	10.1	6	4.1
귀농(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등)	12	2.5	2	1.4
6차산업화(체험 가공공장 등)	38	8.0	22	14.9
재해보험 및 건강보험	5	1.1	2	1.4
농업인 자격	14	3.0	9	6.1
기타	65	13.7	34	23.0
합계	474	100.0	148	100.0

1.3.2.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후속 조치

-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8.5~8.31)를 통해 건의된 139건 중 단순 민원사항이나 예산지원 요구(15건)를 제외한 124건 검토함.
- 특별공모로 실시한 건의규제의 분야별 현황에서 농지 42건, 6차산업 19건, 보조사업 15건, 자격요건 9건 등농지, 6차산업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음.

표 3-5.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 건의규제 안건현황

구분	건수	비율
농지관련 인허가 등 농지분야	42	33.9
체험, 가공시설 등 6차산업화	19	15.2
지원대상, 절차 등 보조사업	15	12.1
농업인 자격, 후계경영인 지원자격 등 자격요건	9	7.3
축사 시설, 인증 등 축산분야	8	6.5
직불, 귀농, 보험 등 기타분야	31	25
계	124	100

- 특별공모의 건의규제에서 건의 주체별 현황에서 개인 43건, 단체 28건, 지자체 68건으로 개인·단체는 6차산업·보조사업 관련 규제건의 비중이 높음.
-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논의된 규제 리스트 총 124건 중 수용(12건), 기조치(9건), 중장기검토(17건), 관계부처협의(10건), 불수용(76건) 등임.

표 3-6. 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안건 후속 조치

분야	계 (%)	농지분야 (농지관련 인허가 등)	6차산업화 (체험, 가공시설 등)	보조사업 (시설, 소득 기반사업 등)	자격요건 (농업인, 소유)	축산분야 (인증, 분뇨, 동물등록 등)	기타 (직불, 귀농, 보협 등)
건의 과제	124건 (100%)	42건 (33.9%)	19건 (15.2%)	15건 (12.1%)	9건 (7.3%)	8건 (6.5%)	31건 (25%)
검토 결과	12건 (9.7)	수용·일부 수용 3건	수용·일부 수용 1건	수용·일부 수용 1건	수용·일부 수용 -건	수용·일부 수용 2건	수용·일부 수용 5건
	9건 (7.3)	기조치 4건	기조치 2건	기조치 -건	기조치 -건	기조치 -건	기조치 3건
	17건 (13.7)	중장기검토 10건	중장기검토 1건	중장기검토 2건	중장기검토 2건	중장기검토 1건	중장기검토 1건
	10건 (8.1)	관계부처협의 -건	관계부처협의 3건	관계부처협의 4건	관계부처 협의 -건	관계부처협의 1건	관계부처 협의 2건
	76건 (61.3)	불수용 25건	불수용 12건	불수용 8건	불수용 7건	불수용 4건	불수용 20건

1.4. 제4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 제4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은 특별공모, 지자체 건의규제 등 앞서 개최된 2,3회 현장포럼의 후속조치 점검과 농식품 수출 관련 규제개혁을 다루었음.
- 특히, 현장포럼의 후속조치와 함께 2016년 계획과 보완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향후 계획에서는 규제발굴과 관련하여 타부처 협조를 통해 일괄적 규제 정비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

2. 2015년 규제비용 및 영향분석 개요

- 2014년 시범사업에서 2015년 농식품분야 규제영향분석 지원 현황에서 규제영향분석은 5건이며, 규제비용분석은 3건임.
- 규제비용분석 2건(GAP, 검역)은 1차 KDI 규제센터의 검증 후 보완 작업이 진행중에 있음.
- 규제영향분석 등에서 해당 규제의 분석서를 작성 및 보완 과정에서 사용된 모수의 수치와 각종 통계자료의 추가적인 리스트 작업이 필요함. 리스트 작업으로 추후 분석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표 3-7. 규제비용 및 영향 분석(2015)

구분	규제명	진행상황
규제영향분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차산업발전및차문화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 및시행규칙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중자산업법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규제비용분석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용전문위원회 제출
	GAP인증시도질수질시험성적서제출 기준완화	KDI 검증 자료 제출
	수입식물 검역시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	KDI 검증 자료 제출

제 4 장

2015년 농식품 핵심과제 규제영향 분석

1. 핵심과제 등 규제영향분석

- 2015년 농식품 규제개혁방안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식품분야 2단계 규제개혁을 진행하였음.

- 농식품분야 주요 개혁과제를 ①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② 농업의 6차 산업화, ③ 식품산업 육성, ④ 유통개선 및 수출산업 활성화, ⑤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15개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가적인 규제영향분석 하였음.
 -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자체 분석과 외부 전문가를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2. 세부 핵심과제 규제영향 분석

2.1.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

□ 농업진흥지역 안·밖에 걸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제한 완화

- (현행)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허용시설의 면적을 ‘총부지 면적’으로 규정하여, 진흥지역 내 시설을 진흥지역 밖으로 증설한 경우에도 제한
- (개선)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을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

[예시] 총부지면적 2ha(진흥지역안 1ha, 밖 1ha)인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농업진흥지역안에서 1.5ha미만까지 설치 허용)을 설치할 경우
(현행) 농업진흥지역 안·밖 합산한 총부지면적이 2ha이므로 설치제한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된 부지면적이 1ha이므로 설치가능

- (추진계획) 농지법시행령(제29조, 제30조) 개정(‘15년 하반기)
- (기대효과)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의 증설에 따라 투자 촉진, 경제 활성화

2.1.1. 농업진흥지역 안·밖에 걸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제한 완화 효과

- 총부지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전체 부지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활성화, 시설확대 설치 가능
- 이로 인해 규모가 확대되어 규모의 효과 발생하는데, 규모의 직접편익은 평균 생산비 하락임

- 현재 가용한 농산물가공 및 식료품 제조, 음료제조업의 생산비 통계자료를 활용하되, 10인 이상의 중대규모 업체들의 자료인 만큼, 이들에 해당하는 경우와 소규모 가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계측하되, 소규모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함(단, 추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규모를 높이는 설정값은 최소화원칙을 적용함)
 - 최대효과: 642억 원 (시너지 효과 5% 적용)
 - ※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 10명 이상의 식료품 및 음료 제조 업체당 주요 생산비용(2년치 평균) 11,026(백만 원)을 사용하되, 시너지 효과로 5% 비용 감소를 적용하고, 10년치 값을 현재가치화하여 도출
 - 최소효과: 64억 원 (시너지효과 5% 적용, 소규모 시설의 업체 할인 적용)
 - ※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 10명 이상의 식료품 및 음료 제조 업체당 주요 생산비용(2년치 평균) 11,026(백만 원)을 사용하되, 소규모 업체에 대한 할인을 10% 적용하고, 10년치 값을 현재가치화하여 도출 (이때도 동일하게 시너지 효과는 5% 적용)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산물 가공처리 관련 규제완화

- (현행)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처리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 제한
- (개선) 다른 곳에서 생산한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 변화가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을 활용하는 경우 설치 허용
- (추진계획) 농지법시행령(제29조) 개정('15년 하반기)
- (기대효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6차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2.1.2.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산물 가공처리 관련 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가공시설에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품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제한을 완화함.
 - 다른 곳에서 생산한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 중 본래의 성질변화가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이 된 경우는 원료로 사용 가능
- 이로 인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로 관련 농산물의 생산액이 증대되는 직접적인 효과 발생
- 1차 가공식품으로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고춧가루와 쌀가루(가공용 쌀)이므로 이 두 품목에 대한 생산액 증가를 추정하였음 (단, 추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규모를 높이는 설정값은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고 최소와 최대의 간격을 둠)
- 단, 가공품의 원료 사용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해당 품목의 전체 소비량이 그대로 늘어날 수 있는 품목도 있고(대표적이 경우 고추), 그럴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품목(쌀)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물량들을 근거로 변화폭을 설정함
 - 최대효과: 23,860억 원 (가공용 쌀 10% 증가, 고추생산액 10% 증가 설정)
 - ※ 쌀 소비증가 효과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나오는 쌀 소비량 중 가공용 쌀의 10% 상승에 따른 전체 소비량 증가치인 2.2%를 생산액 증가치에 적용하고, 10년치 값의 현재가치화하여 도출
 - ※ 고춧가루 소비증가 효과는 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나오는 고추 생산액의 10%로 설정함
 - 최소효과: 11,930억 원 (가공용 쌀 5% 증가, 고추생산액 5% 증가 설정)
 - ※ 쌀 소비증가 효과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나오는 쌀 소비량 중 가공용 쌀의 5% 상승에 따른 전체 소비량 증가치인 1.1%를 생산액 증가

- 치에 적용하고, 10년치 값의 현재가치화하여 도출
 ※ 고춧가루 소비증가 효과는 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나오는 고추 생산액의 5%로 설정함

2.2. 농촌관광목적의 농지규제완화

2.2.1. 분석대상 규제완화

- 농한기 등에 농지를 농촌관광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규제(농지법 제36조)완화
- 농촌관광 목적 토지이용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제30조)완화
- 농촌관광 목적 토지이용에 대한 농림지역, 생산녹지에서의 행위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완화

2.2.2. 규제완화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농지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생산기반으로 인식되어 왔으며³, 식량 안보차원에서 자급할 수 있는 농지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특히 1970년대부터는 주곡자급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

³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헌법 제 21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농지의 타용도로의 전용을 엄격히 규제해왔으며, 1975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절대농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량농지의 보전정책을 더욱 강화시킴
- 현재는 절대농지 제도를 대체하는 농업진흥지역 제도와 농지의 타용도로의 전환시 거쳐야 하는 농지전용협의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의 용도규제 등을 통해 농지의 토지이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농지 보전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고, 향후에도 필요함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최근에는 제도의 실행 측면에서는 경직성과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요소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됨
- 최근 한미FTA에 따른 쌀관세화, 한중FTA 가서명 등을 통해 농산업부문의 개방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내수 및 수출 모두에 있어 농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
-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서 명시하듯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유통, 가공 등 농산업 구조의 개편, 인력양성, 행복한 농촌 건설 등의 과제에 당면하게 됨
- ⇒ 농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시설/기능 확충, 귀농·귀촌 및 인력양성 기반 조성, 농촌환경 정비 등 농촌 공간구조 변화의 필요성 증대
- 창조융합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기조로 자리 잡으면서 농산업에서도 이중산업부문과의 융복합화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농업의 6차산업화(융복합화)가 농산업의 핵심과제로 제기됨

- 정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 6차산업화를 적극 추진
- 이에 지역산물 재배와 연계한 체험관광,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지역농산물 직거래/배송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간 융복합화가 시도되고 있음
⇒ 이종 산업들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복합적인 토지이용 수요 증대

2) 규제완화 필요성

□ 규제완화의 목적

-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순발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지 보전시책의 기초하에서 보다 다양한 농지활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지활용의 범위를 넓히는 농지용도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
- 특히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농촌관광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농업관광 목적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

□ 규제완화의 타당성

-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을 융복합화하는 6차산업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농촌관광만에 한정해서 볼 때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분석한 김용렬(2012)의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농촌관광 이동총량이나 경험횟수가 전체 국내여행 이동총량과 경험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각각 3.5%, 1.8% 2012년 5.7%, 4.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관광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4-1. 도시민의 농촌관광 이동총량과 경험횟수

	2009	2011	2012
농촌관광 이동총량(A)	13,024,136	14,002,748	15,052,044
국내여행 이동총량(B)	375,340,664	286,947,961	264,422,552
A/B(%)	3.5	4.9	5.7
농촌관광 경험횟수(C)	4,008,764	4,418,766	5,949,915
국내여행 경험횟수(D)	219585834	156594347	141620535
C/D	1.8	2.8	4.2

주 1) 2011년까지의 자료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자료.

2) 이동총량은 일반시를 포함한 모든 동지역 13세 이상 주민 수 기준.

3) 2012년 국내여행 이동총량은 예측치.

자료: 김용렬 외 2인(2012) 2012년 도시민 농촌관광 수요조사 결과.

-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농작물 생산 뿐 아니라 제조, 관광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산업공간의 조성이 필요함. 즉 산업융복합화라는 기능 변화에 맞춰 농업생산공간도 융복합화 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농지전용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및 생산녹지 지역으로 농업생산과 농업생산에 부수되는 시설, 농가주택, 가공시설, 판매시설, 기타 공공목적의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촌관광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 제약이 있음
- 같은 연구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관광의 부문별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관광콘텐츠와 농촌관광 인프라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있음
- 이처럼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시설 확충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농촌관광 목적으로의 일시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에 건의된 규제완화 과제 목록에서도 농촌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농지활용에 대한 규제완화 건의가 다수 제기되고 있음

□ 규제완화의 적정성

- 현재는 농촌관광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임
- 농지의 농촌관광 목적으로의 일시사용은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는 농지의 일시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규제완화로써 이용기간이 한정되고, 이미 가능한 농지의 일시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농촌관광 목적으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추가적인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일례로써 농한기 농촌관광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마을 축제를 살펴보면 2012년 전국 소규모 농촌축제는 총 506개이며 이중 농한기에 해당하는 11월~2월간 개최되는 축제는 총 88개로 21.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농림부의 2014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더라도 총 52개소의 지원을 신청한 농촌축제 중 농한기인 11월부터 2월 사이 개최되는 축제는 9개(17%)로 나타남
- 이처럼 농한기의 농촌축제는 전체 축제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횟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농한기의 농촌관광활동이 크게 제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농지의 농촌관광목적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항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완화책으로써 농지의 허용용도 범위의 확대 필요

- 이같은 수요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규제개혁과제 특별공모에서도 전체 120건의 건의 중 농지의 용도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가 약 19건을 차지하고 있음

2.2.3. 규제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분석대상 규제

- 1.1) 농지의 농업관광목적으로의 일시사용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허가제 → 신고제)
- 1.2) 농지의 농업관광목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규제(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완화

2) 규제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3) 농업관광목적으로의 일시사용에 대한 절차간소화

비용의 식별

- 농한기 유휴농지를 활용 가능토록 하는 규제 완화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편익의 식별

- 농한기 해당 토지를 농촌관광목적의 토지용도(축제장, 설매장 등)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용부담자의 식별

- 해당없음

□ 편익수혜자의 식별

- 농촌관광 차원의 마을 축제, 체험시설로 이용하는 농가 및 농어촌 마을

□ 비용·편익 측정지표 및 방법 결정

- 농한기 농촌관광목적 토지이용에 따른 편익 산정
- 농한기 농어촌 지역축제 중 50%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축제당 평균 수익의 20%를 편익으로 산정
- 농어촌 지역 축제 외에 개별 농가단위의 관광목적 토지이용은 농한기 축제 방문객 수 대비 25%, 1인당 수익 대비 25%를 적용하여 추가로 반영함

농촌관광목적 토지이용에 따른 부가가치
 = 농지 활용에 따른 농어촌 지역축제 추가수익 + 개별 농가단위 농촌관광목적 토지
 이용 수익

□ 규제완화 실행의 결과 예측/ 측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2013)에 따르면 2012년 전국 농어촌 지역축제는 총 506회 개최되었으며 이 중 농한기(11~2월) 개최된 지역축제는 총 88회로 전체 농어촌 지역축제의 21.8%를 차지함⁴
- 농어촌 지역축제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축제들을 대상으로 평균 방문객수와 평균 수익을 살펴보면 각각 18,786명과 113,934천 원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농지 일시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소규모 지역축제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농지 활용에 따른 농어촌 지역축제 추가수익 = 농한기 농어촌 축제 88회 × 축제당
 평균 수익(113,934천 원) × 20% = 1,002,619천 원/년

⁴ 시군 단위의 지역축제는 한시적 토지이용에 대한 허가제로부터 신고제로의 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

- 또한 개별 농가단위의 농촌관광목적 토지이용 수익은 농한기 소규모지역축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text{개별 농가단위 농촌관광목적 토지이용 수익} = \text{농한기 농어촌 축제 88회} \times \text{축제당 평균 방문객수(18,786명)} \times 50\% \times \text{방문객당 수익(6,064원)} \times 50\% = 827,160\text{천 원/년}$
--

- 이상의 연간 비용 편익 증가를 반영하여 연간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산출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음

표 4-2. 농업관광목적으로의 일시사용에 대한 절차간소화의 편익추정

년도	순편익	순편익현재가치
2016	1,830	1,830
2017	1,830	1,743
2018	1,830	1,660
2019	1,830	1,581
2020	1,830	1,505
2021	1,830	1,434
2022	1,830	1,365
2023	1,830	1,300
2024	1,830	1,238
2025	1,830	1,179
2026	1,830	1,123
총계	20,128	15,959

□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 농지의 농촌관광목적으로의 일시사용에 대한 절차 간소화에 따른 편익은 매년 1,830백만원 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발생하는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총 15,959백만 원으로 추정됨

4) 농지의 농업관광목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 비용의 식별

- 농지에 대해 농촌관광에 필요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비용 항목은 농경지 감소에 따른 작물생산 소득 감소(명시적 비용)로 규정할 수 있음
- 식량안보 등 농지총량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담 또한 간접적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편익의 식별

- 해당 토지를 관광목적의 토지용도(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

□ 비용부담자의 식별

- 작물재배량 감소 비용은 해당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귀속됨
- 농지 총량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부담자는 사회전체에 해당

□ 편익수혜자의 식별

- 농업관광 목적 토지이용의 수혜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농가 또는 사업자에 해당함

□ 비용·편익 측정지표 및 방법 결정

- 작물재배량 감소 비용 측정

작물생산소득(부가가치) 감소
 = 감소 농경지 면적 × 단위면적당 평균 작물소득액

- 농지총량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농지전용부담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출

$$\begin{aligned} & \text{농지총량 감소에 따른 비용} = \text{농지감소분의 농지전용부담금} \\ & = (\Sigma \text{숙박시설 소요면적} + \Sigma \text{일반음식점 소요면적}) \times \text{면적당 농지전용부담금(m}^2 \text{ 당} \\ & \quad 30,000\text{원 동일 적용) } \end{aligned}$$

- 감소 농경지 면적은 농촌관광 목적 토지이용을 위한 대표적인 완화대상 용도인 숙박시설과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소요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적용
- 숙박시설 소요면적
 - 통계청 산업세세분류 상 경제 총조사 상 숙박시설 중 농촌관광지에 적합한 기타 관광숙박시설의 사업체 수 및 시설면적은 각각 15,008개 업체, 6,508,993 m^2 로 업체당 평균 433 m^2 의 연면적을 이용함
 - 2층 건물을 가정할 경우 건폐 면적은 216 m^2 가 소요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의 법정 허용 건폐율은 20% 이하임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 1개소 당 소요 토지면적은 $216\text{m}^2 \div 20\% \div 90\%$ (법정허용건적률 대비 실건폐율) = 1,200 m^2 임
- 일반음식점 소요면적
 - 마찬가지로 통계청 산업세분류 상 일반음식점의 업체수와 소요면적은 317,908개소 46,113,855 m^2 로 업체당 평균 145 m^2 이 소요됨
 - 일반음식점 특성상 1층 건물로 가정할 경우 건폐면적 역시 145 m^2 이며 1개 업체당 소요 토지면적은 $145\text{m}^2 \div 20\% \div 90\%$ (법정허용건적률 대비 실건폐율) = 805 m^2
- 면적당 작물생산 소득액
 - 농촌관광목적의 토지이용은 실질적으로 지목상 ‘답’을 활용하기는 어려우며 주로 ‘전’ 또는 ‘과수원’에 해당하는 농지를 활용하게 될 것임
 - 농촌진흥청 2014년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르면 노지채소류의 10a당 연간 소득은 1,518,689원/10a, 노지과수의 연간 조수입은 2,958,680원/10a으로 조사됨

- 본 분석에서는 두 유형의 조수입의 산술평균인 2,238,685원/10a을 단위 면적 당 생산액으로 적용함

- 관광목적 토지이용에 따른 편익 : 관광목적 시설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
= $\Sigma ((\text{시설별 평균 영업이익} + \text{시설별 평균 인건비}) \times \text{시설개발 건수})$
-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기타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음식점의 업체당 부가가치(영업이익+인건비)는 각각 13.7백만 원, 47.81백만 원 임

□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

- 농지의 관광목적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시 해당 용도로의 토지용도 전환 건수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 다만 과거 농업관광 사업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보수적 가정을 통해 장래치의 범위를 설정토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5)에 따르면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중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휴양단지, 관광농원의 개발 현황(2014년 말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3.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현황(2014년)

농촌관광자원 유형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휴양단지	관광농원
개소	840	24	428

- 이 중 연도별 지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연도별 지정추이는 다음과 같음

표 4-4.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년도별 지정추이

년도	지정개소	년도	지정개소
1997년	1	2008년	110
2000년	1	2009년	100
2001년	5	2010년	85
2002년	24	2011년	63
2003년	33	2012년	48
2004년	45	2013년	34
2005년	61	2014년	37
2006년	79	총계	840
2007년	110		

- 이에 따르면 증가세가 안정화 된 최근 연간 연평균 지정 개소수는 53개소(≒53.4)임
- 이 같은 증가 추이를 기초로 유추할 경우 휴양단지는 연간 1.5개소, 관광농원은 연간 27.5개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농촌관광목적 용도로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시 현재의 증가추세보다 일정 수준 추가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연간 관광자원 개발건수 대비 일정 비율을 규제완화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량으로 설정토록 함
- 적극적 가정으로는 기존 증가추세 대비 40%의 추가적인 농촌관광자원 개발을 가정하며, 보수적 가정으로는 기존 증가추세 대비 20%를 가정토록 함
- 한편 주요한 관광목적 토지용도인 숙박시설과 일반음식점⁵ 중 숙박시설은 세가지 유형의 농촌관광자원 개발 중 관광농원에는 부적합한 시설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휴양단지에는 숙박시설과 일반음식점 조성을 포함하고 관광농원의 경우 일반음식점 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 경우 규제완화에 따라 추가로 조성·운영되는 농촌관광목적 시설의 연간 증가량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⁵ 판매장은 이미 농림지역에 개발 가능함.

표 4-5. 농촌관광목적 시설의 연간 증가량 추정

시나리오	시설유형	체험 휴양마을 휴양단지	관광농원	총계
적극적 가정 : 기존 추이 대비 40% 증가	숙박시설	22	-	22
	일반음식점	22	11	33
보수적 가정 : 기존 추이 대비 20% 증가	숙박시설	11	-	11
	일반음식점	11	5	16

□ 측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 비용 : 작물생산액 감소

- 앞에서 산출된 용도전환 건수를 기준으로 용도당 소요 면적과 작물생산에 따른 소득을 적용하여 작물생산 소득 감소비용을 추정
- 연간 용도전환에 따른 작물생산 소득 감소 = 숙박시설 전환 토지 생산 소득 감소 + 일반음식점 전환 토지 생산 소득 감소

$$\text{숙박시설 전환 토지 생산액 감소} = \text{전환건수} \times 1,200\text{m}^2 \times 2,239\text{원}$$

$$\text{일반음식점 전환 토지 생산액 감소} = \text{전환건수} \times 805\text{m}^2 \times 2,239\text{원}$$

· 이에 따른 각 시나리오 별로 연간 비용 증가액은 다음과 같음

시나리오	시설유형	작물생산액 감소(원)	총계(원)
적극적 가정 : 기존 추이 대비 40% 증가	숙박시설	59,099,040	118,567,449
	일반음식점	59,468,409	
보수적 가정 : 기존 추이 대비 20% 증가	숙박시설	29,549,520	58,382,688
	일반음식점	28,833,168	

· 또한 농지총량 감소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 증가는 다음과 같음

시나리오	농지감소 면적(m ²)	농지전용부담금(원)
적극적 가정 : 기존 추이 대비 40% 증가	52,965	792,000,000
보수적 가정 : 기존 추이 대비 20% 증가	26,080	396,000,000

- 편익 : 농촌관광 목적 시설운영에 따른 부가가치

· 비용·편익 측정지표 및 방법 결정에서 제시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를 해당 토지이용 전환 건수에 적용하면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연간 증가하는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음

시나리오	시설유형	작물생산액 감소(원)	총계(원)
적극적 가정 : 기존 추이 대비 40% 증가	숙박시설	301,400,000	1,879,130,000
	일반음식점	1,577,730,000	
보수적 가정 : 기존 추이 대비 20% 증가	숙박시설	150,700,000	915,660,000
	일반음식점	764,960,000	

- 이상의 연간 비용 편익 증가를 반영하여 연간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산출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음

표 4-6. 농업관광목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의 비용/편익 추정

적극적시나리오					
년도	규제완화편익	농업생산감소비용	농지총량감소비용	순편익	순편익 현재가치
2016	1,879	119	660	1,101	1,101
2017	3,758	237	1,320	2,201	2,086
2018	5,637	356	1,980	3,302	2,966
2019	7,517	474	2,640	4,402	3,749
2020	9,396	593	3,300	5,503	4,442
2021	11,275	711	3,960	6,603	5,052
2022	13,154	830	4,620	7,704	5,587
2023	15,033	949	5,280	8,805	6,053
2024	16,912	1,067	5,940	9,905	6,454
2025	18,791	1,186	6,600	11,006	6,797
2026	20,670	1,304	7,260	12,106	7,087
총계	124,023	7,825	43,560	72,637	51,375

보수적시나리오					
년도	규제완화편익	농업생산감소비용	농지총량감소비용	순편익	순편익 현재가치
2016	916	58	330	527	527
2017	1,831	117	660	1,055	1,000
2018	2,747	175	990	1,582	1,421
2019	3,663	234	1,320	2,109	1,796
2020	4,578	292	1,650	2,636	2,128
2021	5,494	350	1,980	3,164	2,421
2022	6,410	409	2,310	3,691	2,677
2023	7,325	467	2,640	4,218	2,900
2024	8,241	525	2,970	4,745	3,092
2025	9,157	584	3,300	5,273	3,257
2026	10,072	642	3,630	5,800	3,396
총계	60,434	3,853	21,780	34,800	24,614

□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 농지의 농업관광목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에 따른 비용은 매년 388~779백만 원씩 증가하여 10년간 연평균 2,563~5,138백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용도규제 완화에 따른 편익은 매년 916~1,879백만 원씩 증가하여 10년간 연평균 6,043~12,402백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른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총 24,614~51,375백만 원으로 추정됨

2.2.4. 기대 효과

- 농한기 농촌관광목적의 농지 일시이용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는 농촌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 추진에 있어 즐길거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개최와 관련한 제반비용을 경감시켜 농가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 이 밖에도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를 통해 개별 농가단위의 농촌관광목적 토지이용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농촌관광목적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규제 완화는 활용도가 낮은 일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농촌관광시설 확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농가 및 농촌마을 차원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지의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농산업 6차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3. 할랄식품 표시규제 완화

2.3.1. 분석대상 규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완화규제)		
	규제사무명	허위·과대·비방·과장 표시 제외대상 확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완화	등록단위	주 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진입장벽 해소	유형/구분	제외대상 추가 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농수축산물정책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할랄식품T/F팀 하미숙		
4. 근거법령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13조 관련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관련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관련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제2호다.목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민간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사업자 * '15년 7월 기준 : 할랄 인증(182업체 500품목), 공정무역 인증(15개 유통업체 15종), 한국표준협회 로하스 인증(20개 업체, 49품목), 기타 특산명품 웰빙인증 등 민간단체인증 업체 및 제품 다수 존재 			
6. 규제존속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대상 기만 및 오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 자체는 계속 존치 필요 			
7. 신설(완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의 등록,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영업자가 객관적인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인증을 받았음을 인증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 사실을 			

	<p>인증받은 제품에 표시하거나, 인증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그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허위 또는 과장 표시 및 광고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 추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3개 법률별 시행규칙 동시 개정 										
<p>8. 규제체계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23 683 917 728"><현행></th> <th data-bbox="917 683 1329 728"><완화 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23 728 917 92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만 인증서·보증서 취득</div> </td> <td data-bbox="917 728 1329 92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민간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보증서 취득</div>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data-bbox="917 929 1329 104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필요시 현지 확인</div> </td> </tr> <tr> <td data-bbox="523 1041 917 1236">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인증사업자가 제품 등에 인증사실을 표시 및 광고 실시 가능</div> </td> <td data-bbox="917 1041 1329 1236">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인증사업자가 제품 등에 인증사실을 표시 및 광고 실시 가능</div> </td> </tr> </tbody> </table>	<현행>	<완화 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만 인증서·보증서 취득</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민간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보증서 취득</div>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필요시 현지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인증사업자가 제품 등에 인증사실을 표시 및 광고 실시 가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인증사업자가 제품 등에 인증사실을 표시 및 광고 실시 가능</div>
<현행>	<완화 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만 인증서·보증서 취득</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민간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보증서 취득</div>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필요시 현지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인증사업자가 제품 등에 인증사실을 표시 및 광고 실시 가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인증사업자가 제품 등에 인증사실을 표시 및 광고 실시 가능</div>										

2.3.2. 규제완화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 인증제도는 원칙적으로 개별 영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자율적으로 인증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는 제도로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됨.
-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증제도가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법정 인증제도(농식품 관련 법정 인증제도 29종)로 운영되고 있지

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사항과 사회경제적 발전속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국제적 인증제도와 조화된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는 업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 특정 종교인 대상 인증제도 : 할랄(무슬림), 코셔(유대인)
- * 지구 공동체 의식 확산 및 제3세계 배려 : 공정무역
- * 소비자 건강 및 복지과 지구환경 보호 : 로하스, 웰빙특산품 등

- 특히, 할랄식품의 경우 57개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에서 민간 주도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의 성장잠재력도 매우 큼.

- * 세계할랄식품시장규모 : ('14)1조 860억 USD → ('18)1조 6800억 USD
이상 성장전망

- 국내에서 식품, 축산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이 되며, 이들 법률에서 정한 표시기준에서는 현재까지 민간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여 영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객관적 평가를 거쳐 인증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을 원천 봉쇄하고 있음.

- 특히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산업화가 필요하지만, 수출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내수용 제품에는 이들 인증표시를 규제함으로써 인증품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부 할랄 인증제품(라면)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무슬림 및 무슬림 관광객을 위하여 수출품을 역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2) 규제의 완화 필요성

□ 허위표시 또는 과장광고 규제 도입 목적

-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의 규제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려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표시가능한 인증제도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지 못하며,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어서 수입되는 식품과 국내 생산품 간에 역차별이 발생함

□ 규제완화의 타당성

< 해당 규제완화가 규제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민간 제3자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에 그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허용은 해당 기업의 마케팅제고를 통해 투입한 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수단임.
- 인증표시에 대한 진실성은 해당 인증제도별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통해 입증 가능하므로 허위표시가 성립될 수 없음.

[참고 1]

영국의 Red-Tractor 인증제도는 민간 인증제도이지만, 오히려 영국 정부가 인증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제품 포장에 그 표시도 허용하고 있음.

(사진 : 로고 및 제품 표시 예)



<p>[참고 2] 독일과 프랑스 등의 식품유통망 안전보증체제 인증제도인 IFS-Food 인증제도 역시 민간 인증제도이지만, 관련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여 유통되고 있음. (사진 : 로고 및 제품 표시 예)</p>	
<p>[참고 3] 미국 식품안전협회가 운영하는 NSF 인증제도 역시 미국의 지방, 주 및 연방정부가 모두 인정하는 식품안전 인증제도로써 인증받은 제품에 인증로고 표시가 허용되고 있음. (사진 : 로고 및 제품 표시 예)</p>	
<p>[참고 4] 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HACCP, 할랄, 코셔 등의 복수 인증을 받은 제품이 그 인증표시를 모두 하여서 유통하여도 문제되지 않음</p>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식품군의 인증표시에 관한 규제는 민간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없이는 기업의 인증표시 자체가 불가능함.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 대안) 허위표시 또는 과장광고 등으로 보지 않는 대상에 “민간 자율의 제3자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켜야만 기업의 자율적인 인증획득에 따른 마케팅 수단 확보와 향후 민간 인증제도 자체의 활성화 유도가 가능함.

□ 규제완화의 적정성

< 규제완화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민간 제3자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허용은 소비자 기만 및 오인 방지라는 규제목적에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인증사실이 입증 가능하므로 충분한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마케팅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미국 FDA의 경우, 식품 표시의 규제대상은 강조표시에 대해서는 “건강 강조표시”와 “영양성분 함량표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구성 및 기능 특성 강조표시”의 3가지로 국한되어 있으며, 제3자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사실 표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US FDA-“A Food Labelling Guide” 참조>
- EU의 새로운 식품 표시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 2014.12.13. 시행)에서도 의무 표시사항만 규정하면서 임의표시사항은 의무 표시사항과 동일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제3자 인증표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일본 소비자청의 식품표시법에 따른 규정에서도 의무규정 이외에 표시금지 사항은 원산지 또는 내용물을 오인시키는 표시로만 규정하여 민간 제3자 인증표시에 대한 사항은 임의표시사항으로서 허위표시만 아니면 표시금지 대상이 아님.

2.3.3. 규제완화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완화에 따른 직·간접 비용 >

-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직·간접 소요비용은 없음
(기업의 제3자 인증획득 비용은 임의사항으로 비용 산출 대상이 아님)

< 규제완화에 따른 직접 편익 >

- 민간 제3자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표시 허용을 통해 제3자 인증획득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인증품 매출 증대 10% 이상 가능 추정

* 매출액 증가 편익: 228,401백만 원

1) 산출근거 : 228,401백만 원(민간 제3자 인증표시 허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액)

* 산식 : $\sum_{t=1}^{10} [74\text{조원}(2014\text{년 가공식품 매출액}) \times 5\%(\text{민간 제3자 인증제품 비율}) \times 10\%(\text{매출액 증가율}) \times \frac{1}{(1+r)^{t-1}}]$

• 제3자 민간 인증제품 매출액: 370,000백만 원(2014년)

• 제3자 인증표시 허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율: 10%

• 할인율(r)=5.5%, t =10년

< 규제완화에 따른 간접 편익 >

- 민간 제3자 인증제도 수요 증가에 따른 민간 인증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며, 편익은 인증제도별 인증비용에 비례하여 기업 부담금으로 상쇄됨.

-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알권리 충족에 따른 편익은 발생하지만, 계량적 산출은 곤란함.

<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민간 제3자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사실의 표시 허용에 따른 전체 연간균등편익은 최소 22,840백만 원이고, 연간균등비용은 없으므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음

표 4-7. 비용편익 결과

단위: 백만 원

	순편익(현재가치)		연간균등순편익(현재가치)	
비용	직접	0	직접(A)	0
	간접	-	간접	-
	소계	0	소계	0
편익	직접	228,401	직접(B)	22,840
	간접	-	간접	-
	소계	228,401	소계	22,840

2.3.4. 기대 효과

- 민간 자율 제3자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사실에 대한 표시허용으로 인증업체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가에 직결
-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제도(할랄, 코셔, SQF, GlobalGAP 등)의 인증을 받은 국내 식품기업이 안정적인 내수기반 확보를 통한 수출시장 진출 확대 가능
- 국내 농식품 인증제도의 민간 주도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민간 인증기관 육성 및 발전 촉진

2.4. 할랄식품 전문인력 채용제도 개선

2.4.1. 분석대상 규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완화규제)		
	규제사무명	외국정부의 할랄 도축자격을 갖춘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완화	등록단위	주 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 진입장벽 해소	유형/구분	외국인 취업 및 체류 특례 부여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법무부	제안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할랄식품T/F팀 하미숙		
4. 근거법령명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151101) 중 도축업(154803) * '15년 7월 현재 국내 소재 할랄 도축장은 없음 : 기금류 도축장 59개소, 포유류 도축장 83개소 등 국내 전체 도축장은 142개소임.			
6. 규제존속기한	○ 할랄 도축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무슬림의 할랄 도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계속 존치 필요			
7. 신설(완화) 규제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을 정한 별표 1과 관련하여 국내 할랄도축장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할랄도축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대상자 중 “기술지도(E-4)”에 포함시키고, 같은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증발급기준을 “이슬람 국가 정부가 발행한 할랄 도축인 자격보유자”로 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별표5의 E-4에 대한 구비서류를 면제하고도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들이 국내 할랄 도축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할랄 도축장 운영이 가능하게 지원하고자 함.			
8. 규제체계도	<현행>		<완화 후>	
	○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 허용 대상에 할랄 도축인 미포함 (국내에서는 할랄 도축인 자격제도가 없음)		○ 외국 정부가 인정한 할랄 도축인 자격보유자에게 전자사증발급 및 취업활동 보장	

2.4.2. 규제완화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할랄 식품은 무슬림이 그들의 율법에 따라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모든 식품을 말하며, 최근에는 할랄식품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소비자 인식 확산에 따라 57개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에서 유통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성장잠재력도 매우 큼.
* 세계 할랄식품시장규모 : ('14)1조860억 USD → ('18)1조6800억 USD이상 성장전망
- 특히 무슬림들은 할랄식품만을 섭취할 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준수하고 있으며, 할랄식품임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허용하는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축절차에서 반드시 '자비아⁶'의 도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축인은 반드시 성인의 자격을 갖춘 무슬림이어야만 함.
- 2014년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62억 달러로 2017년까지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할랄식품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국내에는 할랄 전용도축장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할랄 축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원료 식육 공급을 위한 할랄 전용도축장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함.
- 할랄 도축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할랄도축인(소 및 닭) 자격을 갖춘 무슬림

⁶ 이슬람식 도살법(Zabiha /Dhabiha) : 살아있는 동물의 머리를 메카로 향한 후 무슬림 성인이 '신의 이름으로(Bismiollah)'라 기도한 후 '신은 위대하다(Allahu Akbar)' 3번 외쳐 신에게 허락을 구함. 날카로운 칼로 동물의 목 등을 끊어 놓거나 거꾸로 매달아 피를 완전히 빼낸다.

이 이슬람식 도살법에 따라 도축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할랄도축인 자격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분야의 자격제도 운영은 불가능하므로, 이슬람 국가의 정부가 부여한 할랄도축인 자격을 갖춘 외국인 도축인의 고용이 불가피함.

-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서는 기술지도(E-4)의 경우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할랄 도축인”이 E-4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함.
- 따라서, 국내 할랄 전용 도축장(소 및 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할랄도축인(소 및 닭)을 외국인 자격자로 대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 자격을 갖춘 할랄 도축인의 국내 입국, 체류 및 취업활동의 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E-4에 해당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규제의 완화 필요성

□ 출입국관리 규제 도입 목적

-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기준은 외국 국적 소지자의 무분별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제도임.
- 그러나, 동 체류자격 구분의 E-4에 외국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할랄 도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내에서 할랄 전용도축장을 운영하려는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할랄 도축인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움.

□ 규제완화의 타당성

< 해당 규제완화가 규제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국내에서는 “할랄 도축인” 자격제도가 현재까지 없으며, “할랄 도축인”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므로 앞으로도 동 자격제도가 신설될 가능성이 없음.
- 도축업 자체가 내국인 기피업종으로서, 원활한 도축작업 인력 확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국내 인구 중에서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0.1% 미만이어서 내국인으로 “할랄 도축인”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이슬람 국가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할랄 도축인”을 국내의 “할랄 전용 도축장” 영업자가 직접 고용하여야 해당 도축장에서 할랄 축육 생산이 가능하므로, 이의 허용이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외국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할랄 도축인”의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별표 1의 체류자격에서 “E-4”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만 한다면 기존 규제로도 “할랄 도축인”의 국내 체류자격 확보 및 취업활동에는 제한이 해소될 수 있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 대안) 외국인 출입국 관리 자체를 “할랄 도축인”에 한하여 면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제3국 간의 상호 호혜평등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별도의 비규제 대안은 없음.

□ 규제완화의 적정성

< 규제완화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현행 규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할랄 도축인”을 특수한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술제공자로만 인정하면, 국내 신설 할랄전용 도축장의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국내산 가축을 이용한 할랄 식육생산과 생산된 할랄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할랄 축산물 가공품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도축장에 이들 인원을 대체 근로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내 축산업 발전과 할랄식품 수출시장 개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음.

< 해외사례, 타범사례 분석 및 비교 >

- 국내 산업의 특수성과 고용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이므로 해외사례 또는 타범사례의 비교분석 대상이 아님.

2.4.3. 규제완화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완화에 따른 직·간접 비용 >

-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직·간접 소요비용은 없음

< 규제완화에 따른 직접 편익 >

- 국내 할랄도축장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여 국내산 할랄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과 할랄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할랄 축산물의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함.

* 매출액 증가 편익: 122,222백만 원

1) 산출근거 : 180,000백만 원(1일 소 50두 및 닭 5,000수 도축 기준 연 매출액)

$$* \text{산식} : \sum_{t=1}^{10} [1,800 \text{억 원(연평균 할랄도축장 매출액)} \times 110\%(\text{매출액 증가율}) \times \frac{1}{(1+r)^{t-1}}]$$

• 할랄전용도축장 매출액(소, 닭) : 180,000백만 원(300일 조업기준 추정)

- 연차별 매출액 증가율: 110%
- 할인율(r)=5.5%, t =10년

< 규제완화에 따른 간접 편익 >

- 할랄 도축장 운영 및 이를 통한 국내산 할랄 축산물가공품 생산은 향후 국내 수요 및 축산물 검역 등에 따른 수출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추정이 불가능함.
-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알권리 충족에 따른 편익은 발생하지만, 계량적 산출은 곤란함.

<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 외국정부가 자격부여한 할랄 도축인 출입국 간소화 및 취업허용에 따른 전체 연간 균등편익은 최소 12,222백만 원이고, 연간균등비용은 없으므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음

표 4-8. 비용편익 결과

단위: 백만 원

	순편익(현재가치)		연간균등순편익(현재가치)	
	직접	간접	직접(A)	간접
비용		0		0
	간접	-	간접	-
	소계	0	소계	0
편익	직접	122,222	직접(B)	12,222
	간접	-	간접	-
	소계	122,222	소계	12,222

2.4.4. 기대 효과

- 이슬람 국가의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외국인 “할랄 도축인”의 국내 “할랄 전용 도축장” 취업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할랄식육 생산 및 수출과 이들을 원료로 하는 수출용 “할랄 축산가공품” 생산을 통한 2017년 국가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음.
- 국내 거주 무슬림 15만 명과 매년 한국을 찾는 무슬림 관광객 등 약 100만 명 이상의 체류 또는 방문 외국 무슬림에게 국내산 할랄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공급이 가능하여 수출대체 효과 유발

2.5. 우수식품인증 절차 간소화

2.5.1. 분석대상 규제

우수식품인증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업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문서*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인증 신청서류, 심사자료, 조사결과자료, 시험의뢰 결과 자료 등

2.5.2.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식품산업도 성장하고 있음. 현재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 요구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식품의 품질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자율적인 품질보증체제의 정착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과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등을 위하여 우수식품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인증은 산업표준과 국제표준을 제공하여 적합성평가 대상(제품, 방법·기술 또는 서비스)이 해당 표준이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제3자가 객관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신뢰성있는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복 평가 배제 및 선택편이성을 제공하며, 표준 또는 인증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확보를 보증하고, 적용하는 표준이나 기술기준에 따라 보증의 대상이 다변화·다양화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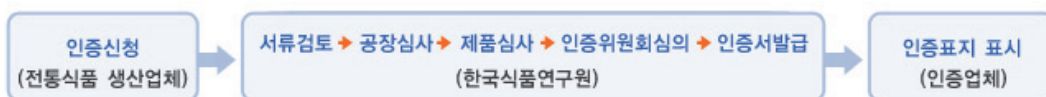
1-1)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제도

- 가공식품 표준화(KS)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 법적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산업표준화법」
- 표시대상 품목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
- 인증절차



1-2)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써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음
- 법적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고시
- 인증절차



- 우수식품인증제도는 법에 따른 인증, 사후관리, 기타 질서를 잡아가게 되어 서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명확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증제도가 모두 마련됨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제도와 동등성 협약을 맺어서 상호 신뢰의 바탕을 마련
- 하지만 유사식품인증 관련 제도의 이중운용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문서보존기간이 과도하여 인증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음
- KS식품인증과 전통식품인증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두

인증 모두 절차상 공장심사 등 현장심사를 하게 되어 있음. KS식품인증을 받은 업체가 전통식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동일 검사기관에서 공장심사를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우수식품 인증기관에서 인증 신청서류, 심사자료, 조사결과자료, 시험 의뢰 결과 자료 등의 문서를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어 과도한 보존기간으로 업체에 부담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식품인증제도에서 중복심사를 면제하고 과도한 문서보존기간을 단축할 필요성 대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우수식품인증절차에 필수적인 공장심사를 KS인증업체에서 전통식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함으로써 동일심사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심사를 면제하게 되면 이를 통해 업체에 심사준비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업체의 부담을 완화
- 우수식품인증과 관련된 문서를 일정기간 보존함에 있어서 현행 5년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게 되면, 문서보존과 관련한 시설과 인적 자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영세한 규모의 식품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안전성, 영양성, 건전성 및 편리성 그리고 기호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품질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우수식품인증제도를 유지하면서 생산자들이 보다 많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인증제도의 절차적 간소화를 도입할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증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까다롭고, 유지·운영에 인력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3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렵게 인증을 받아도 실제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18.1%,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는 응답이 15.9%, 인증 획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14.8%를 차지함.

표 4-9.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의 문제점

구 분	응답업체 수	비 율
인증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까다롭고 유지·운영에 인력, 비용이 많이 소요	62	34.2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표시방법, 품목 선정 등이 모호하거나 적합하지 않음	14	7.7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나 생산자나 모두 혼란스러움	29	15.9
어렵게 인증을 받아도 실제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음 (소비자 인식 부족)	33	18.1
인증 획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함	27	14.8
생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인증을 획득해도 광고·홍보에 어려움이 많음	12	6.6
기타 응답	5	2.7
합 계	182	100.0

자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상 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문서보존기간도 시행령 등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단축이 가능함.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간소화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기업체의 인증간소화를 통한 인증업체를 증대와 부담경감을 할 수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 대안)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체계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적절한 시설과 생산설비, 인력을 갖춘 식품기업에 대한 인증관리체계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러한 인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협회·단체차원의 자율적인 기준준수 등으로는 목적달성 가능성이 낮음
- (덜 규제적인 대안) 모든 식품인증에 있어서 공장심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제품이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현장심사가 없는 인증이 된다면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판매하는 안전하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식품의 유통 및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공장심사 생략을 위한 기준으로 KS인증업체의 경우에만 생략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검사기관에서 동일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생략하는 것으로 우수식품인증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됨
 - 공장심사의 기준의 세부사항은 가공식품KS인증과 전통식품인증이 상당

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연 1회 이상 현장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장심사를 보다 철저히 진행하여 공장심사의 생략에 따른 혼선 방지와 기준 미충족 등을 점검할 계획임

표 4-10. 가공식품KS인증과 전통식품인증 공장심사항목

가공식품KS인증	전통식품인증
표준화일반	가. 공장입지
유통관리	나. 작업장
자재의 관리	다. 제조설비
공정관리	라. 원료조달 및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마. 공정 및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바. 용수관리
검사장비관리	사. 개인위생
	아. 환경위생
	자. 유통관리
	차. 포장 및 표시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 개요.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우수한 식품에 대한 인증과 관련한 주요 해외사례를 보면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프랑스의 라벨루즈(Label Rouge)는 일반 제품에 대한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의 품질을 정기검사 및 특별관리를 통하여 보증하는 형태임. 1960년 농업부에 의해 도입되어 프랑스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이 인증하고 있음.
 - 적용범위는 프랑스 농업법 L조 641-1항에 정의되어 있는데, 라벨루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식료품, 비가공농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에서도 2000년부터 농업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JAS법은 농림물자의 품질개선, 생산합리화 거래의 단순화 및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음. 식품의 규격을 정하여 보급함으로써 품질을 개선하고 인증마크를 통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추구하고 적절한 표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품에 JAS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자는 제조시설,,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의 치계가 충분하다는 인정을 받은 농림수산물 등록 인정기관에 한함.

- (유사입법 사례) 전통식품인증심사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그리고 공장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제품심사때 불합격하여 불합격 통보후 1년 이내에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다시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⁷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인 나목, 바목, 사목, 아목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⁸.

2.5.3. 규제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대안 >

- 각 인증신청시 공장심사 → KS인증업체의 전통식품인증신청시 공장심사 면제

< 현행유지안 >

- 현재 KS인증 업체에서 전통식품인증 신청을 할 때 공장심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8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비규제 대안) 가공식품협회 등 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회원사의 적격성 유지 등 노력 전개
- (덜 규제적 대안) 없음

< 규제대안의 대안 >

-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 및 적정 품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식품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 비규제적 대안으로는 또 다른 민간차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적정 수준의 유지도 쉽지 않으므로 KS인증업체를 기획특한 업체에 한하여 전통식품인증신청시 공장심사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최적의 대안임.
- 또한 우수식품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서의 보존기간도 그에 맞추어 단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의 비용

- (직접비용) 해당 없음
- (간접비용) 해당 없음

2-2) 규제에 따른 편익

- (직접편익: 공장심사 생략에 따른 편익) 공장심사 생략이 실시되면 해당 심사비용이 절감되며 또한 인증처리기간이 10일 단축되어 평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10백만 원, 연간균등순편익)

* 공장심사 평가비용 절감액 : 10백만 원

1) 산출근거 : 80백만 원(공장심사 평가비용 절감액)

* 산식 : 32만원(업체당 공장심사 평가비용 절감액) × 111(2015년 현재 KS인증업체수) +

$$\sum_{t=2}^{10} [32만원(업체당 공장심사 평가비용 절감액) \times 20개소(신규 KS인증업체수) \times \frac{1}{(1+r)^{t-1}}]$$

- 2015년 현재 KS인증업체수 : 111개소(우수식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모두 전통식품인증 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
- 신규 KS인증업체수 : 20개소 (2015년 인증 20개업체수 유지 가정)
- 업체당 공장심사 평가비용 절감액 : 32만원(농식품부 문건)
- 할인율(r)=5.5%, t=10년

- (간접편익 : 서류 보관기간 단축에 따른 편익)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문서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관리 인력절감과 보관비용을 절감 - 인력절감과 보관장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절감(254백만 원, 연간균등편익)

* 서류보관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액 : 254백 만원

2) 산출근거 : 2,018백만 원(서류보관기간 비용 절감액)

* 산식 : $\sum_{t=1}^{10} [(중소기업 평균시급 11천원(중소기업 평균임금 / 30일 / 8시간) \times 1시간(서류 관리시간) + 5천원(보관장소비용) \times 20(우수식품인증업체수)) \times 24개월(단축기간) \times \frac{1}{(1+r)^{t-1}}]$

• 중소기업 평균임금 : 264만원(국세청 국회제출자료)

- 서류관리시간 : 월 1시간 가정
- 보관장소비용 : 월 5,050원 (사무실 평당 임대료 10만원, 서류분량 골판지 1박스 가정)
- 우수식품인증업체수 : 659개소 (2015년 현재 KS 인증 111개업체, 전통식품인증 578개 업체)
- 할인율(r)=5.5%, t=10년

2-3) 비용편익 분석 결과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업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생략과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문서* 보존기간 단축규제로 파급되는 전체 연간균등편익은 264백만 원이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편익이 비용보다 높음

표 4-11. 비용편익 결과

단위: 백만 원

	순편익(현재가치)		연간균등순편익(현재가치)	
	직접	간접	직접	간접
비용		-		-
	간접	-	간접	-
	소계	-	소계	-
편익	직접	80	직접	10
	간접	2,018	간접	254
	소계	2,098	소계	264

2.5.4. 기대 효과

- 인증 신청 업체의 부담 경감에 따라 공장심사 생략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및 인증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 부담 완화로 식품산업 활성화
- 우수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에 대한 인증을 보다 효율적인 인증체계 도입으로 영세한 식품산업에서 생산·판매되는 우수한 상품에 대하여 산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수식품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으로 국내 식품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강화
-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통하여 상품경쟁력 확보와 식품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국내 식품산업 뿐만 아니라 원료산업인 국내 농수축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일조

2.6. 「전통주 생산 및 유통·판매」규제완화

□ 규제완화 개요

-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완화, 안 제3조)
 -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을 현행 「전통주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이에 따른 통신 판매 수단 정비
-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신설, 주세법 시행령 제5조)
 - 자가음식점에서 탁·약주의 직접 제조·판매를 위한 주류 제조의 제조자 시설기준 확립 및 제조면허 신설
 - 제조면허 신설을 통한 주세 과세표준 자료를 보완하여 주세처분의 근거 마련

1.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안 제3조)

< 분석대상 규제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완화규제)		
	규제사무명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완화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진입	유형/구분	기준완화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세청	제안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처	소비세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명 등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전통주의 통신판매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 * '15년 기준 : 우체국, 전통주 제조자, aT, 지자체 홈페이지			
6. 규제존속기한	○ 전통주의 통신판매 완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계속 존치 필요			
7. 신설(완화) 규제의 내용	○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단으로 기존 우체국, 전통주 제조자, aT, 지자체 홈페이지외에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및 농협 쇼핑몰을 추가 하여야 함			
8. 규제체계도	○ 전통주의 통신 판매 승인 신청(15일 이전)			
	↓			
	○ 서류 검토			
↓				
○ 전통주의 통신 판매 승인 신청서 발급				

2.6.1. 규제 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전체 주류시장의 총 출고수량은 3,819,974kl이며 총 출고 금액은 약 8조 2,504억 원(2012년 기준)

표 4-12. 국내 전체 술 시장 규모('12년 기준)

	전체	맥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탁주	기타
금액(억원)* (비중, %)	82,504 (100)	41,137 (49.9)	31,333 (38.0)	1,045 (1.3)	1,190 (1.4)	4,495 (5.4)	3,304 (4.0)

- 전통주 업체의 총 출고수량은 12,167kl이며, 총 출고금액은 562억 원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약 0.7%에 해당(12년 기준)
- 출고금액 기준 과실주가 259억 원으로 전통주 시장에서 46.1%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탁주(막걸리)가 95억 원의 매출로 16.9%의 점유율을 차지

표 4-13.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12년 기준)

	전체	탁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금액(백만원)* (비중, %)	56,157 (100)	9,474 (16.9)	5,091 (9.1)	25,909 (46.1)	4,251 (7.6)	6,829 (12.2)	3,373 (6.0)	1,231 (2.2)

- 전통주 제조 면허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15개에서 2005년 232개, 2011년 57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 전통주는 다른 일반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통경로⁹가 있으나, 다수가 특정주류도매업자¹⁰를 거쳐 유통

- * 막걸리·전통주는 제조자가 직접 소매업자·소비자에 판매가능하고,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도 가능
 - ** 특정주류도매업자('11년, 1,885개)는 탁주·약주·청주·전통주만 취급가능, 특히 탁주는 반드시 특정주류도매업자만 취급이 가능
- 종합주류도매업자·할인점은 상품 회전율이 높은 소주·맥주 위주로 취급하고 전통주는 취급을 기피
- * 종합주류 취급비율(출고량기준, '11년) : 맥주 63.3%, 소주 36, 약주 0.4, 복분자 0.2, 위스키 0.1
- 이러한 주류 유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소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인터넷 판매를 실시 중
- 기존 전통주 통신판매처는 우체국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mall.epost.go.kr>),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농산물유통공사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eatmart.co.kr>), 전통주 제조장이 속한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로 매우 한정적이어서 판매* 및 매출 확대가 어려움
 -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13년도에 식품명인관을 설치하여 명인 전통주 판매 촉진 → '14년도에는 전통주 코너 확대 개편
 - * 우체국 쇼핑몰내 전통주 매출 현황 : 27억('10년) → 27억('11년) → 22억('12년) → 10억('13년 5월)

⁹ 막걸리·전통주는 제조자가 직접 소매업자·소비자에 판매가능하고,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도 가능함.

¹⁰ 특정주류도매업자('11년, 1,885개)는 탁주·약주·청주·전통주만 취급가능, 특히 탁주는 반드시 특정주류도매업자만 취급이 가능함.

표 4-14. 막걸리·전통주 업체 규모별 판매처

구분	주류도매상	유흥음식점	수퍼연쇄점 등 소매상	직판장	우편판매
0.5억 미만	6.2%	8.4%	34.0%	14.1%	6%
0.5~1억 원	15.9%	8.1%	40.9%	5.1%	8.6%
1~5억	31.4%	7.5%	29.4%	17.7%	4.6%
5~10억	64.1%	3.3%	6.9%	14.4%	3.7%
10억 원이상	61.2%	2.8%	16.4%	9.4%	4.5%
전 체	27.4%	6.9%	29%	13.4%	5.5%

* 농촌경제연구원, 2011.

- 하지만, 아직 전통주 인터넷 판매에 있어 인지도가 낮아 인터넷으로 전통주를 구매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전통주 판매처로 확대하는 소비 확대의 필요성 대두

2) 규제의 완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전통주의 통신판매 창구가 한정되어 있어 전통주의 판매에 어려움이 있기에 판매처를 확대, 완화함으로써 전통주의 통신판매 활성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의 다양한 판매처 확보가 필요함. 그 중 전통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신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통신판매 수단을 명확히 정해 둘 필요가 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기존 규제로는 전통주의 인터넷 소비확대가 어려우며 전통주의 통신판매에 있어서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에 판매처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기존 규제안으로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 대안) 전통주의 통신판매에 있어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에 판매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수 사항이며, 이러한 제도 마련 없이는 통신 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전통주의 활성화에 대한 목적달성 가능성이 낮음
- (덜 규제적인 대안) 전통주의 통신판매에 있어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에 판매처에 대한 기준 마련이 없으면 다른 유통 판매를 활성화해야 하나 예산 투자 대비 그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전통주류 통신판매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에 추가사항으로 판매처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류유통은 전매제도¹¹나 면허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¹¹ 국가가 재정 수익을 얻기 위하여 특정의 물품에 대한 판매 및 생산의 권리를 독점하

- 주류의 통신판매와 관련한 주요 해외사례는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세법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일본)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판매를 허용
 - 주류의 통신판매는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 (주세법 법령해석통지 제9조 제1항의 관계 8)
 - 통신판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주류는 ① 카탈로그 등의 발행년월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 주류의 품목당 과세 매출 수량이 모두 3,000kl 미만인 제조자가 제조, 판매하는 국산주류와 ② 수입주류로 그 범위가 한정(주세법 법령해석통지 제11조 제1항의 관계 3)
 - (미국)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은 주마다 상의
 - 플로리다 주, 뉴저지 주, 캔사스 주 등의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¹²의 경우에는 일정한 면허를 갖춘 경우 통신판매가 가능
 - (영국) 주류의 통신판매는, 대면 판매와 마찬가지로 2003년 면허법 등의 규제 하에 허용
 - 점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점포에 유효한 인적 면허를 보유한 점포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연령 확인 정책을 시행(별도로 규정된 청소년 보호의 방식을 준수)
 - (EU)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온라인 주류 판매를 전면 허용
 - EU내 주류의 통신 판매량은 전체 주류업계 매출의 2% 수준이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세수증대에 기여
- 는 제도임.
- ¹² 캘리포니아주는 와인통신판매면허(off-sale retail wine license)만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EU 내 주류 통신판매 매출 : ('00)84억 유로 → ('06)180억 유로
- 주류 통신판매량 중 인터넷 판매량 비중 : ('00)8% → ('06)66%

< 위임근거 검토 >

- 기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에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을 추가하여 인터넷 판매처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6.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에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을 추가하여 인터넷 판매처 확대

< 현행유지안 >

- 기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에는 전통주 제조자, 우체국 쇼핑, aT,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주류 구매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인터넷 판매처는 명시하지 아니함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비규제 대안) 없음
- (덜 규제적 대안) 없음

< 규제대안의 대안 >

-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주류의 판매에 있어서는 주세법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음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에는 전통주 제조자, 우체국 쇼핑, aT,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여 추가 판매처에 대한 명시 없으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불가함으로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이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최적의 대안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의 비용

- (직접비용) 전통주 인터넷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용 발생
 - 다만,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들의 홈페이지 제작 여부가 명확치 않아 정밀한 규제비용의 산출은 어려움
 - 현재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소요비용 추정(농협 쇼핑몰)(4백만 원)
 - * 홈페이지 제작 비용: 4백만 원
 - 1) 산출근거 : 4백만 원(홈페이지 제작 비용)
 - 인터넷 판매 업체: 1개(농협 쇼핑몰) 적용
 - 업체당 홈페이지 제작 비용: 4백만 원
 - ※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미산정
- (간접비용) 해당 없음

2-2) 규제에 따른 편익

- (직접편익) 전통주 인터넷 판매범위가 확대 실시되면 전통주의 소비처 확대로 판매량이 연간 1% 정도 전통주 소비 향상 추정(220백만 원, 연간균등순편익)
 - * 생산성 증가 편익: 1,749백만 원
 - 1) 산출근거 : 1,749백만 원(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전통주 판매 증가 편익)
 - * 산식 : $\sum_{t=1}^{10} [2,200\text{백만 원(우체국 인터넷 판매액)} \times 1\%(\text{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전통주 판매 증가율}) \times \frac{1}{(1+r)^{t-1}}]$
 - 연간 우체국 인터넷 판매액: 2,200백만 원(2012년 기준)
 - 우체국 인터넷 판매 증가율: 1%
 - 할인율(r)=5.5%, t=10년
- (간접편익) 해당 없음

2-3) 비용편익 분석 결과

- 전통주 인터넷 판매범위 확대로 파급되는 전체 연간균등편익은 220백만 원 이고, 연간비용은 4백만 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음
- 주류 산업의 특성상 정확한 규제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나, 소비처의 확대를 통해 규제 비용 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

표 4-15. 비용편익 결과

단위: 백만 원

	순편익(현재가치)		연간균등순편익(현재가치)	
	비용	직접	-	직접(A)
간접		-	간접	-
소계		-	소계	4
편익	직접	1,749	직접(B)	220
	간접	-	간접	-
	소계	1,749	소계	220

2.6.3.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에 의견을 반영한 것임

2) 집행자원 및 능력

- 현재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은 국세청에서 고시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집행에는 문제없음

2.6.4. 기대 효과

- 전통주의 유통,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로 전통주 소비 확대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전통주 판매처 확대에 따른 전통주 소비 촉진 효과
 - 침체된 우리 전통주 시장 활성화 및 홍보 효과 증가

2.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안 제5조)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제안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환경에너지세제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명 등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1항 별표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탁·약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 * '13년말 기준 : 탁·약주 제조장 수 1,174개(민속주, 전통주 252개)			
6. 규제존속기한	○ 탁·약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속 존치 필요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자가음식점에서 탁·약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소규모 탁·약주 제조 기준 설정			
8. 규제체계도	○ 소규모 탁·약주 주류 제조 면허 신청			
	↓			
	○ 탁·약주 서류 검토			
↓				
○ 소규모 탁·약주 주류 제조 면허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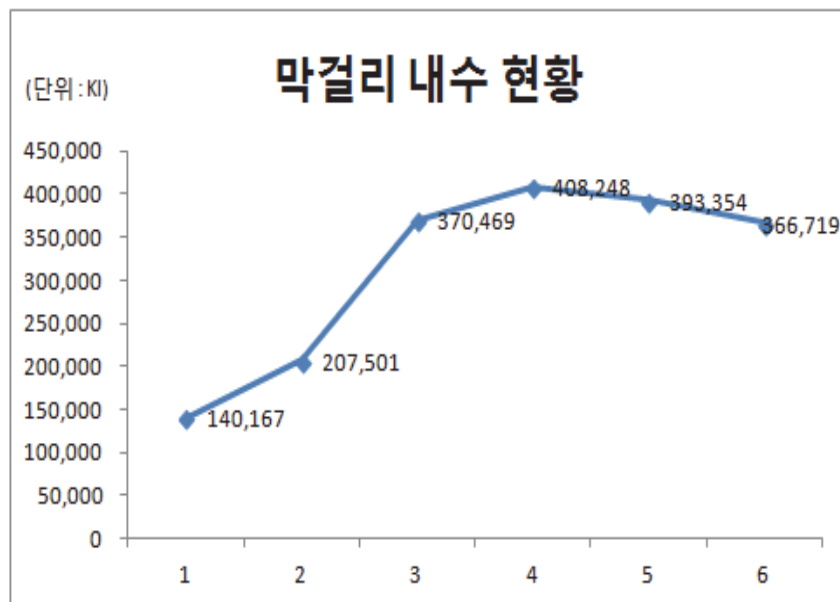
2.6.5. 규제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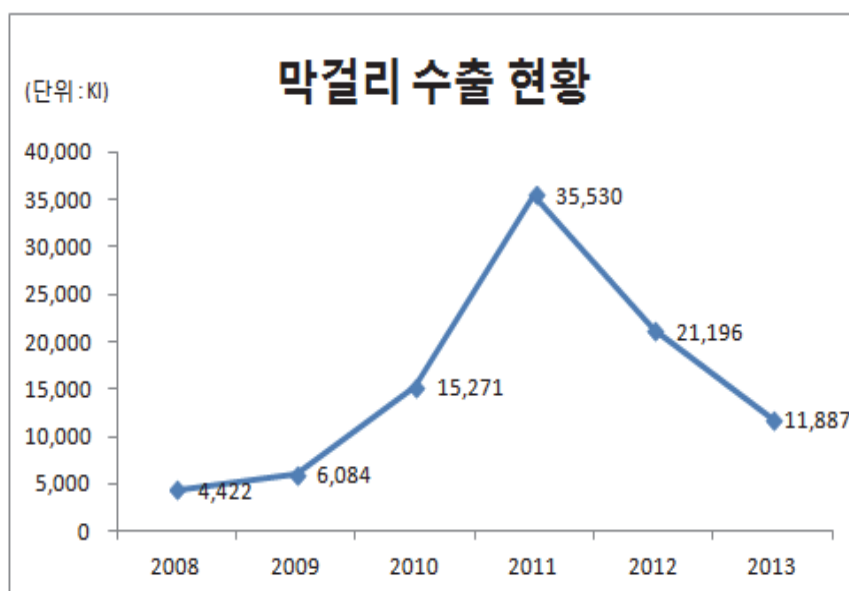
1)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요 정체*와 수입주류와의 경쟁심화로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막걸리·전통주 업계는 어려움이 가중
 - 1인당 알코올 소비량(ℓ) : 9.12('12) → 8.69('13)
 - 와인·맥주·사케 수입액(백만불) : 158.6('09) → 213.3('12)

- 상승세를 보이던 막걸리의 내수·수출은 '1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 막걸리 내수감소 이유: 신제품개발 미흡, 홍보마케팅 부족, 음주문화 변화 (소폭확산, 사케 등 수입증가)
 - 막걸리 수출 감소 이유 : 주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가격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 반한감정 대두, 음주패턴 변화 (저알콜주 선호)

그림 4-1. 막걸리 내수 및 수출 현황





- 현재 주류 유통은 면허를 가진 주류 도·소매업자 위주로 이루어져 유통과정 (제조-도매-소매)에서 과당경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구조
 - 판매관리비 등 유통망 관리능력이 취약한 전통주업체는 유통에 제약, 특히 소규모업체일수록 판로 범위가 제약

표 4-16. 막걸리·전통주 업체 규모별 판매처

구분	주류도매상	유흥음식점	수퍼연쇄점 등 소매상	직판장	우편판매
0.5억 미만	6.2%	8.4%	34.0%	14.1%	6%
0.5~1억 원	15.9%	8.1%	40.9%	5.1%	8.6%
1~5억	31.4%	7.5%	29.4%	17.7%	4.6%
5~10억	64.1%	3.3%	6.9%	14.4%	3.7%
10억 원이상	61.2%	2.8%	16.4%	9.4%	4.5%
전 체	27.4%	6.9%	29%	13.4%	5.5%

* 농촌경제연구원, 2011.

- 종합주류도매업자·할인점은 상품 회전율이 높은 소주·맥주위주로 취급하고 전통주는 취급을 기피
 - 종합주류 취급비율(출고량기준, '11년) : 맥주 63.3%, 소주 36, 약주 0.4, 복분자 0.2, 위스키 0.1
- 주종별 판매 방법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소매상을 거쳐 주점/일반 음식점에 판매되는 탁주·약주의 비율이 18.2%로 슈퍼 연쇄가맹점의 17.6% 보다 높음(일반주류의 경우 탁주·약주 25.8%, 슈퍼 연쇄가맹점 28.2%)

표 4-17. 주종별 판매 방법별 판매 비중

	도매상				소매상				직거래			
	종합주류도매업체	특정주류도매업체	슈퍼/연쇄점본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	대형할인매장/백화점	슈퍼연쇄가맹점소매점	농수축협	주점/일반음식점	기타소매	방문객관광객	직판점전시판매장	통신판매
전체	6.4	10.4	9.6	2.3	2.4	8.7	5.3	6.4	8.3	19.4	13.8	7.1
탁주 (막걸리)	6.7	14.5	20.9	3.0	1.1	16.1	6.2	11.4	3.2	6.9	5.0	5.1
약주	4.6	13.1	11.3	3.1	0.5	1.5	4.9	6.8	8.5	8.5	18.9	18.4
과실주	4.9	8.8	4.4	2.2	2.9	7.2	5.5	2.2	9.1	30.1	19.9	2.8
증류식소주	20.4	25.7	0.4	16.7	4.6	0.8	17.1	4.2	0.8	2.0	0.4	6.9
일반증류주	14.3	17.9	1.4	0.0	4.3	3.6	0.4	3.9	14.3	33.1	4.3	2.6
리큐르	8.0	17.1	1.9	13.0	4.1	9.9	5.3	4.5	7.4	14.9	4.5	9.6
기타주류	0.4	25.8	0.8	13.3	1.7	9.2	10.8	5.0	10.0	3.8	3.8	15.4

* 2012 주류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3.

- 탁·약주는 음식점에서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제조시설 기준이 없어 음식점에서 주류 생산 후 판매를 못하기에 전통주 소비 촉진에 어려움이 있음
 - * 맥주는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도입('02년) 운영 중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탁·약주 제조업도 「소규모맥주 제조면허」와 같이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의 신설 필요성 대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장(자기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탁·약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통주의 소비활성화 유도 목적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자기음식점)에서 탁·약주의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제조시설 기준이 추가로 신설되지 않으면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둘 필요가 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전통주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는 기존 규제로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자기음식점)에서 탁주·약주의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없기에 주세법 시행령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별표 3에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에 대한 기준 등이 새로 신설되지 않으면 식품접객업 영업장(자기음식점)에서 탁주·약주의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 대안) 전통주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주세법 시행령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별표 3에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수 사항이며, 이러한 제도 마련 없이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자기음식점)에서 탁주·약주의 제조 및 판매 할 수 없으므로 전통주의 활성화에 대한 목적달성 가능성이 낮음

- (덜 규제적인 대안) 전통주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별표 3에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에 대한 기준 마련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통한 전통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그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전통주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 주류제조를 위한 기준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별표 3에 추가사항으로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류유통은 전매제도나 면허제도에 의해 관리
 - 도매면허의 경우 지역 내 정해진 개수를 제한하거나 지역정부 및 의회 동의하에 개수의 제한 없이 면허를 허가함
- (일본) 일본의 경우 ‘주세보전 및 주류조합 등에 관한 법률’로 주류의 품질 관리와 표시방법, 주류업단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짐
 - 주류제조면허는 시설요건 없이 품목별 연간 최저생산량을 충족할 경우 면허를 받도록 규정(주세법 제7조)
 -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주류를 자기영업장에서 판매할 때는 별도의 판매면허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일본 주세법 제9조)
 - 지역진흥을 위한 구조개혁특구에서 농장의 민박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경우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탁주(도부로구)를 생산하여 제조장내에서 판매하거나 자기영업장에서 소비할 경우 최저생산량기준 적용을 면제(2007년 28개 도부로구특구운영)

- (중국) 중국의 경우 2005년 이후 모든 주종에 대해 생산허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종별로 「생산허가증심사세칙」규정을 가짐
 - 각 주종별로 기본 제조과정 및 주요 통제항목,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제조설비(제조장소, 제조시설), 제조관련 국가표준 목록, 원부재료의 요구조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하검사설비,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표본추출방법 등을 명시
 - 주류유통은 2005년 11월 7일 공포한 「주류유통관리방법」(상무부령 제25호, 2006.1.1 시행)을 통해 주류의 도매 및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 혹은 개인은 영업증을 획득한 이후 상무주관 관서에 등기하도록 규정

- (미국) 미국의 경우 주류 관련 범죄행위가 없고 과세상 의심이 가지 않는 자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
 - 주종별로 주류제조시설 기준은 양조장의 건물, 시설, 용기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
 - 전매제도를 채택한 주정부가 경영하는 판매점만이 모든 주류 또는 일부 주류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 면허제도를 채택한 주의 주류는 모두 주정부 등에서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점에서만 판매함

- (독일) 독일의 주류판매면허는 도매, 소매의 구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전 주류면허와 한정면허(맥주, 와인 취급 한정)의 구분에 의해 허가하고 있으며 판매는 점내, 점외 소비에 대한 구별이 없고 양쪽 모두 판매 할 수 있음.
 - 면허상, 업소내 소판매면허(주류취급 레스토랑 면허)와 업소의 소매판매 면허(일반주류판매 면허)는 구분되지 않고 있지만 통상 이 기능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점포는 거의 없음.

- (영국) 영국에서는 주류판매업 중 도매업을 제조의 부수기능으로 주류도매업을 위한 특별한 면허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맥주를 포함한 발효주 제조시설은 신고사항이며 주류 제조방법을 규제

하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알코올 및 알코올음료의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사업자가 되기를 희망하거나 직접 생산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 및 유통사업자 승인’을 받아야함
 - 모든 주류 제조시설은 관세국에 신고해야하며 제조시설무의 수량, 특성, 선능 등을 신고해야함
 - 소규모 업소판매면허(Petite Licence Restaurant): 음식과 함께인 경우에만 그룹 제1~2종의 알코올 음료를 업소내 소비를 위해 판매 허용
 - 업소판매면허(Licence Restaurant): 음식과 함께인 경우에만 제1~5종의 모든 음료를 업소내 소비를 위해 판매 허용

- (유사입법 사례) 맥주의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관련 별표 3 주류제조장의 시설 기준 중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정의를 내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곳에서 맥주를 직접 제조, 판매할 수 있게 하였음

< 위임근거 검토 >

- 기존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관련 별표 3 주류제조장의 시설 기준에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추가하여 자기음식점에서 전통주를 직접 제조,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6.6.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장(자기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탁·약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유지안 >

-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주세법에서는 주류제조 및 판매에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있음. 이에 주류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식품접객업 영업장(자기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탁·약주를 제조·판매를 할 수 없음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비규제 대안) 없음
- (덜 규제적 대안) 없음

< 규제대안의 대안 >

-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침체되어 있는 전통주 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활발한 판매가 되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자기음식점)에서 다양한 탁·약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됨

- 비규제적 대안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자기음식점) 등에서 주류제조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을 통해 새로운 제조면허를 만드는 것이 최적의 대안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의 비용

○ (직접비용)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시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주류 제조에 관한 설비를 갖추는 때 비용이 발생(2,517백만 원, 연간균등비용)

※ 제조설비 기준 담금·제성조 2kl 탁주 기준

- 다만, 주류 제조설비에 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밀한 규제비용의 산출은 어려움
- 또한,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신청 예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 150개로 예상('13 50석 이상 음식점 및 주점업 수 150,430개, 이중 0.1% 150개)

* 신규 발효설비 구축 비용 : 2,442백만 원(탁주 기준)

** 주류 제조 교육 비용 : 596백만 원

1) 산출근거 : 2,442백만 원(신규 발효설비 구축)

* 산식 : $\sum_{t=1}^{10} [150\text{개 업체} \times 16,280\text{천원(업체당 발효설비 구축 비용)} \times \frac{1}{(1+r)^{t-1}}]$

· 50석 이상 음식점 및 주점업 수: 150,430개(2013년 기준) 적용

· 업체당 시설현대화 비용: 16,280,000천원

· 할인율(r)=5.5%, t=10년

2) 산출근거 : 75백만 원

$$** \text{산식} : \sum_{t=1}^{10} [150\text{업체} \times 50\text{만원(인력 1명 교육비용)} \times 1\text{회} \times \frac{1}{(1+r)^{t-1}}]$$

· 탁약주제조 업체: 150개(2013년 기준) 적용

· 할인율(r)=5.5%, t=10년

○ (간접비용) 해당 없음

2-2) 규제에 따른 편익

○ (직접편익)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도입을 통해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농산물(쌀 등) 소비가 증가되어 연간 약 16% 정도의 전통주 제조 쌀 소비량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생산된 고급 막걸리의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의 자가소비는 80% 소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5,265백만 원, 연간균등순편익)

* 쌀 소비 생산성 증가 편익: 427백만 원

* 고급 막걸리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의 자가소비 증가 편익 : 4,838백만 원

1) 산출근거 : 3,395백만 원(전통주 생산에 따른 쌀 소비량 증가 편익)

$$* \text{산식} : \sum_{t=1}^{10} [2,668\text{백만 원(전통주 생산 시 쌀 소비금액, 2,000원/kg 기준)} \times 16\%$$

$$(\text{쌀 소비량, 쌀 } 120\text{kg/1달} \times 150\text{개 업체} \times 12\text{개월}) \times \frac{1}{(1+r)^{t-1}}]$$

· 전통주 생산 시 쌀 소비금액 : 2,668백만 원(2012, 주류산업실태조사보고서)

· 소규모 탁주 제조 시 연간 쌀 소비량 : 216톤(16%)

※ 216톤(쌀 120kg/1달*150개 업체*12개월)/1,334톤(전체 전통주 제조 쌀 소비량 1,334톤)

· 할인율(r)=5.5%, t=10년

2) 산출근거 : 38,473백만 원(고급 막걸리 생산에 따른 소비 증가 편익)

$$* \text{산식} : \sum_{t=1}^{10} [4,838 \text{백만 원(고급막걸리 생산 시 소비 금액, 7,000원/500mL)} \\ \text{기준)} \times \frac{1}{(1+r)^{t-1}}]$$

· 고급막걸리 생산 시 소비 금액(7,000원/500mL) : 4,838백만 원

· 소규모 탁주 제조시 연간 막걸리 소비량 : 345.6KL(80%)

※ 전체 쌀 소비량 216톤으로 생산 가능한 고급 막걸리 생산량 432 KL

· 할인율(r)=5.5%, t=10년

○ (간접편익) 계량은 어려움이 있음

-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도입을 통해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직접 제조한 탁·약주를 판매 할 수 있으므로 탁·약주와 함께 안주 등의 소비가 증가되어 전체 영업장의 판매 수입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
- 또한, 직접 제조한 탁·약주를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고급화 이미지 또는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 등의 효과가 발생

2-3) 비용편익 분석 결과

-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도입을 통해 파급되는 전체 연간균등편익은 5,265백만 원이고, 연간균등비용은 2,517백만 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음
- 비용과 편익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간접적 편익(안주 판매 및 영업장의 이미지 상승 효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하지만 추가적인 간접 편익을 예상할 필요가 있음
- 규제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나, 규제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

표 4-18. 비용편익 결과

단위: 백만 원

	순편익(현재가치)		연간균등순편익(현재가치)	
	비용	직접	20,016	직접(A)
간접		-	간접	-
소계		20,016	소계	2,517
편익	직접	41,868	직접(B)	5,265
	간접	-	간접	-
	소계	41,868	소계	5,265

2.6.7.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기재부·국세청, 탁약주제조중앙회 등 이해관계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으며 추후 의견 청취를 계속할 예정이다

2) 집행자원 및 능력

- 현재,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도입은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면허 발급은 기존에 하던 업무로 현행 행정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 가능

2.6.8. 기대 효과

-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도입은 새로운 전통주 제조, 유통 판매처의 추가로 제품 다양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판매 증대의 효과가 있음
 - 막걸리·약주의 추가 소비처 확대에 따른 쌀 소비 촉진 효과
 - 침체된 우리 전통주 시장 활성화 및 다양성 확대
 - 새로운 우리 전통주 판매처 형성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욕구 해소

2.7.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 절차 개선

2.7.1. 분석대상 규제

1)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 절차 개선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를 위하여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실천수준을 자율점검하게 한 후, 위해요소관리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율점검표¹³로 대체

2)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 구비서류 제출 의무 완화

-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관원이 보유한 토양·용수 분석 정보 활용하여 토양 및 용수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는 필지의 경우 GAP 인증 필수 서류인 토양·용수 성분분석서 제출 생략

2.7.2.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중독세균, 곰팡이 독소, 기생충, 바이러스 등 각종 위해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 2014년 정부에서는 GAP인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 등록을 폐지하고, 인증신청시 구비서류도 3건

¹³ 2015 10개 주요 작물별 자율점검표 개발(2017년 77개 품목 개발 예정, 농촌진흥청).

으로 대폭 감축

- GAP인증 간소화와 함께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함.
 - *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해당 작물의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점검 방법 등의 이행 계획서로 채소, 과수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작물별 중점요소 및 기준이 다름(농촌진흥청)
- 하지만 GAP 인증시 제출해야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기존 GAP 인증제도에 HACCP 개념이 좀 더 강화된 것으로 농산물의 생산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처음 접하는 낯선 개념에 직면하게 됨.
 -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농산물 생산에 있어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지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로 △세척과 소독이 필요한 품목 △세척이 필요한 품목 △세척과 소독이 필요 없는 품목으로 작물을 나눠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됨
- 이에 따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으나,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가 어려운 용어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인증 기피 요인으로 작용
- 또한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년마다 1회 이상 토양 중금속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하고 및 해당 분석서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실제 오염요인이 없는 지역이나 적합한 농업용수(저수지 등)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지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농가의 비용을 소요
- 따라서,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및 합리적인 토양/수질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웰빙·안전·개방화 시대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목표로 GAP제도의 보편적인 확산을 위하여 인증절차의 간소화 및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체계적인 생산방법을 통한 경쟁력 확보
- GAP 농산물의 안전성은 강화와 관리의 조화를 위하여 위해요소관리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작성이 쉽지 않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자율점검표로 대체하고, 정기적인 토양·수질검사를 기존에 농관원 등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면제하여 줌으로써 농가에 인증관련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수요 측면에서 GAP가 활성화 돼 GAP가 보다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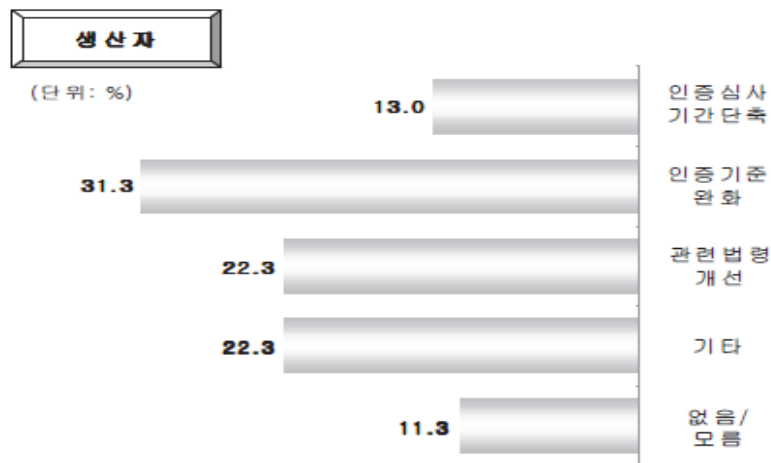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GAP인증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GAP인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GAP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가 쉽게 운영·관리할 필요
 - 농가를 대상으로 GAP인증과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선 필요 있음이 54.3%로 많았으며, 개선사항으로는 ①인증기준 완화(31.3%), ②관련법령개선(22.3%), ③인증심사기간단축(13.0%) 순임

표 4-19. 농업인의 GAP에 대한 개선사항 인식

		생산자			
		사례수(명)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전체		400	15.0	30.8	54.3
성별	남성	373	15.8	30.6	53.6
	여성	27	3.7	33.3	63.0
연령	20대	2	0.0	0.0	100.0
	30대	20	20.0	25.0	55.0
	40대	101	9.9	32.7	57.4
	50대	162	14.2	34.6	51.2
	60대 이상	114	20.2	25.4	54.4



* 농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출처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07, 이수일)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GAP인증 신청시 작성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위해요소 분석 단계에서 존재 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나열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후 관리로 나눈 뒤, 심각성을 평가해 점수를 산출해 내는 방식임.
- 이러한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작성을 처음 접하게 되는 농업인으로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또한 공공기관에 의해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토지 및 공동이용용수 등에 대하여 분석 및 검사를 신청개별농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3.0시대의 공공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이며 안전농산물 기반증대를 위한 GAP인증의 확대노력에 한계를 부과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 대안)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수 사항이며,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을 경우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덜 규제적인 대안) 누구나 자율점검표로 대체하거나 토양·수질정보에 검사 생략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이라는 1차적인 GAP인증제도의 목표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증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여 GAP인증 농산물의 증대 효과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를 위하여 GAP 실천수준을 자율점검하게 한 후, 위해요소관리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율점검표로 대체하는 것은 자율점검매뉴얼이 개발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관리능력이 있는 농가만을 자율점검표로 대체해주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토양 및 용수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는 필지의 경우에 토양·용수 분석서의 제출을 생략한다는 것으로 간소화를 하되 일정 관리는 하게 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됨.

- 작물별 특성에 맞는 인증서류 작성 매뉴얼을 제공하고, 매뉴얼이 구축된 품목에 대해서만 GAP 인증 시 작성 서류 간소화
-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토양 중금속 등 기 분석된 적합 필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농가별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 완화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Codex에서는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7월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을 비준
- FAO는 2003년 4월에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토양·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임
 - * 식품체인접근법(Food Chain Approach)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
- EU는 농산물 생산과정의 안전성, 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를 강조하면서 EUREPGAP(GLOBALGAP)을 도입하고 있음. 동유럽의 EU 가입을 위한 농업 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였으며,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제정을 통해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임을 시사
 - * EUREPGAP은 유럽에서 민간주도로 시작된 개발된 GAP제도로서 유럽의 농산물 유통단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품질 및 안전성 인증프로그램
 - 2007년 9월 EUREPGAP은 GLOBALGAP으로 명칭 변경
 - 2013년 현재 115개국, 13만 명 이상 인증 참여

- 중국은 국무원 산하의 중국국가인증위원회 감독관리위원회(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GAP 인증기준을 설정하며, 중국질량인증중심(CQC)이 대부분의 인증을 담당하는데, 1급 GAP와 2급GAP를 분리하여 인증하고, 1급GAP는 '09. 2월에 Global GAP과 MOU 체결을 통해 동등성인정을 획득
 - 자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안전확보와 원활한 무역확대를 위해 GAP제도를 활용
- 미국은 식품의약청(FDA)에서 GAP 실행규범을 마련하고 FSIS(Federal-State Inspection Service)에서 GAP관리
 - 주별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되어 GAP실행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 (유사입법 사례) 2014년 9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GAP인증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하여 행정처리 기간은 42일로 줄어들고, 구비서류도 3건으로 감축하였음.
 - * 2014년 9월 30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개정

2.7.3. 규제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GAP 실천수준을 자율점검하게 한 후, 위해요소관리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율점검표로 대체

- 토양 및 용수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는 필지의 경우 GAP 인증 필수 서류인 토양·용수 성분분석서 제출 생략

< 현행유지안 >

- 2014년 인증절차 간소화를 기 추진하여 GAP 인증 구비서류 축소(12종 → 3종)하면서 농가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위해요소 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신설
-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년마다 토양 중금속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하고 및 해당 분석서의 보관을 의무화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비규제 대안) 없음
- (덜 규제적 대안) 모든 GAP신청 농가의 자율점검

< 규제대안의 대안 >

-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 안전 농산물 공급체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 2014년 인증절차 간소화 조치에서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가 어려운 용어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인증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GAP인증 농가에서 4년마다 토양 중금속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염 요인이 없는 지역이나 적합한 농업용수를 공동으

로 사용하는 필지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농가의 비용을 소요

- 현행유지나 덜규제적 대안으로는 GAP인증 확대를 통한 안전농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GAP인증 절차를 보다 더 간소화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임

2-1) 규제의 비용

○ (직접비용)

① GAP 실천수준 자율점검을 위하여 자율점검표 개발에 따른 투자비용 발생

- 현재 농촌진흥청의 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77개 품목에 대한 자율점검표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초기에 77개 품목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품목당 자체점검표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정밀한 비용의 산출은 어려움(77백만원, 1회성비용)
- 현재 GAP인증을 받은 농가를 기준으로 자율점검을 위하여 준수사항, 자율점검표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용비용 추정(29백만 원, 연간균등비용)

* 자체점검표 개발 비용: 77백만 원

** 교육비용: 29백만 원

1) 산출근거 : 77백만 원(자체점검표 개발)

* 산식 : [77품목× 100만(품목당 자체점검표 개발 비용)]

• 품목 수: 농촌진흥청 향후 계획 적용

• 자체점검표 개발 비용: 100만 원

2) 산출근거 : 230백만 원(교육비)

** 산식 : $\sum_{t=1}^{10} [11,581 \text{ 농가} \times 15 \text{ 만원(농가 30호당 교육비용)} \times 1 \text{ 시간} \times \frac{1}{(1+r)^{t-1}}]$

• 농가수: 2015년 현재 인증농가 46,323호의 1/4(4년 갱신기준 균등분배) 적용

• 할인율(r)=5.5%, t=10년

② 토양 및 용수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한 토양·용수 성분분석서 제출을 생략하고 농관원이나 농업기술센터이 보유한 토양·용수 분석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정보를 보유하여 함.

- 현재 전국농지와 농업용수에 대한 정보보유율 자료가 없어 경상남도기술원에서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추진 중인 토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예를 따라 산출함(64백만 원, 연간균등비용).

* 토양·용수정보 개발 비용: 64백만 원

1) 산출근거 : 509백만 원(자체점검표 개발)

$$* \text{산식} : \sum_{t=1}^{10} [11,581 \text{농가} \times 1.8\% (\text{정보개발농가 증가율}) \times 31 \text{만원} (\text{토양수질검사비}) \times \frac{1}{(1+r)^{t-1}}]$$

• 농가수: 2015년 현재 인증농가 46,323호의 1/4(4년 갱신기준 균등분배) 적용

• 정보개발 농가 증가율: 경남의 경우 225만필지 중 매년 4만필지 정보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용

• 토양수질검사비: 수질분석비 230천 원, 토양분석비 77천원(농관원) 적용

• 할인율(r)=5.5%, t =10년

○ (간접비용) 해당 없음

2-2) 규제에 따른 편익

○ (직접편익)

① GAP 자율점검을 하여 위해요소관리능력이 일정수준이상이면 자율점검표로 대체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에 따른 시간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를 생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 향상(10백만 원, 연간균등순편익)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제출생략에 따른 기회비용: 560백만 원

1) 산출근거 : 4,456백만 원(기회비용)

$$* \text{ 산식 : } \sum_{t=1}^{10} [11,581 \text{ 농가} \times 50\% (\text{자율점검실천가능농가 비중}) \times 12 \text{천 원} (\text{농업인평균시급}) \times \\ 8 \text{시간} (\text{자율점검대체에 따른 절약시간}) \times \frac{1}{(1+r)^{t-1}}]$$

- 농가수: 2015년 현재 인증농가 46,323호의 1/4(4년 갱신기준 균등분배) 적용
- 자율점검실천가능농가 비중: 50% 가정
- 농업인평균시급: 농업임금 97천 원/1일(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를 8시간적용 환산
- 할인율(r)=5.5%, t =10년

② 토양·용수 성분분석서 제출을 생략에 따른 농가에서는 토양·용수 성분분석비를 절감하게 되어 비용절감(957백만 원, 연간균등순편익)

** 토양·용수 성분분석비 절감 : 957백만 원

2) 산출근거 : 7,609백만 원

$$* \text{ 산식 : } \sum_{t=1}^{10} [11,581 \text{ 농가} \times 31 \text{만 원} (\text{토양수질분석비}) + 25\% (\text{현재 토양수질정보 보유비중}) \times \\ 1.8\% (\text{정보개발농가 증가율}) \times \frac{1}{(1+r)^{t-1}}]$$

- 농가수: 2015년 현재 인증농가 46,323호의 1/4(4년 갱신기준 균등분배) 적용
- 토양수질검사비: 수질분석비 230천 원, 토양분석비 77천 원(농관원) 적용
- 토양수질정보 보유율: 경남의 경우 농지의 25%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경남농업기술원) 이를 적용
- 정보개발 농가 증가율: 경남의 경우 225만필지 중 매년 4만필지 정보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1.8%) 이를 적용
- 할인율(r)=5.5%, t =10년

○ (간접편익) 해당 없음

2-3)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절차 개선을 통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자율 점검표로 대체하고, 기 수집된 공공 토양·용수 정보를 이용하여 토양·용수 분석을 생략해주는 규제로 과급되는 전체 연간균등편익은 1,517백만 원 이고, 연간균등비용은 93백만 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음.

표 4-20. 비용편익 결과

단위: 백만 원

	순편익(현재가치)		연간균등순편익(현재가치)	
	직접	간접	직접	간접
비용		739		93
		-		-
	소계	739	소계	93
편익		12,065		1,517
		-		-
	소계	12,065	소계	1,517

2.7.4. 기대 효과

- GAP 인증농가에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4년마다 소요되는 수질 분석 및 토양 분석 비용 절감과 GAP 인증서류 작성 간소화로 농업인의 GAP 제도 참여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차별성 강화
- GAP인증 확대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 농업인의 작업시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되고, dI인증관련 업무에서 시간과 노력을 경감하게 되어 안전·건강·복지를 증진
-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국내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일조

2.8.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2.8.1. 분석대상 규제

-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관세청 협업)

2.8.2.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상당한 수의 농림축산식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2005년 22억 달러에서 2014년 61억 달러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음.

표 4-21. 농식품 연도별 수출 실적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농림축산식품	농림수산식품
2005	물량	1,894	1,482
	금액	3,416	2,222
2008	물량	2,211	1,626
	금액	4,497	3,048
2010	물량	2,947	2,312
	금액	5,880	4,082
2011	물량	3,479	2,793
	금액	7,691	3,206
2012	물량	3,914	3,206
	금액	8,006	5,645
2013	물량	4,023	3,336
	금액	7,876	5,725
2014	물량	4,307	3,605
	금액	8,250	6,183

- 농업인 또는 수출업체가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수출 대상국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수출 대상국은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함
- FTA 세율로 적용받아서 농식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임
- FTA 체결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증명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국가에 따라 자율발급 혹은 기관발급이 진행되고 있음
 - 자율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수출출자가 비교적 간단한 서식을 통해 신고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을 진행
 - * 자율발급 협정 국가는 칠레, EFTA, EU, 페루(일부), 터키, 미국이 해당
 - 기관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로 다양한 서식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유지
 - * 기관발급 협정 국가는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일부)가 해당

표 4-22.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발급방식	발급자	증명서식	유효기간	사용언어	사용횟수
칠레	자율발급	수출자	통일증명서식	2년	영어	1회 사용 원칙
싱가폴	기관발급	싱가포르 (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국가별 증명서식	1년	영어	1회 사용 원칙
EFTA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영어	1회 사용 원칙
아세안	기관발급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 상의)	AK서식	1년	영어	1회 사용 원칙
인도	기관발급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KIN서식	1년	영어	1회 사용 원칙
EU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글, EU 당사국 언어	1회 사용 원칙
페루	기관(5년), 자율발급	기관 (페루: 통상관광부, 한국:세관, 상의), 자율 (수출자)	기관(통일증명 서식), 자율(송품장 신고방식)	1년	영어	1회 사용 원칙
터키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영어	1회 사용 원칙
미국	자율발급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서식없음 (한국:권고서식 제공)	4년	영어, 한글	12개월 내에 포괄 발급 가능

자료: 관세청.

- 국내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은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그림 4-2.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자율 발급



기관발급

세관 발급

» 온라인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 온라인



»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자료: 관세청.

- 이상의 절차를 통해서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농업인이 FTA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절차를 이행 중
 - * 필요한 구비서류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기존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따른 FTA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농산물인증(등록)서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 4종으로 지정

-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4년 11월 28일 관세청과 원산지 증명 간소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5년 5월 18일에 「FTA 관세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음

표 4-2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의 변경 사항

<p>기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제출 - 수출자: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원료구입명세서, 생산 공정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제출 																												
<p>↓ ↓ ↓ ↓ ↓</p>																													
<p>국가 인증 농산물 인증서 해당 농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농산물이력추적 관리등록</th> <th>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th> <th>친환경 농산물인증</th> </tr> </thead> <tbody> <tr> <td>표시도형</td> <td></td> <td></td> <td></td> </tr> <tr> <td>목적</td> <td>농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문제가 발생할경우 신속히 회수 및 추적관리</td> <td>농산물의 생산·공급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여 안전성 확보</td> <td>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td> </tr> <tr> <td>근거법령</td> <td>농수산물품질관리법</td> <td>농수산물품질관리법</td> <td>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td> </tr> <tr> <td>인증기관</td> <td>농관원</td> <td>농관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48개소)</td> <td>·농관원 ·농관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71개소)</td> </tr> <tr> <td>인증등록 대상</td> <td>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td> <td>농장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 까지 위해요소가 적절하게 관리된 농산물</td> <td>유기농·축산물, 무농약(무항생제)농산물, 저농약 농산물</td> </tr> <tr> <td>인증현황 ('14.10)</td> <td>4,618건 100천호</td> <td>2,517건 44천호</td> <td>23,546건 87천호</td> </tr> </tbody> </table>	구 분	농산물이력추적 관리등록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	친환경 농산물인증	표시도형				목적	농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문제가 발생할경우 신속히 회수 및 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공급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여 안전성 확보	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인증기관	농관원	농관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48개소)	·농관원 ·농관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71개소)	인증등록 대상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	농장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 까지 위해요소가 적절하게 관리된 농산물	유기농·축산물, 무농약(무항생제)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인증현황 ('14.10)	4,618건 100천호	2,517건 44천호	23,546건 87천호
구 분	농산물이력추적 관리등록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	친환경 농산물인증																										
표시도형																													
목적	농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문제가 발생할경우 신속히 회수 및 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공급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여 안전성 확보	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인증기관	농관원	농관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48개소)	·농관원 ·농관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71개소)																										
인증등록 대상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	농장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 까지 위해요소가 적절하게 관리된 농산물	유기농·축산물, 무농약(무항생제)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인증현황 ('14.10)	4,618건 100천호	2,517건 44천호	23,546건 87천호																										
<p>↓ ↓ ↓ ↓ ↓</p>																													
<p>농가>>> 농관원</p>	<p>농산물을 FTA 체결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 등은 농관원에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p>																												
<p>↓ ↓ ↓ ↓ ↓</p>																													
<p>농관원</p>	<p>농관원은 국가 인증·등록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p>																												
<p>↓ ↓ ↓ ↓ ↓</p>																													
<p>관세청</p>	<p>관세청은 인증 농산물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를 부여</p>																												
<p>↓ ↓ ↓ ↓ ↓</p>																													
<p>농관원</p>	<p>HS코드가 표기된 영문인증서를 농가에 발급</p>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 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는 것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상당히 필요한 개선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기존의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나 수출업체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기존 규제만으로는 농식품 수출 관련 농가나 업체의 불이익을 경감시킬 수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 대안)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 자체를 수출 농가나 업체들이 누릴 수 없기에 비규제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덜 규제적인 대안)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를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및 인적 자원 비용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데, 현재 제기되는 개선 방안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안임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기존의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는 것은 규제 정도 및 수준을 적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해외사례나 타법 사례로 적절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음

2.8.3. 규제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함

< 현행유지안 >

-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비규제 대안)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이나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음
- (덜 규제적 대안) 전술된 규제 대안이 해당됨

< 규제대안의 대안 >

-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기존의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

정하여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의 비용

- (직접비용) 행정 자원의 일부 사용이 예상되나 큰 의미는 없어 생략함
- (간접비용) 해당 없음

2-2) 규제에 따른 편익

- (직접편익: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에 따른 편익)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를 농산물인증(등록)서(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 4종)로 대신하게 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 부담 경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30백만원, 연간균등순편익)

*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로 인한 비용 절감액 : 30백만 원

1) 산출근거 : 239백만 원(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 절감액)

* 산식 : 50만 원(수출 건당 증명서 발급 비용 절감액) × 60(연간 농식품 수출 증명서

$$\text{발급 예상 건수}) + \sum_{t=2}^{10} [50\text{만 원(수출 건당 증명서 발급 비용 절감액)} \times$$

$$60(\text{연간 농식품 수출 증명서 발급 예상 건수}) \times \frac{1}{(1+r)^{t-1}}]$$

•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건당 비용 절감액: 50만 원

필요 서류	발급처	발급(작성) 시간 추정치
농지원부	읍·면·동 사무소	2
경작사실확인서	읍장·면장·이장	4
수매·출하 확인서	농협 등 농산물 출하업체	2
거매명세서	거래처	2
원산지 확인서	농가 작성	5
원산지 소명서	농가 작성	5
증빙서류 입증을 위한 수출업체/수입자의 정보 요청 및 사업장 방문	농가 입증	10

증빙서류 감축(5종 이상 → 1종) 및 사후검증 생략으로 수출 건당 50만 원 (40시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건당 산출 근거는 관계 기관 담당자 등과의 논의 결과, 기존 증명서 발급에 40시간(증명서 발급: 3일 X 8시간 = 24시간, 사후 검증: 2일 X 8시간 = 16시간)이 소요되고, 관련 비용을 시간 당 1.25만원으로 상정하여 계산

· 연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예산 건수: 60건

2014년 11월 관세청과의 관련 MOU 체결 후 2015년 7월부터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고 현재 (2015년 11월 말)까지 총 25건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연간 건수로 환산하면 60건으로 추정

· 할인율(r)=5.5%, t =10년

- (간접편익: 농식품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한 편익)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보다 활성화되어 농식품 수출 실적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생략함

2-3)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 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는 경우 예상되는 전체 연간균등편익은 30백만 원이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편익이 비용보다 높음

표 4-24. 비용편익 결과

단위: 백만 원

	순편익(현재가치)		연간균등순편익(현재가치)	
	직접	-	직접(A)	-
비용	간접	-	간접	-
	소계	-	소계	-
	직접	239	직접(B)	30
편익	간접	-	간접	-
	소계	239	소계	30

2.8.4. 기대 효과

- 농식품 수출 농가나 업체들의 수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부담이 경감되어 농식품 수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농가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됨.

2.9. 쌀 관세화에 따른 수출 추천제 폐지

2.9.1. 분석대상 규제

- 쌀 관세화에 따른 수출 추천제 폐지

2.9.2.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과거 쌀이 부족하여 식량 자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쌀을 수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여 생산되는 쌀의 일부를 수출하여 왔음
 - 구체적인 쌀 수출 실적을 보면 2005년 10만 달러에서 2014년 471만 달러로 47배 이상의 성장을 시현

표 4-25. 우리나라 쌀의 수출 실적

단위: 톤, 천 달러

연도	물량	금액
2005	20	103
2006	15	58
2007	566	1,370
2008	358	837
2009	4,495	7,455
2010	3,815	6,519
2011	3,824	6,439
2012	2,305	4,794
2013	1,754	4,101
2014	1,992	4,71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이러한 쌀 수출은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 쌀 가격 하락을 완충시킬 수 있는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로 기대되고 있기도 함.

표 4-26. 쌀의 연도별 국내 가격

단위: 원/kg

연도	가격
1996	1,706
2000	2,033
2005	1,858
2006	1,797
2007	1,878
2008	1,981
2009	1,846
2010	1,615
2011	1,872
2012	2,057
2013	2,147
2014	2,068

○ 우리나라 쌀은 추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쌀의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한 것으로 2007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출추천제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양곡관리법 제 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제 3항에 따라 수출추천대상미곡의 수출추천과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행 중에 있음

- 쌀에 대한 수출추천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당해연도에 도입되는 밥쌀용 물량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미곡수출 추천 기준가격은 가장 최근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기준)의 85% 이상으로 하고 통계청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곡은 당해 연도의 정부양곡 판매가격 이상으로 함

- 수출추천은 선착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물량 및 추천 방식은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쌀 추천 대상 품목은 16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

표 4-27. 우리나라 쌀의 수출 추천대상 품목

순번	HS 코드	품목	순번	HS 코드	품목
1	1006-10-0000	벼	9	1103-20-2000	쌀의 것
2	1006-20-1000	메현미	10	1104-19-1000	쌀의 것
3	1006-20-2000	찰현미	11	1806-90-2290	기타
4	1006-30-1000	멥쌀	12	1806-90-2999	기타
5	1006-30-2000	찹쌀	13	1901-20-1000	쌀 가루의 것
6	1006-40-0000	쇄미	14	1901-20-9000	기타
7	1102-90-2000	쌀가루	15	1901-90-9091	쌀 가루의 것
8	1103-19-3000	쌀의 것	16	1901-90-9099	기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이와 같은 쌀 추천제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한 것으로 필요불가결한 사안이나 우리나라 쌀 수출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됨
- 또한 쌀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 추천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 이행 실적을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쌀 수출업체는 수출 추천을 신청하기 위해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미국 수출추천 신청서 1부,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 기타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여 신청
 - 수출추천을 받은 자는 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이행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물유통부장관에게 보고

표 4-28. 쌀의 수출 이행실적 보고 절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해 추천제를 통해 수출물량, 가격 등을 제한하여 왔던 쌀 수출 추천제를 폐지하여 쌀 수출 농가나 업체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도록 함
-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3월 11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미국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농식품부 고시 제2013-143호)을 폐지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쌀 수출 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쌀 수출에 제약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여 쌀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필요한 개선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기존의 쌀 수출 추천제를 유지할 경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나 수출업체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기존 규제만으로는 쌀품 수출 관련 농가나 업체의 불이익을 경감시킬 수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 대안) 전술된 규제 대안이 해당되는데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함
- (덜 규제적 대안)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기존의 쌀 수출 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규제 정도 및 수준을 적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우리나라 쌀 수출 추천제 폐지와 관련한 해외사례나 타법 사례로 적절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음

2.9.3. 규제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해 추천제를 통해 수출물량, 가격 등을 제한 → 쌀을 수출 추천품목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쌀 수출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유지안 >

- 쌀 추천제도를 그대로 유지함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비규제 대안) 전술된 규제 대안이 해당됨
- (덜 규제적 대안) 없음

< 규제대안외 대안 >

-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기존의 쌀 추천제를 폐지하여 우리나라 쌀 수출이 보다 자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의 비용

- (직접비용) 행정 자원의 일부 사용이 예상되나 큰 의미는 없어 생략함
 - 국내 쌀 수출업체의 쌀 수출 실적은 aT의 온라인 추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의 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매월 20~50 건의 추천서 발급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비용은 미미한 수준
 - * 수출 추천제를 관리하는 aT의 관리 인력은 사원 혹은 대리급(4~5급) 1명인데, 2012년부터 온라인으로 수출 추천제 신청을 받고 별다른 검토가 없이 서류 미비 여부 확인하는 수준으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간접비용) 해당 없음

2-2) 규제에 따른 편익

- (직접편익: 쌀 추천제 폐지에 따른 편익)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수출 추천제를 폐지할 경우, 행정적 장벽(barrier)이 제거되어 수출업체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21백만 원, 연간균등순편익)
 - * 쌀 추천제 폐지로 인한 비용 절감액 : 21백만 원
 - 1) 산출근거 : 167백만 원(쌀 추천제 신청 비용 절감액)
 - * 산식 : 5만 원(쌀 추천 건당 업체 비용 절감액) × 420(연간 쌀 추천제 신청 예상 건수)
 - + $\sum_{t=2}^{10} [5만 원(쌀 추천 건당 업체 비용 절감액) \times 420(연간 쌀 추천제 신청 예상 건수) \times \frac{1}{(1+r)^{t-1}}]$
- 쌀 추천제 신청을 위한 건당 비용 절감액: 5만 원

주요 쌀 수출업체 담당자의 신청 관련 투입 업무 시간은 건당 0.5일(4시간) 이고, 담당자의 평균 인건비는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기에 건당 5만 원으로 추정

· 연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예산 건수: 420건

aT의 온라인 추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의 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된 쌀 추천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쌀 추천체의 월 평균 신청 건수는 35건으로 추정되기에, 이를 감안한 결과 최종적인 연간 신청건수를 420 건으로 추정

· 할인율(r)=5.5%, t =10년

- (간접편익: 쌀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한 편익) 쌀 추천제 폐지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쌀 수출여건 개선이 실제 우리나라 쌀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을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우리나라 쌀의 국제적 경쟁력을 분석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쌀의 가격 경쟁력이 경쟁 상품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기에 단순한 낙관론은 불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비교 국가의 쌀 경쟁력 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쌀의 품질은 미국산 쌀(100)과 비교 시 100.8로 비슷하지만, 가격은 76.3으로 취약했고, 호주산 쌀(100)과 품질 비교 시 111.8로 높았으나, 가격은 77.9로 낮은 것으로 추정

표 4-29. 우리나라 쌀의 세계경쟁력 분석 결과

비교 국가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미국	100.8	76.3
호주	111.8	77.9
이집트	100.0	50.0
영국	120.0	80.0
독일	115.0	75.0
싱가폴	100.0	75.0
스페인	90.0	70.0
두바이	100.0	100.0
칠레	110.0	7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또한, 우리나라 쌀 수출 여건은 국내 쌀 생산의 과잉 혹은 과소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다양한 정책적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예측이 불가능

2-3) 비용편익 분석 결과

- 쌀 수출 추천제를 폐지하여 쌀 수출을 위한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 경우 예상되는 전체 연간균등편익은 21백만 원이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편익이 비용보다 높음

표 4-30. 비용편익 결과

단위: 백만 원

	순편익(현재가치)		연간균등순편익(현재가치)	
	직접	간접	직접(A)	간접
비용		-		-
		-		-
	소계	-	소계	-
편익		167	직접(B)	21
		-	간접	-
	소계	167	소계	21

2.9.4. 기대 효과

- 쌀 수출 농가나 업체가 추천제를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어 우리나라 쌀 수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쌀 수출 농가의 해외 수출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됨

2.10. 농촌지역개발사업 진입규제 완화

2.10.1. 분석대상 규제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규제대안>

- 농촌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업체 참여기준 완화
 - 농어촌공사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수주금액 또는 수주건수를 하향조정하되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부실을 예방하고 농촌개발사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국가공익자격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 보유업체 대한 제한경쟁입찰 기준 부여

<현행유지안>

- 현재 농어촌공사 제안서 평가기준을 개정(2015. 6)하여 수주금액기준이나 건수를 하향조정하였으나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규제 상존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비규제 대안) 없음

○ (덜 규제적 대안) 한국농어촌공사 제안서 평가기준(2015. 6)

농어촌공사 발주용역 제안서 평가기준(참여업체 용역추진실적 평가)

-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민간 등이 발주한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구 분	매우적합	적 합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기준
	2.5	2	1.5	1	0.5	배점
사업비 규모 (백만원)	100%이상	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10%이상 40%미만	10%미만	기준
	2.5	2	1.5	1	0.5	배점

※ 사업비 규모의 기준금액은 최근 5년간 700백만 원으로 하며 용역금액의 총합계로 함(예: 용역건수가 5건 일시, 5건에 대한 금액의 합으로 함)

※ 관련사업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민간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브랜드 개발, 지역활성화 컨설팅, 지역계획 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등 관련 사업

<규제대안의 대안>

○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농촌개발사업의 내실화와 지역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에 참여하는 민간컨설팅기능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 현행 유지안이나 비규제적인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서는 지역 역량강화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없으므로 수주금액(건주)하향조정과 더불어 국가공인 컨설턴트 자격제도와 함께 관리 운영하는 것이 최적 대안임

2.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가 부각되고 있음
- 농산어촌의 정주환경 및 기초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5년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정부가 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 자금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하는 하는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approach)’을 도입한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훈련, 컨설팅, 학습조직 육성, 토론회 등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농촌개발에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2010년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에 ‘지역발전 역량 강화’가 새로이 포함되면서 강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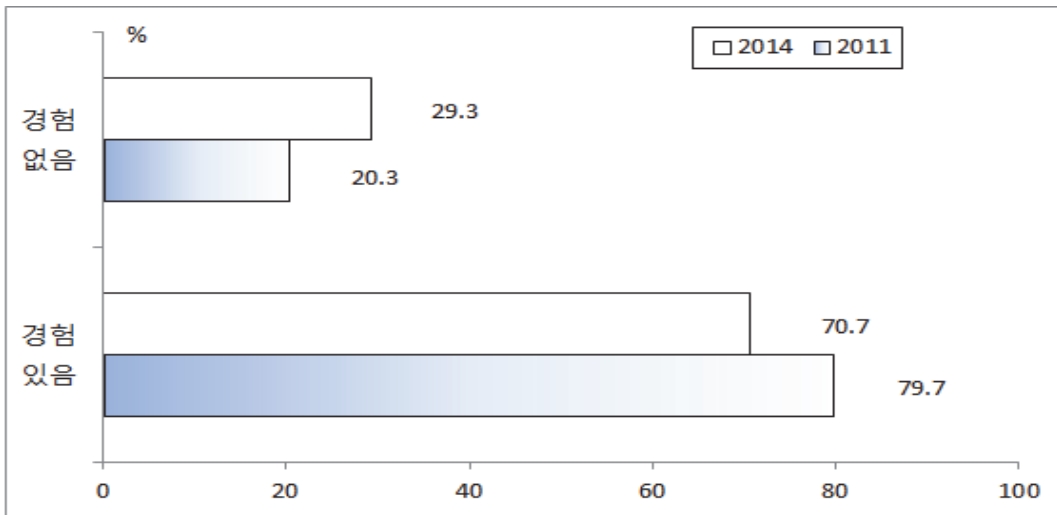
- 농촌개발정책이 과거 하향식 사업과는 달리 더욱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역량강화가 농촌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 또한 확대되고 있음
 - 여기서 지역역량이란 지역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계획의 수립 집행,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전문성, 도덕성, 책임성, 자립성 등의 총체적 표현으로서 지역이 갖는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함(유정규, 2009)
 - 특히 내발적 발전전략 측면에서 개인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지역의 역량을 말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을 이루어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함(조경호, 2014)

- 2010년 전후로 농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비중은 16%에서 10%내로 오히려 감소하였지만 역량 강화활동은 농촌지역 발전의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¹⁴

- 이와 같이 지역역량강화 활동은 대부분 컨설팅업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컨설팅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민간컨설팅 시장이 커지며 2012년말 등록(농촌공사)된 컨설팅 업체는 80개, 874명 수준이며 컨설팅 업체의 업종/업태는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매우 다양하고, 영세한 실정임

¹⁴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 별 역량 강화 활동 투입 예산 규모(2002~2008)를 분석한 김정섭(2010)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내에서 역량강화활동에 대한 예산비중을 16.1%로 분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역역량강화활동의 예산편성을 10%내로 정하고 있음

그림 4-3. 농촌지역개발사업 민간컨설팅업체 등록 추이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3).

- 이는 그동안 정부가 독점하던 사업에 시장기능을 강화시켜 경영성과를 높이면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던 방식에서 공공부문에 이용자 선택권, 경쟁, 공개입찰이나 계약 등과 같은 방식의 도입을 의미함
 - 이에 따라 민간컨설팅 업체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업체는 '99년 이전 21개소에서 '10년 69개소, '12년 8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12년 기준 종사 인력은 874명, 비공식 인력을 포함할 경우 1,6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3)
 - * 자본금 : 2억 원 미만 자본금(62%), 신용등급 보통이하(93.7%)로 매우 취약
 - 이에 따라 한 업체가 여러 마을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찰경쟁에서 이기는 기술과 방법론이 뛰어난 자격미달, 함량미달, 도덕성 미달의 업체가 증가함(김정태, 2014)

- 이와 같이 민간 컨설팅 기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지역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몰이해, 성과주의, 서비스 질이 낮은 컨설팅업체의 참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음

- 지역역량강화활동을 교육, 선진지 견학 정도로만 파악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투자가 미흡해지는 경향을 가지게 됨
 - 성과목표에 맞추어진 유사한 프로그램, 일방적인 학습기법도입 등 문제가 나타남
 - 주민과의 유착이나 역량이 낮은 마을개발사업 사업참여로 내실화 미흡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진입규제와 영업 활동에 대한 사전적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 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여 농촌지역개발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뉘며, 경제적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또는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 여기에는 진입규제, 가격(및 이윤)에 관한 규제,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에 대한 규제가 있음.
 -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로 사회적 규제의 목적은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 등에 있음(최병선, 1992)
-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내실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 농어촌공사 발주 지역개발사업중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의 입찰참여업체기준 완화 등 경쟁을 저해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먼저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국가공인 자격제도는 2014년도 처음으로 시행하여 매년 1회, 100명이 응시하여 지금까지 총 2회, 200명이 참여하여 년평균 25.2%의 합격률을 보임. 향후 농어촌공사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다음으로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참여업체기준을 건당 2천만 원 이상, 최근 5년간 5건이상, 최근 5년간 7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므로서 신규업체의 진입규제와 경쟁제한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최근에는 수주인정금액과 건수를 하향조정하여 신규업체의 참여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농어촌공사 발주용역 제안서 평가기준(참여업체 용역추진실적 평가)

-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민간 등이 발주한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구 분	매우적합	적 합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기준
	2.5	2	1.5	1	0.5	배점
사업비 규모 (백만원)	100%이상	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10%이상 40%미만	10%미만	기준
	2.5	2	1.5	1	0.5	배점

※ 사업비 규모의 기준금액은 최근 5년간 700백만 원으로 하며 용역금액의 총합계로 함(예: 용역건수가 5건 일시, 5건에 대한 금액의 합으로 함)

※ 관련사업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민간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브랜드 개발, 지역활성화 컨설팅, 지역계획 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등 관련 사업

- 지역개발사업중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의 입찰참여업체기준 완화로 신규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체가 신규 참여코자 할 경우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증 취득과 보수교육에 관한 직접비용 발생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 발생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보수교육비 발생
- 이에 반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의 참여기준을 낮춤으로서 새로운 창업기업이나 우수 인력의 참여폭의 확대와 신규 서비스의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참여업체 확대에 따른 전문 종사자 수 증대가 예상됨
 -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사업의 소득증대가 예상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참여업체기준을 완화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이나 우수 인력의 참여폭의 확대 그리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농어촌개발 컨설턴트도 참여업체 기준완화 정책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목적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민간 컨설팅 기능의 확대에 따른 지역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몰이해, 성과주의, 서비스 질이 낮은 컨설팅업체의 참여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개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농어촌개발 컨설턴트에게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참여업체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우수 인재의 활용,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록 제도를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기존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참여업체 수주인정 금액과 건수를 하향조정하여 신규업체의 참여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공인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증을 가진 업체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우수인력을 공급받기에는 한계를 지님
- 기존 컨설턴트 자격제도만 가지고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아 이를 사업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 대안)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 다양한 콘텐츠가 지역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컨설턴트를 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용역사업에 참여하도록 컨설팅업체에 국가가 또 다른 혜택(세금감면, 저리융자)을 주는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움
- (덜 규제적인 대안) 국가 공인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와 참여업체 기준완화 각각으로서는, 신규업체 진입규제 상존과 부실문제(몰이해, 성과주의, 서비스 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국가 공인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와 참여업체 기준완화정책은 이미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용역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농어촌개발컨설턴트의 참여기준을 포함하도록하여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범사례 분석 및 비교 >

- 일본의 경우, 2012년 12월 출범한 일본이 현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일환이자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선택하여 재정부담이 경미한 데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중·장기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 그 가운데 후쿠오카시 글로벌 창업·고용창출 특구의 규제개혁 어젠다 (2015년 5월 현재) 중 창업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를 추진하여 서비스의 신규성을 입증하는 조치를 담보한다는 전제하에 법령상 조치 후 전국으로 확대
-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역 참가업체 기준을 수주건수나 수주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2015년도 제안서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으며 수주건수, 수주금액 등을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술보유나 소재지에 대한 제한도 제시되어 있음(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위임근거 검토)

한국농어촌공사 제안서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술보유에 대한 제한 근거를 두어 “농어촌개발 컨설턴트”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 근거를 마련

2.10.3. 규제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

- 지역개발사업중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의 입찰참여업체기준 완화로 신규참여회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체가 신규 참여코자 할 경우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증 취득과 보수교육에 관한 직간접비용 발생이 예상

① 단계 1 : 비용항목의 식별

- 한국농어촌공사의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참여업체의 실적완화조치와 더불어 농어촌개발 컨설턴트의 제한경쟁 입찰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투자비용 발생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과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추정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 발생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보수교육비 발생

② 단계 2 : 비용부담자의 식별

-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수 874명(추정)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합격자) 보수교육대상자 _____ 명(추정)

③ 단계 3 : 비용 추정지표 및 방법 결정

-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시험에 따른 비용

$= \text{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종사자} \times \text{누적응시횟수(회)} \times \text{년평균 응시비율(\%)} \\ \times \text{응시 수수료(원)}$
--

-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종사자 : 약 874명
(2012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등록컨설팅업체)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시험 응시회수 : 5회 (5년 누적)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년평균응시비율(%) : 11.4% (매년 100명/전체 종

사자수 874명)

-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응시 수수료 단가 : 7만 원*1회 (농어촌공사 기준)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보수교육과정에 따른 소요비용

$= \text{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종사자(명)} \times \text{누적응시횟수(회)} \times \text{년평균 응시비율(\%)} \\ \times \text{년평균 합격률(\%)} \times \text{보수교육비}$

-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종사자 : 약 874명(2012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등록컨설팅업체)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시험 응시회수 : 5회 (5년 누적)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년평균응시비율(%) : 11.4% (매년 100명/전체 종사자수 874명)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합격률(%) : 25.2%(농어촌공사 전화인터뷰자료)
-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보수교육비 : 20만 원*1회 (20시간 기준, 경영지도사)

④ 단계 4 :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⑤ 단계 5 : 추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시험에 따른 비용 : 34,872천 원

- $874\text{명(현재 참여인력수)} \times 5\text{회(응시회수 누적)} \times 11.4\%(\text{년평균 응시율}) \times 70,000\text{원(응시 수수료/1회)} = 34,872,600\text{원}$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보수교육과정에 따른 소요비용 : 25,108천원

- $874\text{명(현재 참여인력수)} \times 5\text{회(응시회수 누적)} \times 11.4\%(\text{년평균 응시율}) \times 25.2\%(\text{년평균 합격률}) \times 200,000\text{원(보수교육비)} = 25,108,272\text{원}$

표 4-31. 향후 10년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참여업체 진입 완화에 따른 비용
단위: 백만 원

연도	직접비용		비용합계	현재가치
	컨설턴트 자격시험 비용	컨설턴트 보수교육 비용		
2015	34.9	25.1	60.0	60.0
2016	34.9	25.1	60.0	56.9
2017	34.9	25.1	60.0	53.9
2018	34.9	25.1	60.0	51.1
2019	34.9	25.1	60.0	48.4
2020	34.9	25.1	60.0	45.9
2021	34.9	25.1	60.0	43.5
2022	34.9	25.1	60.0	41.2
2023	34.9	25.1	60.0	39.1
2024	34.9	25.1	60.0	37.0
총계	349	251	600	477

⑥ 단계 6 :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시험에 따른 비용 : 연간 34.9백만 원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보수교육과정에 따른 소요비용: 연간 25.1백만 원
- ☞ 규제완화로 10년동안의 총 비용은 약 6억 원으로 추정되고, 현재가치로 약 4억7천7백만 원

2) 규제에 따른 편익

◆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용역의 입찰참여업체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시 신규 인력 증대 및 서비스지원(새로운 콘텐츠개발 등)이 확대될 전망

- 2012년 현재 농어촌공사에 등록된 컨설팅업체는 ('99년 이전) 21개소 → ('10) 69개소 → ('12) 80개업체로 확대되고 있음
 - 12년 기준 종사인력(874명), 비공식 인력포함(1,600여명 이상으로 추정)에 따른 내실있는 콘텐츠 공급 및 컨설팅에 한계

- 또한 컨설팅 업체의 업종/업태는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매우 다양하고, 영세한 실정임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제안서 평가기준 중 기존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관련사업 최근 5년간 용역추진실적을 2014년 5건 이상, 2015년 현재 2건 이상으로 완화
- 이러한 여건속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의 참여기준을 낮춤으로서 새로운 창업기업이나 우수 인력의 참여폭의 확대와 신규 서비스의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참여업체 확대에 따른 전문 종사자 수 증대가 예상됨
 -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사업의 소득증대가 예상됨

① 단계 1 : 편익항목의 식별

- 최근 5년간 용역추진실적을 5건에서 2건으로 완화함에 따라 새로운 창업기업 또는 우수인력의 참여폭 확대로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수의계약 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마을소득 증대

② 단계 2 : 수혜자 식별

-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수 874명(추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1,162개소(2013년 현재)

③ 단계 3 : 편익 추정지표 및 방법 결정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편익

$= \text{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종사자} \times \text{종사자수 연평균증가율}(\%) \times \text{용역실적 완화율}(\%) \times \text{용역 인건비}(\text{원})$
--

-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종사자 : 약 847명(2012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등록건설팅업체)
-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율 : 8.7%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06~2013)-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상용종사자 연평균증가율 활용)
- 용역실적 완화율(%) : 60% (최근 5년동안 용역실적 5건에서 2건으로 3건 감소)
- 용역 인건비 단가: 월 2,149,872원*12월 (정부연구용역 인건비 - 연구원 기준)
-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사업 소득증대에 따른 편익

= 마을사업소득(원)× 농외소득 증가율(%)× 용역실적 완화율(%)×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마을수

- 마을사업소득 : 50,000천 원(농촌전통테마마을 9개 마을의 3년 평균 소득)
- 농외소득 증가율 : 3.9% (통계청 농가경제조사(2003~2014)- 농외소득 연평균 증가율 활용)
- 용역실적 완화율(%) : 60% (최근 5년동안 용역실적 5건에서 2건으로 3건 감소)
-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마을사업수 : 약 1,162개소(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마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수 기준 자료)

④ 단계 4 :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⑤ 단계 5 : 측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편익 : 1,177백만 원
 - 874명(현재 참여인력수) × 8.7%(종사자 증가율) × 60%(용역실적 완화율)× 25,798,464원(12월*2,149,872원: 연구인력 인건비) = 1,176,998,163원
-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사업 소득증대에 따른 편익 : 1,360백만 원
 - 50,000,000원(농촌전통테마마을 9개 마을의 3년 평균 소득) × 3.9%(농외소득 증가율) × 60%(용역실적 완화율)× 1162개소(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마을사업수)= 1,359,540,000원

표 4-32. 향후 10년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참여업체 진입 완화에 따른 편익
단위: 백만 원

연도	직접편익	간접편익	편익합계	현재가치
	일자리 창출 편익	마을사업 소득증대 편익		
2015	1,177	1,360	2,537	2,537
2016	1,177	1,360	2,537	2,405
2017	1,177	1,360	2,537	2,278
2018	1,177	1,360	2,537	2,160
2019	1,177	1,360	2,537	2,047
2020	1,177	1,360	2,537	1,941
2021	1,177	1,360	2,537	1,840
2022	1,177	1,360	2,537	1,744
2023	1,177	1,360	2,537	1,653
2024	1,177	1,360	2,537	1,567
총계	11,770	13,600	25,370	20,172

⑥ 단계 6 :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편익 : 연간 1,177백만 원
-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사업 소득증대에 따른 편익 : 연간 1,360백만 원
- ☞ 규제완화로 10년동안의 총 편익은 약 253억7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현재가치로 약 201억7천2백만 원

3) 비용편익 비교

-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업체 참여기준 완화(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 업체에 대한 수주건수 및 수주금액 완화)로 파급되는 전체 연간균등편익은 2,537백만 원이고, 연간균등비용은 60백만 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음

표 4-33. 비용편익 비교결과

단위: 백만 원

		10년		연간균등가치
		명목가치	현재가치	
비용	직접	600	477	60
	간접	-	-	-
	소계	600	477	60
편익	직접	11,770	9,360	1,177
	간접	13,600	10,812	1,360
	소계	12,370	9,837	2,537

2.10.4. 기대 효과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나타나는 부실문제(몰이해, 성과주의, 서비스 질)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업체 참여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인력 유입

2.11.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가입 제한 완화

< 분석대상 규제완화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가입 제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완화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규제/진입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제안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지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박홍진		
4. 근거법령명 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 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3ha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14년 기준 30,204호)			
6. 규제준속기한	○ 2015.10.6. 폐지			
7. 규제완화의 내용	○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2009.6.26. 신설) ○ 2015.10.6. 폐지			
8. 규제체계도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지원요건 검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대상자 선정</div> </div>			

□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 제한 완화

- (현행) 3ha 이상 농지 소유시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가입 제한
- (개선) 농지연금 가입을 위한 농지소유면적 요건 폐지
- (추진계획)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제19조의9 제2항)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진행
- (기대효과)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이상인 농가(30천호)의 신규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고령농업인 생활안정에 기여

2.11.1. 규제완화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소유 농지의 상한조건(3ha)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기회 제한
 - 2014말 기준 경지면적 3ha이상 농가수 : 30,204호
- 이미, 월 지급 상한액(3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음
 - 지역별로 농지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농지규모를 기준으로 제한기준을 설정할 경우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이와 같은 취지에 근거하여 정부는 소유농지 3ha 상한 규정을 폐지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 제2항 개정 (2015.10.6)

2.11.2. 규제 완화의 비용·편익 분석

1) 규제완화의 내용

1-1) 기존 안

- 소유 농지의 상한 → 30,000m² (3ha)

1-2) 대안

- 소유 농지의 상한 폐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 완화의 비용

- (직접비용) 해당 없음
- (간접비용) 해당 없음

2-2) 규제 완화에 따른 편익

- (직접편익)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자경 또는 임대 가능하므로 연금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을 직접 편익으로 산정
 - 농지연금 가입 규제완화(3ha 상한 폐지)의 편익 구성 항목

현행(A)	규제 완화(B)	순 변화(A-B)
- 이익적 요소 · 자경 수익 또는 임대 수익 · 지가 상승 수익 - 비용적 요소 ·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	- 이익적 요소 · 자경 수익 또는 임대 수익 · 지가 상승 수익 - 비용적 요소 · 연금대출에 따른 이자	· 연금대출액*(담보대출이자율-연금대출이자율)

* 담보대출과 연금대출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분석 편의상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순편익 증대효과는 가입률 0.7%, 건당 평균 가입면적 2ha를 기준으로 할 경우 11,039백만 원임.

단위: 천 원

구분	가 입 률(%)					
	1.1	0.9	0.7	0.5	0.3	
건당 면적 (ha)	3	26,020,571	21,289,558	16,558,545	11,827,532	7,096,519
	2	17,347,047	14,193,038	11,039,030	7,885,021	4,731,013
	1	8,673,524	7,096,519	5,519,515	3,942,511	2,365,506

* 산출근거

- 산식 : 호당 연간 연금 현가액의 차이 × 대상 농가수 × 가입률 × 면적 배수

$$\bullet \text{ 호당 연간 연금 현가액의 차이} = A \left[\frac{1 - (1+r)^{-T}}{r} - \frac{1 - (1+i)^{-T}}{i} \right]$$

A : 연간 연금(월 853천 원 × 12개월 = 10,236천 원), T : 연금 지급기간 17.5년(호당 연간 연금 현가액이 농지가격과 같아지는 지급기간), r : 농지담보 대출이자율 5%, i : 연금 대출 이자율 2.5%

- 농가수 : 30,204호(2014년 경지면적 3ha이상 농가수)
- 가입률 : 0.7%±0.2~0.4%P 가정(2011~2014년 3ha미만 누적 가입률은 2014년 농가수 기준 0.7%),
- 면적 배수 : 1ha±2~3배수 가정(2011~2014년 3ha미만 가입자의 평균 가입 면적 1.04ha)

○ (간접편익) 농지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 월평균 연금 지급액 증가 효과는 가입률 0.7%, 건당 평균 가입면적 2ha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1백만 원임.

단위: 천 원

구분		가 입 률(%)				
		1.1	0.9	0.7	0.5	0.3
건당 면적 (ha)	3	850,212	695,628	541,044	386,460	231,876
	2	566,808	463,752	360,696	257,640	154,584
	1	283,404	231,876	180,348	128,820	77,292

* 생활안정 효과를 수치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따라서 기존 3ha미만 대비 3ha이상의 면적을 추가적으로 농지연금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총 월 평균 연금지급액의 증가액을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로 측정함

* 산출근거

- 산식 : 호당 월평균 연금 지급액 × 대상 농가수 × 가입률 × 면적 배수
- 호당 월평균 연금 지급액 : 월 853천 원(2011~2014년 3ha미만 누적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지급액)
- 농가수 : 30,204호(2014년 경지면적 3ha이상 농가수)
- 가입률 : 0.7%±0.2~0.4%P 가정(2011~2014년 3ha미만 누적 가입률은 2014년 농가수 기준 0.7%),
- 면적 배수 : 1ha±2~3배수 가정(2011~2014년 3ha미만 가입자의 평균 가입 면적 1.04ha)

2.12.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절차 개선(복지부 협업)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절차 개선(복지부 협업)

- (현행)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나, 농업인 부부는 맞벌이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농업인 맞벌이 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선
-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15.3월)
- (기대효과) 부부가 공동 경영을 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보육서비스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촌 보육복지 사각지대 완화, 맞벌이 농가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로, 여성 농업인의 양육 부담 감소와 농업활동 시간 증가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증가로 맞벌이 농가의 수익증가 계산법

○ $A \times Wh$

- * A: 농업노동시간
- * Wh: 시간당 농업기준 노임
- * 가사 노동을 제외한 여성 농업인 농업 노동 시간 증가분 계산
- * 가사 노동의 제외로 총합대체법과 기회비용법의 수식이 동일함

2.12.1. 여성농업인이 농업활동 증가로 예상되는 가치

- 산식: 5시간 \times 12,159 (1일 농업인 시간당 임금) + 10분 \times 253.6 = 63,331

- 여성 노동시간 증가 예상치: 남성농업인 유급 노동 시간(6시간 49분) - 여성 농업인 유급 노동시간 (1시간 36분) = 5시간 13분. (김영욱, 2001)
 - * 여성의 농업노동 시간 증가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농업노동 참여 (김수욱, 박은희, 2003). 맞벌이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 노동이 남성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 약 5시간 10분 농업노동 시간 증가
 - * 여성농업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가정함
 - * 시간당 임금 : 12,159 (2015년 농림축산부 보도자료 인용)

2.12.2. 규제 개선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성 농업인수

- 20대, 30대, 40대 여성 중 어린이집 설치지역에서 미취학 아동을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 산식: 2,337 (20, 30대) + 424 (40대) = 2,761
 - * 20, 30대 농업여성인중 가정에서 보육하는 수: [29,184 (20대, 30대 농업여성인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수) - 16,343 (20대, 30대 농업여성 중 어린이집 이용 수) - 8,755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20대, 30대 여성 수)] × .57(20, 30대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여성 중 가정에서 6세 이하 양육하는 비율)
 - * 40대 농업여성인중 가정에서 보육하는 수: [4,595 (40대 농업여성인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수) - 2,573 (20대, 30대 농업여성 중 어린이집 이용 수) - 1,378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20대, 30대 여성 수)] × .67 (40대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여성 중 가정에서 6세 이하 양육하는 비율)
 - * 농촌 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30% 추정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4)
 - * 여성 농업인 수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2.12.3. 여성의 농업인의 노동시간 증가로 농가가 기대하는 예상 가치

- 1일: 2,761(명) × 63,331(원) = 174,856,891(원)
- 1년: 174,856,891 (원) × 232(일) = 40,566,798,712(원)
 - * 총 133일: 토, 일(52 × 2), 법정 공휴일(15), 방학 (동계, 하계/ 7 × 2) 제외
 - * 혜택을 보는 여성 농업인이 모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는 최대치

2.12.4. 정부 가정양육수당 감소분

-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은 농촌지역 외벌이 부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감소시킴. 기존 농업인 가정이 받는 농어촌양육수당 분이 농촌지역 외벌이 부부의 양육수당으로 전환됨. 이로 인한 차액 발생
- 월간 가정양육수당 감소분: 37,333(원) × 2(자녀수) × 2,761(명) = 206,152,826 (원)
- 연간 가정양육수당 감소분: 522,064,672 (원) × 12 (개월) = 2,473,833,912 (원)
 - * 아동의 연령별로 수당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37,333(원)으로 계산
 - * 농촌지역 가족의 20대, 30대, 40대 자녀수를 평균 2명으로 추정함 (여성 농업인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 어린이집 이용배제 되는 농촌지역 외벌이 가정 수는 어린이집 이용 예상 맞벌이 농가수와 같은 것으로 추정함 (2,761 명)

2.12.5. 간접비용 증가분

- 농촌지역 외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을 통한 여가시간을 이용 여성의 가외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맞벌이 농가 우선 어린이집 이용으로 가외 소득 기회 박탈이 예상됨.

- 농촌 지역 외벌이 주부의 자녀양육 부담 증가 및 가사 노동 시간 증가.
- 농촌지역 외벌이 주부의 자녀양육 시간 증가와 양육 부담 증가로 교육 기회 및 취업기회 박탈이 예상됨.

2.12.6. 간접비용 감소분

- 농업인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입소 절차 개선은 이주 여성의 농업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다문화 아동의 공교육 노출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문화 가정의 경우 아동이 체계적 공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로 정상적 아동기 심리사회적 성장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다문화 아동의 교육 지연 및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 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로, 이른 한국사회 적응과 농촌지역사회 참여로 적응기간 감소가 예상됨. 이주 여성의 사회 및 농업 활동 참여로 가정 문제의 감소와 농촌가정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음. 다문화 가정의 가정 문제 감소와 가정 안정화로 인해 다문화 가정 문제에 지불할 사회적 비용 감소가 예상됨.

2.12.7. 연간 기대 가치 분석 결과

- 농가 가치 증가분: 40,566백만 원
- 정부 비용 감소분: 2,473백만 원

3. 시사점

- 정부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도입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보다 과학화·내실화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영향 분석을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 3개의 대안을 검토해야 하며, 규제의 비용을 서술식으로 나열하는 관행을 없애고 반드시 수치로서 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도록 함.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이후 해당 부처 담당자의 인식전환과 규제영향분석의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운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추가적인 강화가 요구됨.
- 현재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한 부처의 규제로드맵(규제관리카드 등) 단기, 중장기의 시간적 구분, 유형(대그룹, 중그룹, 소그룹) 및 타부처 협업 등으로 분류하여 농식품분야 규제리스트의 관리가 필요함.
 -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규제 유형화한 기준을 업그레이드 활용
- 규제영향분석 작업에 필요한 모수의 산정과 기초 통계자료를 규제영향분석 작업시 별도 관리카드 또는 DB화하여 추후 분석 등에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분야 주요 규제개혁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풀의 확대가 필요함. 농식품 규제개혁 관련 정보의 교류와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풀을 적극 활용

제 5 장

규제완화와 규제비용 분석의 효율화 방안

1. 기본 방향

- 첫째, 규제를 정책목표에 적합한 제도기반이 되도록 개선하는 전략적 규제 개혁을 추진
 - 현실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규제완화 중심에서 나아가 정책적 목표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구축 차원에서 규제완화 추진
- 둘째,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보전,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규제는 보다 강화
- 셋째, 규제완화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의 체계화
- 넷째,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수요를 감안한 규제 완화 혹은 강화에 대한 꾸준한 점검
- 다섯째, 규제비용총량제에 근간으로 하는 규제완화. 규제비용이 큰 규제에 대해 폐지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책품질 제고

- 여섯째, 타부처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부처간 협업 강화
- 일곱째, 부처 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

2. 효율화 방안

2.1. 전략적 규제개혁 추진 방안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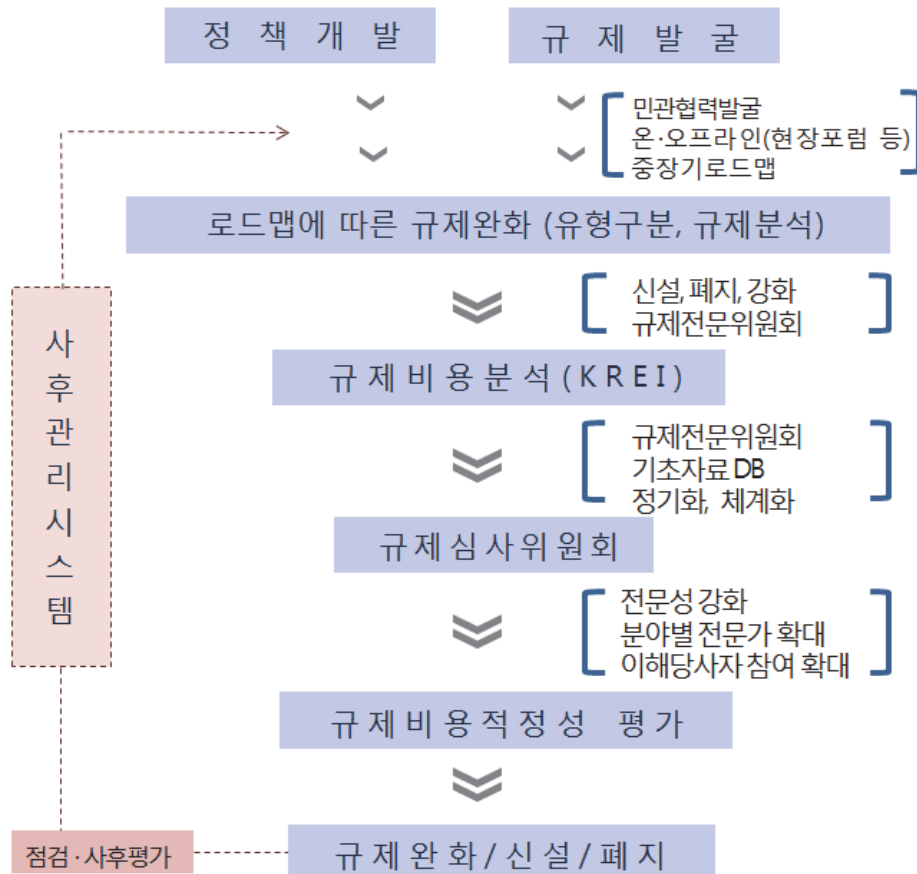
2.1.1. 농업부문 투자 유치 및 규모화를 촉진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 전문화는 토지·노동 중심의 전통적 농업에서 기술과 자본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기술, 자본, 전문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거나 촉진하고, 도시자본과 농촌자본이라는 경계 구분과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경계구분도 의미가 낮으므로 이러한 부분의 규제를 완화
- 현재 농지관련 규제는 전통농업 중심으로 제정되어 첨단농업 및 고부가가치 농업기법의 적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농업관련 기업연구소의 연구용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완화한 바와 같이 IT·BT 등 첨단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촉진하는 진입규제 및 허가규제를 보완

¹⁵ 본 내용은 농업전망 2016에서 발표된 “농업·농촌부문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영농의 전문화는 새로운 과학적 기법과 우수한 ICT 기술 및 전문 인력이 영농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농업생산법인의 진입을 촉진 하도록 하는 규제완화를 추진

그림 5-1. 효율적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구조



2.1.2.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위한 입지규제의 개선

- 농식품분야의 6차산업화는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므로 전통적인 영농으로 인식되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제조, 유통 및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융·복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현재 농지와 임지는 생산 이외의 시설입지 제한이 있으므로 6차산업화 촉진에 애로
 - 농지의 입지규제를 복합영농이 가능하도록 다른 산업의 도입을 위한 농지를 정비, 특히 농지로서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새로운 검토
- 농지와 임야의 입지규제를 금지가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농업과 융합하는 조건이라면 입지가 가능토록 규제관리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행위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도 검토 필요

2.1.3. 농업경영체의 사업범위 확대

- 농업의 6차산업화는 자본의 유입과 규모화, 전문화를 전제로 종래 생산의 개념에서 가공, 유통 및 관광 등의 복합화 지향
 - 6차산업화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범위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
 - 농지의 임대차계약 허용 등의 보다 완화된 규제를 검토
-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업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생산(임대차), 가공(공장건축 입지), 유통(광고·표시) 등 많은 분야의 인허가를 one-stop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보완

2.1.4. 새로운 농식품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재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안전 등으로 원료사용과 가공에 대한 규제가 강한 수준
 -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의 개발은 다양한 원료의 사용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가공방법 등을 필요

- 원료의 사용범위에 있어서는 원료사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 등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인정 범위에서 신청자격에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에 한정 등의 개선 검토
 -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 등의 개선도 필요

2.1.5. 전문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의 정비

- 농림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6차산업화 등 미래 산업으로의 발전은 농식품 분야로 투자 자본과 기술력의 이동을 요구함.
 - 그중에서도 농림산업으로의 전문적인 인력의 이동을 통해 현재의 농촌의 고령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이를 촉진하기 위해 귀농촉진 지원제도의 마련과 기존의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귀농, 귀촌의 정주여건의 조성이 선결과제임.

2.2. 규제비용 분석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2.2.1. 민관협력을 통한 농식품분야 규제 발굴의 체계화

가. 현행

- 규제 발굴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통한 공모와 현장포럼을 통한 직접 발굴
- 발굴된 규제에 대한 규제 카드 관리

- 발굴된 규제들을 검토하여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관계부처 협의, 불수용으로 구분

나. 문제점

- 행정기관 중심의 발굴로 인한 현장성 미흡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DB화 부족에 따른 정보적 가치 저하

다. 개선방향

- 합리적인 규제 발굴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명과 수요가 소진되거나 불필요해진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견하여 폐지하기 위한 규제 발굴
 - 새로운 수요의 등장에 따른 규제인프라가 부족한 분야 발굴하여 점검하고 규제인프라 구축
 - 농업인, 농촌주민, 농업관련 산업체의 불편·불만 해소 차원을 넘어 농업과 농산업을 경쟁력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 차원에서의 규제 발굴
 - 규제가 신설될 때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 규제로 인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만큼 규제의 완화와 폐지 시 확실한 규제완화의 원리와 기준 및 실증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규제 발굴
- 행정과 민간영역이 함께 하는 상시적 발굴시스템 구축
 - 상시적 발굴 시스템: 온·오프라인 가동
 - 각 시도 및 시군의 행정라인을 통한 규제관련 사항 정기적 취합
 - 공공부문의 유관기관을 통한 규제관련 사항 정기적 취합
 - 취합된 규제리스트의 디지털화 DB 구축
- 목록화된 규제리스트 온라인 공개
 - 리스트 공개를 통해 공감대 확산
 - 국민적 수요와 욕구 수렴

2.2.2.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결 할 것과 편익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로드맵 작성

가. 현행

-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현안성, 시급성, 발굴시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를 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쉬운 것 위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짐.
-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규제들에 대한 로드맵 부재에 따른 혼선 야기

다. 개선방향

- 발굴된 규제를 토대로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순위 결정
 - 시대적 환경변화, 규제의 목적의 완료 여부, 새로운 시대가치 반영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감안
 - 국민, 농업인, 농촌주민, 기업 등의 규제개선 수요와 요구가 큰 규제를 발굴하여 우선 완화
 - 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사회적 비용이 큰 규제부터 완화 추구
 - 규제완화 시도로 인해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규제완화가 쉬운 것부터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순차적 접근
 - 사회적 가치와 원리가 충돌하거나 심각한 사회갈등 소지를 내포하는 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 강화되어야 할 분야와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분류하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

2.2.3. 규제비용총량제의 체계화를 위한 규제전문위원회 구성

가. 현행

- 문헌이나 추천을 통한 전문가 활용
- 원고위탁 중심의 단발적인 전문가 활용

나. 문제점

- 전문가들을 필요에 따라 단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규제와 관련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상존함.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규제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해도가 낮아 분석에 혼란이 많음.

다. 개선방향

- 농식품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규제전문가 그룹 조직인 ‘규제전문위원회’ 구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규제평가팀 내 자문기구로 활용
 - 10개 분야 분야별 2명: 농지, 식품, 환경, 축산, 유통, 6차산업, 농촌개발, 복지, 농업관련산업(농자재 등), 미래농업(ICT 융합 등)
 -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 규제와 관련된 정보와 정책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제공
 - 분야별 규제관련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원고 위탁
 -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비용 분석의 전문화 추구

- 효과적인 규제비용분석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분야별 매뉴얼 개발
 - 각 분야별로 사용되어야 할 기초자료나 편익집단, 비용집단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료 획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매뉴얼을 작성하면 비용 분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2.4. 규제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

가. 현행

-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가 가장 중요함. 그러나 규제의 형태, 규제분야, 비용의 종류, 편익의 직접대상 등이 사안별로 달라 기초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매우 큼.

나. 문제점

- 사안별로 기초자료 확보가 어려워 비용편익 분석 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기초자료가 부실해 무리한 가정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짐.
- 공식 통계자료에 대한 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각 부서 내에 있는 내부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다. 개선방향

-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농식품부 내 담당자들을 활용하여 관련 규제에 필요한 통계목록과 내부통계 목록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통계를 목록화하고 획득 가능한 출처 수록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각 부서 간 자료 공유를 위한 채널 마련
- 규제전문가 그룹 조직인 ‘규제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분야별 관련 통계 DB화

2.2.5. 규제비용 분석의 내실화와 체계화

가. 현행

- 현행 규제비용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규제완화 과정은 비용분석이 가능한 것과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고 있음.
 - 비용분석이 가능한 경우의 규제완화 정식절차는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규제연구센터 검증, 비용전문위원회 심의의 순으로 이루어짐.
 - 저비용 규제의 경우는 간편심사제를 활용하는데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고 바로 규제조정실의 검토를 거쳐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이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은 생략 됨.
 - 비용분석이 안되는 경우는 부처자체에서 유사규제를 선정하여 바로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음.

표 5-1.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절차 요약

비용총량제 적용대상			적용제외
비용분석 가능		비용분석 불가	
① 정식 절차	② 간편심사제(저비용 규제)	③ 심사처리제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규제연구센터 검증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규제조정실 검토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유사규제 선정(부처자체)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 위원회 예비심사/본심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식품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인용.

-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규제비용 분석은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첫째, 농식품부 자체분석의 경우 농식품부 담당과에서 1차로 비용분석한 결과를 KREI 규제평가팀에서 검토 후 자문을 함.
 - 둘째, KREI 규제평가팀 중심의 분석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KREI 규제평가팀에 비용분석 의뢰 후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비용을 분석함.

나. 문제점

- 사안별 시기적으로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함.
- 사회적 비용의 경중에 상관없이 분석이 이루어져 낭비적 요소 있음.

다. 개선방향

- 규제전문위원회 적극 활용
- 비용분석 과정의 시간적 규칙화, 체계적 절차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 제고
 - 농식품부 자체분석 시: 비용분석 전문가 배정 및 의뢰 → 비용분석 결과 → 비용분석 결과 검토 → 비용분석 결과 제출
 - KREI 규제평가팀 분석 시: 비용분석 의뢰 → 비용분석 전문가 배정 및 의뢰 → 비용분석 결과 → 비용분석 결과 검토 → 비용분석 결과 농식품부 제출
-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사회경제적으로 과급효과가 큰 중요 규제에 한정 필요
 -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큰 중요규제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선택과 집중 필요
 - 편익 추정이 어려울 경우 비용만 적용해 볼 필요도 있음. 비용과 편익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편익추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편익이 과대평가될 여지도 있음.

- 신설 및 강화 규제만이 아니라 폐지 및 완화를 검토할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비용-편익을 분석하여 규제개혁 추진
 - 판단근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규제는 유지하거나 도입하고, 그 반대일 경우는 완화, 폐지 혹은 도입하지 않음.
- 안전에 관한 위험평가 항목 추가 필요
 -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보건, 산업안전, 식품안전, 환경 등 분야에서 위험평가(risk analysis)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규제분야의 특수성과 근래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농업분야도 식품안전과 환경 등 분야에서 위험평가가 규제영향분석에 독립적인 항목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음.

2.2.6. 규제완화 후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가. 현행

- 규제완화 후 사후적으로 필요한 후속조치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할 시스템 부재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심사나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나. 문제점

- 규제완화 후에 필요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효과 여부에 의문이 제기됨.

다. 개선방향

- 규제완화에 따른 사후적 점검 및 평가시스템 구축

- 미국의 소급분석(retrospective analysis of existing rules)과 같은 제도 도입 필요. 소급분석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규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경우 이를 재점검하게 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기존 규제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규제 관련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 입증

2.2.7.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

가. 현행

- 현재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비용의 분석 및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강화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규제관리가 가능

나. 문제점

- 기존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위한 전략적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

다. 개선방향

-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강화
-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보완. 이를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한 채널의 상설화와 체계화 도모
 - 분야별 2명 정도의 전문가 포함되어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고, 전문성이 보강될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에 이해당사자도 옵저버로 참여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의 조정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객관성과 실효성 극대화 필요

3. 규제비용분석방법

3.1. 규제비용 분석단위

- 규제비용은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는 내용에 의해 산출되고, 규제는 관련 조항별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지만 정책단위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내려갈수록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비용 산출이 적합한 단계이다.
- 법령단위에서 먼저 적용범위를 가정하고 규제비용을 산출하도록 한다.
 -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의 규제비용으로 구체화한 후 최종적으로 관련 규제의 비용총량을 관리한다.
 - 규제비용총량제 관리는 법안 단계에서부터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령단계에서는 임의로 추정하여 실시하고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될 경우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 현재 규제는 조항별 관리이지만 규제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정책프로그램 단위로 통합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여러 규제조항을 통합하여 규제비용을 분석한다.
 - 규제는 조항별로 관리되고 있어 조항별로 규제가 식별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분석이 용이한 단위로 그룹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 돼지고기이력제 규제비용분석에서도 조항별로 실시하지 않고, 농장식별 번호 발급신청 등 10개 조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규제로 보고 비용을 분석한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 OUT규제(폐지, 완화규제)와 같이 조항별로 규제비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 조항별로도 산출한다.

3.2. 규제비용 및 편익

- 직접비용으로는 규제의 일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 즉 규제 도입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예: 이행비용(조직운영비 등), 직접 노동비용(인건비, 기타인건비), 간접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자재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외부서비스 조달비용(전문가 자문비, 시스템 위탁 운영비 등) 등
- 간접비용은 규제의 이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 피규제자 및 제3자에게까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예: 창업수의 감소, 생산성 하락, 고용감소, 소비자 선택폭 감소, 경쟁의 감소, 혁신능력의 감소 등
-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돼지고기이력제 규제비용분석에서 생산성 하락을 직접비용으로 볼 것인가 간접비용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검증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분류할 수는 없고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 직접편익은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한다.
 - 예: 규제 기준의 설정으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편익
- 간접편익은 특정 규제 도입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파생되거나 유발되는 편익으로 피규제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혜택을 의미한다.
 - 예: 고용증대, 교역량 증가, 관광유발 효과, 삶의 질 개선 등
 -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에 대한 분류기준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비용분류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시함.
- KDI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의 적정성 검증 기준
 - 비용편익 식별의 타당성 검토 항목: 규제대안의 비교검토, 비용부담자, 비용식별/구분, 편익수혜자, 편익식별/구분
 - 규제비용 추정의 타당성 검토항목: 분석의 가정, 비용지표값, 기간/할인율, 연간균등순비용, 불확실성

참고 1. 비용총량제 검증 시 주요 사항

< Check list >

- 비용 부담 대상자 및 항목을 정확히 식별했는가?
-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산정했는가?
- 신뢰성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했는가?
- 공식적인 통계 미비시 분석에 대한 가정 및 추정치 제시가 합리적인가?
- 할인율을 고려,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제시했는가?
- 분석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피규제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와의 비용교환에 따른 적립분이 정확히 산정되었는가?

3.3. 비용·편익분석 절차

- 1단계: 피규제자 범위 및 전국단위 수를 산정한다.
 - 규제비용분석의 조항별 내용을 통하여 피규제자 수를 설정할 때 최근 3년간 평균치 혹은 전년도 통계를 적용하도록 한다.
 - 1년차 피규제자 수를 설정한 이후에는 10년간 피규제자 수를 추정, 이때 최근 추세치를 적용하여 연장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다.

- 2단계: 비용편익 항목을 식별한다.
 -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항목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용과 편익 항목을 식별할 때 피규제자를 대표하는 협회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용편익항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담조사가 필요하다.
 - 비용편익 항목별로 비용편익의 수준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공식통계를 사용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방안이다.

- 3단계: 비용편익 항목별 식별값을 현재가치화하여 합계산출한다.
 - 합산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균등할인율을 적용하여 연간균등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 비용편익을 산출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 시행 이전의 상태(base case)의 지표값을 측정하고 분석대상 기간 동안 지표값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 즉,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신설 강화할 경우의 비용편익지표값의 변화를 base case의 지표값에서 차감하여 산출한다.

3.4. 폐지·완화규제의 산출방법

- 폐지·완화규제의 비용·편익을 산출할 때 비용·편익의 수준을 식별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다.
 - 규제를 강화하였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이전 상태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식별하는 것이 용이하다.
- 폐지·완화규제의 비용·편익을 산출할 때에는 폐지·완화된 상태에서 이전의 현수준의 규제로 신설·강화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산출하는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비용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다
 - 규제가 현재의 신설·강화되었을 때로 재상정하여 비용·편익을 산출 한 후에 다시 비용을 편익으로, 편익을 비용으로 구분하여 OUT규제의 비용·편익으로 재평가한다.

3.5. 주요 비용·편익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

- ① 규제관리를 위한 정부비용은 직접비용에서 제외하고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실질적 순응비용인 직접비용만을 산출한다.
 - OECD 규제순응비용측정 가이드에서는 행정부담 및 정부비용을 직접비용으로 분류한다.
 - 정부비용이란 정부부문에서 규제의 운영·관리와 이행상황의 감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새로운 규제를 공포하고 규제집행을 위한 새로운 등록, 면허, 인허가 등의 시스템을 개발,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 정부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정부 경상비 기준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 있는 비용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제외된다.
 -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직접비용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최소화한다.

- ② 실질적 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은 피규제자가 새로운 규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이행비용: 규제대상자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해야 하는 조직운영·영업전략 변경 비용 등 포함된다.
 - 직접 노동비용: 규제준수활동에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로 임금비용과 기타 인건비로 구분(임금비용: 지불된 시간급, 기타 인건비: 연금, 휴가, 병가, 소득세, 각종 보험 등 임금(시간급)외에 지불되는 비용)
 - 간접경비: 임대료, 사무용품 등 직원이 사용하는 용품의 비용, 기타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계된 간접경비
 - 기자재비용(설비비용):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구입한 자본장비(배출오염정화기계 등) 구입비용으로 기계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포괄
 - 원재료비(원자재비용): 규제준수를 위해 투입되는 각종 투입재(대체재 포함) 비용
 - 외부서비스비용(외주비용): 규제준수를 위해 외부 공급자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 운영비용 등이 해당
- ③ 생산성 변화 및 품질제고 효과는 간접비용편익으로 분류
- 규제의 준수활동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부담하는 비용과 그에 따라 얻어지는 품질제고효과의 편익 등은 간접비용과 간접편익으로 분류한다.
 - 돼지고기이력제 규제비용, 편익분석에서 이력표시로 인해 지체되는 작업시간의 지체, 위해요소의 책임소재 파악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질관리 및 종돈 품질제고 등을 간접비용 및 간접편익으로 분류하여 산출한다.
 - 이러한 비용은 실질적 효과를 명확히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식별이 곤란), 추정근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간접비용, 간접편익으로 분류한다.
- ④ 농식품분야 실질적 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비용분석을 추진한다.

- 기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연도별 상승하는 경우에 물가상승률은 현재 생산물가상승률이 정채된 경우 0%를 적용 및 가능한 직접비용을 업무단위로 표준화하여 동일한 비용을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단위비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적용한다.
- 직접 노동비용에서 농업부문 1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 당 1만원으로 하여 1일 8시간을 인건비 단가로 적용(표준),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해 일정기간(무상서비스 기간 등)이 경과한 후에 잔존가치의 10%수준을 유지관리비로 산정한다.

4. 규제비용 분석 업무의 효율적 활용방안¹⁶

4.1. 분석절차

4.1.1. 기초자료 조사

□ 해당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 및 업종 등 확인

- 해당 규제의 영향 범위를 구체화하여 피규제자의 대상 및 업종 등을 세분화하여 분류

(사례)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피 규제자

- 돼지사육농가 : 돼지에 농장번호 문신 실시
- 종돈장 : 돼지에 이표부착
- 도축장 : 돼지에 이력번호 표시 및 기록관리
- 포장처리업소 : 전산으로 이력관리
- 식육포장업소 : 식육판매 표지판 설치, 전자저울 업그레이드

¹⁶ 규제비용 분석절차는 매뉴얼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 규제 대상별 피규제자의 규모 조사

-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규제에 직접영향을 받는 대상(피규제자)의 규모 설정
- 1차년도는 전년도 등 최근의 통계자료 활용
 - 데이터의 왜곡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3~5년간 변동추이 등을 감안하여 활용
- 10년간의 피규제자의 수는 최근 추세치, 연구용역,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사례)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에 따라 혜택을 받는 피규제자 규모

-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과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 29개소 (’14.10월말 현재 등록업체수 통계)
- 신규진입 업체는 지난 3년간 기존에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용중이던 업체중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업’을 신규로 등록한 업체가 1개소이었음을 감안하여, 매 3년마다 1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는 것으로 추정

□ 규제 대상(피규제자)별 비용·편익 항목 조사 및 금액산정

- 피규제자 및 전문가 등의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용·편익항목 조사 및 금액 산정

(사례)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의 경우, 규제비용 및 편익항목 등을 양돈농가, 협회, 업체 등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 실시하여 반영
 - 사육농장 20농가, 종돈장 14개소, 도축장 23개소, 포장처리업소 26개소, 식육판매업소 18개소 등

- 인건비 : (총 노동투입시간) × (단위당 노동비용)
 - 임금 이외에, 연금, 소득세, 보험료 부담분 등 포함
 - 투입시간은 표준추정치, 전문가 의견, 유사 규제사례 등을 적절히 활용하

거나 피규제자 대상으로 직접조사하여 정보를 파악

- (사례)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을 위한 농장에서의 돼지문신 작업 인건비
- '13년 남·녀 1일 농업노동임금의 평균을 적용(남자 91,917원, 여자 60,612원, 평균 76,265원)
 - 시급은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환산하여 9,533원/시간 적용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4)

- 재료비 : (새로운 자재 가격) - (현재 이용중인 자재의 가격)
 - 규제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
 - * (예) 에너지 효율강화를 위해 이중유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이중유리 구입에 따른 추가 비용 조사
 - 물가정보,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가격 등 조사

- (사례) 농장에서 돼지문신을 위한 잉크비는 동물용 문신기 판매회사인 ○○
○○회사의 시장 판매 금액을 적용 : 11,000원/500mg

- 장비비(기자재) : (구입총비용) × (일정비율)
 - 규제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비
 - * (예)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배출가스정화 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 해당 기자재의 내구연수, 사용기간, 자본조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유지관리비 반영
 - 장비비를 일부 보조하는 경우에는 장비구입비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조금액은 농가의 편익에 계상
 - 새로운 장비 투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부분은 편익으로 산정

(사례)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사료제조시설 설치비는 사료제조업체 중 생산량이 중간값을 보이는 ‘○○○ 사료공장’의 시설설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관계자 면담 실시)
 - 시설 설치비 400백만원(분쇄시설 250, 배합시설 40, 정선시설 30, 포장시설 80)
-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기 설치된 시설 설치비의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편익발생
 - 편익은 매년 시설설치비의 10%의 감가상각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산정

- 외부 서비스비 : 규제이행을 위해 외부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비용 등)
 - 피규제자 대상으로 직접 조사 실시
- 간접비 : 임대료, 사무용품, 기타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
 - 규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사
- 행정보고비용 :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 관련 당사자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

4.1.2. 비용편익 산정 및 분석

□ 규제 대상(피규제자)별 비용·편익 산정

-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편익)금액에서 기존 규제의 비용(편익)금액을 차감한 순증분으로 산정
 - $\text{규제비용(편익)} = \text{규제도입후 비용(편익)} - \text{기존 규제 비용(편익)}$
- 규제에 직접영향을 받는 분야(피규제자)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후 합산

- 같은 비용·편익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지 또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 산정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적용

- 정량분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성분석 실시

□ 순비용 산정 및 현재가치화

- (순비용) 규제대상(피규제자)별로 산정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각각 모두 합산하여 직접비용 총액과 직접편익 총액을 산정한 후, 직접비용 총액에서 직접편익 총액을 차감
 - 순비용 = 직접비용 총액 - 직접편익 총액

- (순비용의 현재가치화) 산정된 순비용을 규제비용 분석대상 기간(10년) 동안 할인율(r)을 5.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화

$$- n\text{년에서의 순비용 현재가치} = \frac{\text{순비용}}{(1+r)^n} (r : \text{할인율}, n : \text{분석대상 연도})$$

□ 연간균등 순비용 산정

- 연간균등 순비용은 순비용의 현재가치를 분석대상기간(10년) 및 할인율(5.5%)을 고려한 연간지급율로 나누어 산정
- 규제비용분석서에서 분석한 규제비용의 연간균등 현재가치는 분석대상 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연도별 연간균등 순비용 가중치 값을 이용하여 계산

○ 규제비용분석서는 신규 도입(IN), 기존 규제 폐지(OUT) 및 간편심사 등으로 구분, 비용분석은 다음의 각 항목별 ①~⑨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 ① 규제명 및 세부규제사항 : 규제비용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명칭과 관련되는 세부규제사항을 기입
- ② 구분 : 분석대상 규제를 신설, 강화, 폐지, 완화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 ③ 법적 근거 : 대상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시

* (예시)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④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 여부 : ‘적용’, ‘미적용’ 표기
- ⑤ 유형 :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폐지로 구분하여 IN, OUT으로 표기
- ⑥ 총순비용과 기업순비용 및 연간균등 기업순비용 : 규제로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직접 비용과 직접 편익을 규제비용분석표로 작성하여 현재가치화한 값을 의미

* (예시)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비용 현재가치 (A)	편익 현재가치 (B)	순비용 현재가치 (C)	연간균등 순비용 현재가치(D)
1년차	14,931,218	3,331,264	11,599,954	
·	·	·	·	
·	·	·	·	
·	·	·	·	
10년차	3,187,719	57,021	3,130,698	
합계	50,625,330	3,973,112	46,652,218	5,866,584

A : 피규제자(규제비용분석 대상)의 직접비용에 할인계수값을 적용하여 계산
 B : 피규제자(규제비용분석 대상)의 직접편익에 할인계수값을 적용하여 계산
 C : 순비용 현재가치는 (A-B)값에 할인계수값을 적용하여 계산
 D : 연평균 순비용 현재가치는 순비용 현재가치의 합계 금액에 연가지급율을 나누어 계산

- ⑦ 문제점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서술

* (예시)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문제점

-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되지 않아 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원점을 몰라 대규모의 살처분 실시 등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미흡
- 소비자가 소비하는 돼지고기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관계주체들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함.
- 쇠고기는 이력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정부개입 필요성

- 돼지고기 이력제의 의무시행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구제역등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수입산과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국내 양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함.
- 사육, 도축, 포장, 유통단계별 이행주체들에게 일정수준의 신고,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안전한 먹거리제공은 국정과제로 추진중

- ⑧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의 도입 등에 따라 해당 산업의 발전과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급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목표 등을 기술

* (예시)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규제 목표

-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단계별 이행주체인 사육농가, 도축장, 포장가공업체, 유통업체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국가 4대약의 하나인 불량식품근절 일조

▪ 기대 효과

-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구제역등 가축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수입산과 차별화된 이력관리로 국내 양돈산업 보호

- ⑨ 제안된 규제의 타당성 : 신규 규제의 적용 대안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비교하여 실제 적용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

* (예시)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규제의 타당성

-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과 관련하여 적용방식으로 농가단위 관리와 개체별 관리로 구분하여 대안을 검토, 제도 운용의 비용, 편의성,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가단위 관리가 유리

4.2. 규제비용 효율적 분석을 위한 자료 표준화

- 매년 반복적으로 분석하는 규제영향 또는 비용분석서를 통한 기초 자료의 정리와 표준화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야함. 특히, 신설 규제에 의한 비용분석서 작업을 위한 기초 비용자료를 기존의 분석 자료에서 상시사용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순응비용으로 분류되는 자료의 표준화가 중요함.
 - 이행비용: 규제대상자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해야 하는 조직운영·영업전략 변경 비용 등 포함된다.
 - 직접 노동비용: 규제준수활동에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로 임금비용과 기타 인건비로 구분(임금비용: 지불된 시간급, 기타 인건비: 연금, 휴가, 병가, 소득세, 각종 보험 등 임금(시간급)외에 지불되는 비용)
 - 간접경비: 임대료, 사무용품 등 직원이 사용하는 용품의 비용, 기타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계된 간접경비
 - 기자재비용(설비비용):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구입한 자본장비(배출오염정화기계 등) 구입비용으로 기계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포괄
 - 원재료비(원자재비용): 규제준수를 위해 투입되는 각종 투입재(대체재 포함) 비용

- 외부서비스비용(외주비용): 규제준수를 위해 외부 공급자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 운영비용 등이 해당
- 부처 내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와 공동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정부공식 통계자료 등을 출처를 정리하여 향후 DB 운영에 대비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선행 규제비용분석서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자료를 검토하여 공동 비용자료와 자료의 출처 등은 KREI 규제영향평가팀에서 정리하여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부록 1

농업부문 국가전략 특구

1. 추진 배경

아베 내각은 “잃어버린 20년”을 탈피하기 위해 ① 양적완화, ② 재정정책, ③ 성장전략을 포함하는 「아베노믹스」 추진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단기적 심리 개선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한계가 지적되었다. 특히, IMF, WED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과 성장전략의 균형 잡힌 집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여 일본 정부는 '13.6월 ① 산업재생, ② 전략시장육성, ③ 글로벌시장 진출 등 3개의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핵심 분야 덩어리규제의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보건·의료, 관광 등 3대 전략시장과 고용·노동 분야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덩어리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전국단위의 ‘통상적’인 규제개혁이 이해상충 등으로 어려운 경우 ‘지역단위’ 또는 ‘기업단위’ 규제개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12월 출범한 현 아베 내각은 성장전략을 추진할 주요 정책수단으로써 규제개혁을 선택하였다. 규제개혁은 재정의 집중 투입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중·장기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성장전략을 발표한지 2년여가 경과한 현재 농업·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제 기업 투자 사례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지집적화를 통한 기업의 농업 진출 유도(오릭스그룹, Lawson社 등)하고, 의료부문은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실용화를 통해 신약 개발 등 유도(시오노기제약, 대일본스미토모제약 등)하고 있다.

2. 일본의 아베노믹스(성장전략) 주요 내용¹⁷

2.1. 성장전략 개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 제고 관점에서 거의 모든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의 중점 대상은 노동, 의료·복지, 농업 3분야에 현재 집중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13.6월 성장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14.6월 이를 보강하였다. 성장전략은 ①산업재생, ②전략산업육성, ③글로벌 시장 개척 3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재생 분야의 주요 시책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민간투자활성화, 사업재편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 여성 및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 확대, 로봇산업 육성,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특구 창설 등이다.

그리고 전략산업육성 분야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서 의

¹⁷ 김규판 외 2,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료·보건, 농업, 관광 3분야를 지목하고, 각 분야의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2. 국가전략특구

2.2.1.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규제개혁은 재정 부담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중·장기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부상하였다. 통상적인 규제개혁, 지역단위의 규제개혁(국가전략특구 활용),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기업실증특례제도) 세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적인 규제개혁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에 따른 개혁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나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같은 ‘사회실험적’ 규제개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표 1-1.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

	‘통상적’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기업실증특례·그레이존 해소
대상범주	전국	특정지역	특정기업의 특정사업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회의(총리자문회의) 설치(13.1월) - 규제개혁 Hot Line 설치(내각부)(13.3월) - 규제개혁실시계획 각의결정(13.6.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성립(13.12월) - 14.3월 1차로 6곳 선정(도쿄권, 칸사이권, 오키나와현, 니가타시, 야부시, 후쿠오카시) - 15.3월 2차로 3곳 추가(센보부시, 센다이시, 아이치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강화법 성립(14.1월 시행) - 2014년말 현재, 기업실증특례제도 7건 승인, 그레이존해소제도 25건 조의결과 등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환경, 보육, 의료·건강, 고용, 창업술 5대 중점분야로 설정 -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나 이해상반(conflict of interests) 문제 등으로 시행속도가 느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다음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trickle down’ 효과 기대 - 절차: 정부가 규제개혁 패키지(고용, 법인세, 외국인 채용, 농업 등) 준비→정부가 특구 지정→정부·지자체·민간사업체가 개발계획 수립(기존 특구와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특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른 규제개혁에 비해 시행속도가 빠르고,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점

자료: 김관규 외, 2015.

통상적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회의(총리직속 심의·자문기구)는 의료, 농업, 고용·노동 3분야를 덩어리 규제의 본산지로 지목, 개혁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의료분야에서 혼합진료 허용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에 이어 의료법인 경영효율화(사업재편과 부대사업 확대)와 비영리 지주회사 설립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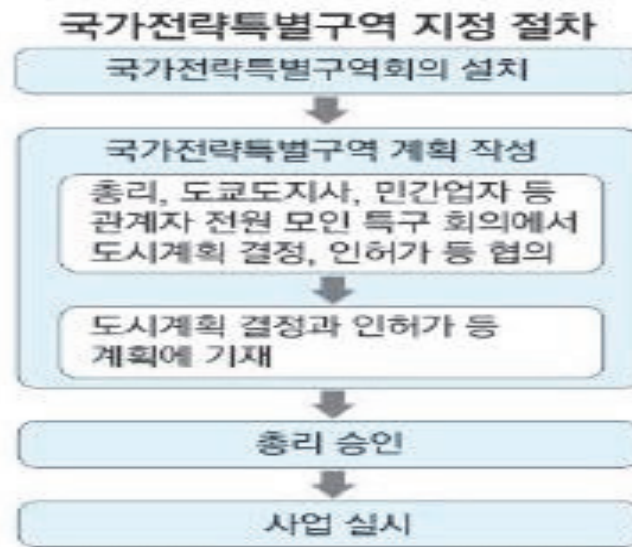
둘째, 농업분야는 규제개혁회의가 당초 설정한 농협, 농업위원회, 농업생산법인의 개혁 중 기업의 농업 진입 확대에 필수적인 농업위원회와 농업생산법인에 관한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 특히, 농업위원회(기초단체에 설치하는 행정위원회)의 주요 권한인 농지 매매 및 임대 허가, 농지전용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유희농지·경작의향 조사(농지은행에 대한 임대권유) 완화하고, 농업생산법인의 설립 요건인 ①법인형태 요건 ②사업요건(매출액 과반이 농업) ③구성원 요건(농업관계자가 총 의결권의 3/4 이상 보유) ④임원요건(임원의 과반수가 농업 상시종사자)을 완화하였다.

셋째, 고용·노동 분야는 현재 일본의 노동·고용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주요 이슈는 첫째, 정규직의 해고 규제 완화,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제, 셋째 파견노동 규제, 넷째 노동시간 규제 개혁, 다섯째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로 압축할 수 있다

2.2.2. 국가전략특구 추진현황

국가전략특구는 ‘저항세력’(일본의사회, 노조, 농협)이 강력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특정 지역에 우선 시행한 후 전국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구상하였다.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규제개혁 방법론으로서 국가전략특구법에 특례조치를 도입하고, 추가 조치는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특구는 총리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제안을 조율한 다음 지정. 지정 특구에는 국가전략특구회의를 설치·운영(국가전략특구담당장관, 지자체 장, 민간사업자로 구성)하고 있다.

부도 1-1. 국가전략특구 지정 절차



국가전략특구의 지정 절차는 ①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 설치, ② 국가전략특별구역 계획 작성(특구회의에서 도시계획, 인허가 등 협의 및 도시계획 결정과 인허가 등 기재), ③ 총리 승인 및 사업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전략특구의 지정에 앞서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 설치와 각종 계획 및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 실시가 진행된다.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현황은 2013년 말 국가전략특구법의 국회 통과, '14.3월 6곳의 제1차 국가전략특구지정, 그 후 지정특구별 국가전략특구회의 구성, 특구계획 작성 등의 순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다. 금년 8월에는 2차 특구지정을 통해 도요타자동차 공장 등이 몰려 있는 아이치현을 전략특구에 포함했다. 아이치현은 무인차, 로봇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전략특구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소한 규제부터 암반 규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풀어나가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 규제 완화 '스피드'를 극대화하고 있다(매일경제, 2015.12.13.).

부도 1-2. 일본 국가전략특구 지정 현황



2차 지정에서는 아키타현 센보쿠시,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이치현도 전략특구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중의원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이 전략특구를 지방 곳곳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선언한 이후 중소도시까지 포함한 것이다.

창업 외국인에 대한 재류자격 완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입국·체류 허가, 의료법인의 이사장 요건 완화, 지역한정보육교사 제도 도입, 국유임야의 민간 임대·사용 확대, 공립학교 운영의 민간개방 등을 담고 있다.

농업부문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야부시는 중산간지 농업개혁, 니가타시는 대규모 농업개혁 거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야부시

구역회의: 2014.7.23, 2015.1.27 개최

구역계획인정: 2014.9.9, 2015.1.27

- 농업위원회와 시정촌의 사무분담에 관련된 특례
- 농업생산법인에 관련된 농지법 등 특례
- 농업에 신용보증제도 적용
- 역사적 건축물 등에 관련된 여관업법 시행규칙 특례

□ 니가타시

구역회의: 2014.7.18, 2015.6.9 개최

구역계획인정: 2014.12.19, 2015.6.29(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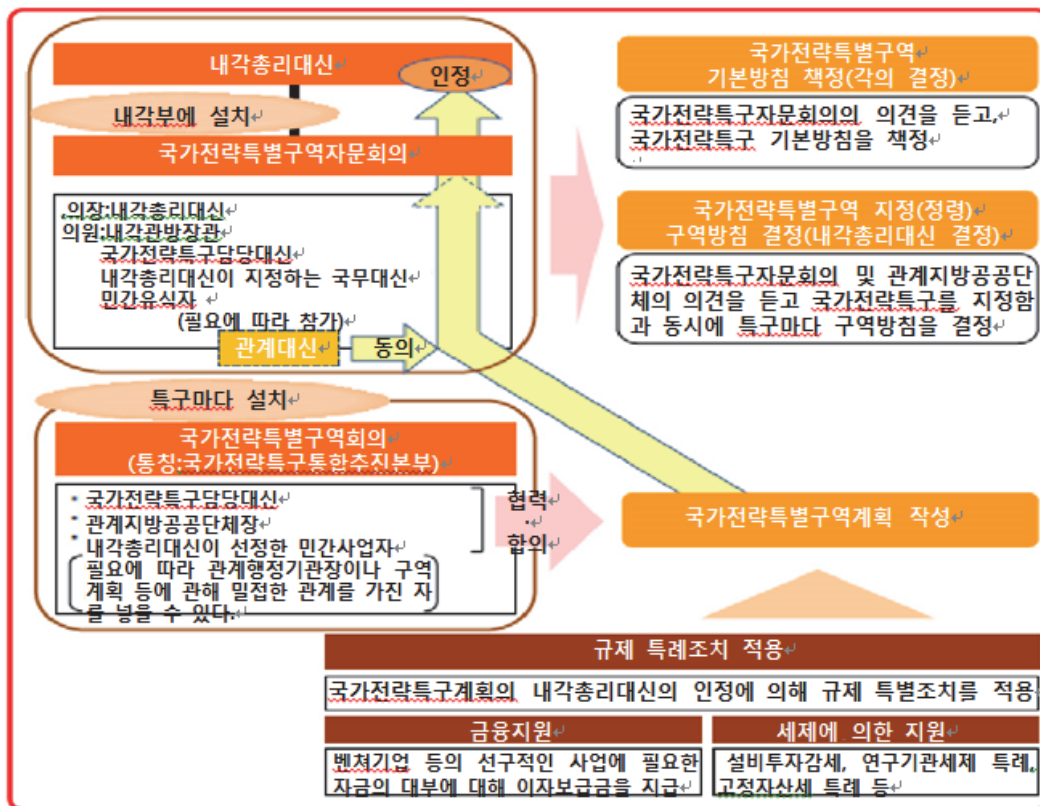
- 농업생산법인에 관련된 농지법 등 특례
- 농업위원회와 시정촌의 사무분담에 관련된 특례
- 농가레스토랑설치에 관련된 특례
- 농업에 신용보증제도 적용
- 고용노동상담센터 설치

2.2.3.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경제사회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점 형성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국가가 정한 국가전략특별구역의 규제개혁 등의 시책을 종합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가전략특별구역법에서 구조개혁 특구와의 제후를 위해 국가전략특구에 관한 제안 중 구조개혁추진 등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구조개혁특구의 제안으로 간주해 구조개혁특구로서 지원, 조개혁특구규제의 특례조치에 대해 국가전략특구계획에 기재하고 총리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부도 1-3.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개요



3. 농업부문 국가전략특구

3.1. 야부시

야부시의 중산간 농업개혁 특구는 2013년8월 농지매매의 허가권을 농업위원회에서 시(市)로 이전하고, 농업생산법인 설립 요건을 임원 중 농업종사자 수를 1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8개 기업이 농업생산법인 설립 형태로 추진되었다.

야부시의 경작포기지는 당시 약 230ha(시 농지의 9%)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농업위원회는 경작포기지 재생, 농지 유동화'를 목적으로 농지의 권리 이양에 관한 권한을 시로 이관하는 것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안하였다. '농업위원회와 시의 사무분담(농지 등 효율적 이용촉진사업)을 포함한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이 성립되었고, 제4회 특구자문회의에서 동경권에 나란히 불과 인구 2만5천명의 야부시가 '중산간농업개혁특구'로서 선정된다.

야부시는 국가전략특구 지정후 농업부문과 함께 농업이외의 규제완화도 함께 실현하고 있다. 시의 고령 인재의 활용과 주류의 인터넷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부시는 국가전략특구 지정 효과로 규제완화 메뉴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위원회와 시의 사무를 분담하여 경작포기지 재생과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였고, 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활동이 적극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진입이 활성화 되었다.

3.2. 니가타시

니가타시는 대규모 농업개혁 거점으로 농업생산법인의 임원요건 완화, 농업위원회의 사무분담 및 농업에 신용보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시책이 진행중에 있다. 전국 최초의 특례농업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7개 사업자가 농

업 참여, 시내 13ha에서 개시 가공 판매력 강화, 205ha에서 영농을 계획, 쌀 수출 증가 및 경작포기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니가타시는 농가레스토랑 설치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규제의 완화로 농가소득 향상과 교류인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농업고용규칙 명확화하였고, 6차산업화 등 비즈니스 사업과 제휴를 진행하였다. 또한, 농업벤처창업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4. 요약 및 시사점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아베 총리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4년 시행, 전략특구는 특정지역과 분야에 한정해 규제완화, 세제 우대조치 등을 시행 및 기업의 투자와 인재 채용, 국가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전략특구 제도는 기존 특구와 달리 ‘Top down’ 방식으로 자문회의에서 총리의 인정을 받은 중점과제는 관련 법률개정 없이 규제 특례 적용받고 있다.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일본의 과거 특구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략특구는 기존 특구와 달리 중앙정부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목표이다. 특히, 전략특구의 지정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Top-down’ 방식이다.

부표 1-2. 일본의 특구제도 비교

구 분	기존 특구	전략 특구
목적	지역경제 진흥	국가 경쟁력 강화
주도권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지정	지역 분산	일본 주요 지역(특화지역)
법적 근거	구조개혁특구법 종합특구법	국가전략특구법
지정방식	Bottom-up	Top-down

주: 일본의 특구제도는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이 있음.

혁신적농업실천특구인 니가타시는 농업생산법인 임원요건을 완화(농작업에 종사하는 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농업생산법인으로 인정)하여 기업(7개 사업자, 로손, 니이가타 맥주 등)이 농업에 참여(13ha에서 시작하여 금후 205ha까지 운영확대 계획)하여 가공/판매력의 강화, 쌀 수출의 증가, 경작포기지의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위원회와의 사무분담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시정촌장과 농업위원회의 합의의 범위에서 농업위원회의 농지의 권리이동의 허가관계사무를 시정촌에서 가능)하여 처리기간의 신속화로 기업의 농업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중산간농업개혁특구인 야부시는 농업위원회의 업무조정(농업위원회의 권한 이양 특구를 제안하여 국가전략특구법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실버 인재의 적극적 활용하여 고령자의 취업시간의 유연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주류판매의 요건 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각종 특구 제도의 운영상 애로사항인 협의과정, 갈등조정, 업무처리 속도, 기업의 진입 등 다양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특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략특구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농업소득 정체 및 하락, 고령화, 과소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기업의 진입을 농업과 지역의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6차산업화 등으로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농가, 농업단체 등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또는 제휴가 필요하다.

부록 2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1. 적용대상 및 운용방법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로써 피규제자(농가, 농업경영체, 농식품 기업 등)에게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 규제

○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비용 총량관리대상에서 제외

<비용총량제 적용제외 사유>

1.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규제
2.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
 - 단, 조약이나 국제협정 준수를 위한 최소 요건 이상으로 국내 규제수준을 설정 (gold plating)하여 기업에 추가 비용을 유발할 때에는 총량제 적용
 - ※ 국제적 권고사항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행 합의된 사항이거나,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경우임을 소명할 것
4.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경우, 주요 선진국 기준 및 규제의 필요성·적절성(타 규제와 중복여부, 대안 여부 등) 등을 입증할 것
5.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 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 6.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
- 7.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상승에 상응해 기존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규제
- 8. 규제의 미이행·미준수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 단, 의무부과·금지규정이 강화되어 규제가 확대·강화된 경우 총량제 적용
- 9. 1항 내지 8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비용전문위원회에서 총량제 적용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절차 요약>

비용총량제 적용대상			적용제외
비용분석 가능		비용분석 불가	
① 정식 절차	② 간편심사제(저비용 규제)	③ 심사처리제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규제연구센터 검증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규제조정실 검토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유사규제 선정(부처자체)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 위원회 예비심사/본심사			

규제비용분석

- 규제비용 및 편익을 화폐 단위(금액)로 산출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용
- (심사처리제) 다만, 규제비용 분석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성질·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규제지수를 활용하여 분석
 - 화폐단위로의 규제비용·편익 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
 - 규제기준 및 규제범위 설정이 매우 어렵고,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하여 비용분석 추계(시뮬레이션)조차 불가능한 규제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 심의

-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비용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 규제검증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전에 규제연구센터에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제출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규제비용검증 실시
- (간편심사제) 규제에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의 범위가 적은 규제 등은 국무조정실이 검토(규제연구센터의 검증 생략)하여 비용전문위원회에 상정·심의
 - 규제의 직접비용이 낮은 규제
 - * 예시 : 매년 기업에 초래하는 비용이 10억 미만, 자격기준·요건 등 관련 규제로서 직접비용이 크지 않은 규제 등
 -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로 인해 보완 또는 수반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수되는 절차 관련 규제**
 - * (예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여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혼합제조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기존 석유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 (예시) 직불금 등 농업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면서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관련 서류(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 비용분석 불가규제로서 규제위(비용전문위)의 심사처리제를 통해 처리하는 경미한 규제
- 농식품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분석 지원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정책평가센터(규제영향평가팀)를 설치하여 규제비용분석 지원
-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작성한 규제비용분석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전문위원회” 설치·운영(‘14.8)
- (규제사전심사)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규제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 비용분석 가능여부, 간편심사(저비용 규제) 해당여부 등 심의 결정
- (규제비용심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규제에 대해 부처가 작성한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

□ “비용전문위원회”의 비용 검증 지원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KIPA)에 규제연구센터 설치·운영(‘14.6)

○ KDI는 경제부처, KIPA는 행정사회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참고 1. 농식품분야 규제심사 세부 절차

1	정책개발 및 법령 제·개정(안) 마련	정책개발 및 법령 제개정 구상단계시 대안 검토 비용분석 기초자료 검토 및 전문가 협의
2	규제심사 대상 및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심의	서식(1) 양식에 검토서 작성 후 국무조정실 제출 1안건 1서식 작성 및 기본방침 및 참고자료 첨부
3	규제비용 분석서 작성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은 규제비용분석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KREI 자문 및 협조
4	규제비용분석 적정성 검토	부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담당 부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무조정실 제출
5	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부처가 제출한 규제비용분석서를 규제연구센터 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보완 등 KREI 협조
6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 심의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비용분석서의 검증 완료 후 적정성 심의 및 적립분 최종 판단(비용전문위)
7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비용 심의결과 심의
8	규제비용 정산 및 공개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홈페이지 공개

참고 문헌

- 강영철. 2014. “국가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데일리안 창간 10주년 기념 포럼.
- 김용렬 외 2인. 2012. 「2012년 도시민 농촌관광 수요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리포트」.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국무조정실. 1999. 「1998년 규제개혁백서」.
- _____. 2011. 「이병박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 정책자료집.
- _____. 2014.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안건.
- _____. 2014.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합동교육」.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워크숍 자료.
- _____. 2014.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연구」.
- 국무총리실. 2009.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 안건.
- 규제개혁위원회. 2014. 「2013년 규제개혁 백서」. 서울: 경성문화사.
- 김종석. 1998.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무조정실(규제개혁98-2).
- 김태윤.김준모.심미승. 1999. 「규제대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 제2차 규제개혁장
관회의 자료.
- _____. 2014.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현황」.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워크숍 자료.
- _____. 2014.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방안 연구」.
- _____. 2015. 「농식품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 농업전망. 2016. 「농업·농촌부문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2012. 「‘2011년 기업현장으로 개선활동」.
- _____. 2013.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5년간 성과(농업현장으로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 _____. 2013. 「기업현장으로 개선활동 실적」.
- 이수일. 2007.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 주류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3.
- 최병선. 1993.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한국식품연구원.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 개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Barry M. Mitnick. 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enneth J. Meier. 1985. 'Regulation : 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US FDA. 'A Food Labeling Guide'.